

변하여 사정이 변하였다는 점을 고려해, 같은 정신으로 이 시국에 협력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사고방식을 조선 민중에게 철저히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납득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총독부로서는 이러한 일반 상황을 고려하여 또한 시국의 요청까지도 고려하여, 연장 기간을 1년으로 한다는 것, 이미 2년을 근무한 노무자이므로 가족과도 만나고 싶을 것이고 가정적으로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것이므로, 희망자에 한해 수송편을 마련해 잠시 조선 귀향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내렸던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내지에 있는 조선 반도 노무자도, 또한 조선에 있는 그 가족들도 충분히 이해해 주길 바라는 것입니다.

문 : 기간 연장의 경우에, 공장에서 응징사의 가정에 알려줍니까? 그런 연락이 없기 때문에 가정에 있는 가족들은 매우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답 : 징용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징용변경명령서를 본인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 가족에게는 법령상 통지가 가지 않습니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보통 본인이 가족에게 연락을 취하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주나 관정도 가능하면 가족이 이해할 만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문 : 본인은 이해하고 기간을 연장해 일하는 것은 알겠으나, 그것이 가족에게 편지조차 없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회사나 공장에서 본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가족에게 알려줄 방법을 취해 줄 수 없습니까?

답 : 근로 관리가 잘 되는 곳에서는 대필계(代筆係)를 두어 매월 1회 수지 계산과 함께 건강히 일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거나, 또는 직접 회사에서 가족에게 알려주는 곳도 있습니다. 총독부에서는 가능한 한 그렇게 해 주기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회사 측에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때로는 회사 측에서 연락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회사의 양해 없이 다른 곳으로 가버려 가족에게도 연락을 하지 않는 경우, 가족 측에서는 답장도 없지 송금도 없지, 회사에 가보아도 답이 없지, 사실 회사는 본인이 어디로 가버려서 어떻게 답을 해야 할지 모르는 예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예는 종래 관 알선 제도가 실시되었을 때의 일로, 징용의 경우에는 거의 없는 일이지만, 가능하면 앞으로 내지와도 연락을 취해 그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징용의 순서

문 : 징용의 순서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답 : 먼저 징용을 희망하는 곳이 관청인 경우에는 소관 대신(大臣), 민간 공장인 경우에는 그곳이 만약 공장이라면 소관 대신을 경유하여, 그렇지 않은 공장·사업장은 직접 징용 신청서를 조선총독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조선총독은 그 신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도지사(道知事)에게 징용명령을 내려, 일정 필요 한 자격이 있는 자를 몇 명 징용한다, 그 징용 조건은 이것이다 라고 표시합니다. 그러면 도지사는 이 징용명령의 내용에 따라 요구받은 종류의 대상자를 국민등록에 근거해 조사하고 징용 동원수의

수 배 정도의 적격자로 판단되는 대상자에게 출두 명령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출두한 자들에 대해 본인의 거주 및 취업 장소, 신체, 가정, 직업, 기능 정도, 희망을 검사·조사하여 복무 적합 여부를 판정합니다. 그 전형 검사를 실시하는 사람은 국민징용령에 규정된 국민징용관으로, 도(道)에 따라 광공부장(礦工部長), 노무 과장(勞務課長), 그 밖에 도기사(道技師) 및 부윤(府尹), 군수(郡守), 도사(島司) 등이 담당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도지사가 징용명령서를 부윤, 읍면장(邑面長)을 통해 본인에게 교부합니다.

징용명령서를 교부받은 자는 명령서에 표시된 지정된 날짜 및 장소로 명령서를 지참하고 출두해야 합니다. 이것이 보통 일반징용의 방법입니다.

일정 연령자의 징용의 경우에는 피징용자의 전형에서 그 취지가 다소 달라집니다.

문 : 그러면 출두명령서가 와도 반드시 징용되는 것은 아닙니까?

답 : 그렇습니다. 징용명령서가 와야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문 : 출두명령서가 오지 않고 징용명령서가 즉각 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답 : 긴급을 요하는 경우나, 출두명령서를 보내고 전형 검사를 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즉시 징용명령서를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 : 면사무소에 있는 자가 자유롭게 출두명령서를 발부한다고 하는 데 그것은 잘못된 정보입니까?

답 : 그것은 출두명령서가 부, 읍, 면을 통해 본인에게 교부되는 점에서 발생한 오해일 것입니다. 출두명령서를 발행하는 사람은 도지사입니다.

문 : 의사가 실시하는 전형 검사에 불공평한 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답 : 그 점은 어느 정도 중요시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담당 의사는 특히 부윤, 군수, 도사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도립 병원이 있는 곳에서는 도립 병원의 책임 있는 의사가 담당한다는 방침을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징용관도 임석하여 전형에 입회하므로, 부정이 자행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문 : 지금처럼 부, 읍, 면의 상황에서는 중요한 근로 행정을 실행함에 실수가 많지 않습니까?

답 : 현재 제1선의 근로 행정 기구는 상당히 불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바빠서 민중에 대해 불친절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원을 강화하기 위해 아무래도 증원이 필요하였으므로, 조선 전체에 걸쳐 군, 도(島) 및 읍면, 직원을 크게 증원하였습니다. 또한 부나 도(道)에도 가능한 한 직원을 늘리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수보다도 질입니다. 이 점 제1선 직원은 어느 정도 자각을 하여 스스로 훈련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문 : 징용명령서를 받으면 자신이 어디로 가게 될 지 알 수 있습니까?

답 : 징용명령서에는 출두 날짜 및 장소, 종사해야 할 공장·사업장의 이름, 소재지, 종사할 총동원 사업 및 직업, 지용의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어디로 가게 될 지 알 수 있습니다.

국민 등록

문 : 징용하는 자의 원부(原簿)는 국민 등록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국민 등록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답 : 국민직업능력신고령(國民職業能力申告令)에서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를 크게, 국민 등록자와 과학 기술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민 등록자라는 것은 내지에서

“연령 12세 이상 60세 미만의 남자 및 연령 12세 이상 40세 미만의 배우자 없는 여자”
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조선에서는 현재 이 국민 등록자에 해당하는 자 가운데 일정 기능자를 제외하고는 “12세 이상 50세 미만의 남자”에 한해 요신고자(要申告者)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국민등록은 매년 5월 1일 및 11월 1일 현재 각각 그 달 4일까지 소재의 부윤, 군수 또는 도사(島司)
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능자는 종래대로 신고 수첩에 따라 변동이 있을 때마다 수
시로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학 기술자의 등록은 대개 이공계에 속하는 대학, 전문 학교에서 조선총독이 지정한 학과를 수료하
고 그 학교를 졸업한 자의 등록을 말하는 것으로, 남녀 연령에 제한이 없어 해당자는 모두 조선총독
에게 그 직업 능력을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 : 징용을 위한 출두명령서 수신자 이름이 실제로는 여자이기도 하고, 올해 4살이 된 아이이기도 하
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등록이 부정확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답 : 국민 등록을 기초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조선에서는 작년 9월에 청장년 등록을 실시한 것으로
그쳐, 그 후 많은 변동이 있을 것이므로, 이번 일정 연령층의 징용을 위해 특별히 각 부, 읍, 면에서
조사한 명부에 따라 발부한 것인데, 너무 서두른 관계로, 담당자의 실수도 있어 그런 일이 실제로 발
생한 모양으로 진심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문 : 이 등록 대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답 : 부, 군, 도(島)에 있습니다. 과학 기술자의 대장은 조선총독부에 있습니다.

문 : 징용에 지원할 수도 있습니까?

답 : 물론 할 수 있습니다. 지원한 자에게는 그 의지를 존중하여 가능한 한 희망에 따라 배치하도록 하
고 있습니다.

출두하지 않으면?

문 : 출두명령서나 징용명령서가 와도 출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답 : 병으로 인해 출두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각 의사의 진단서, 만약 의사의 진단서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찰 관리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일정 연령자의 징용인 경우
에는 의사의 진단서와 경찰서장의 증명서를 모두 첨부해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재나 그밖에 병 이외의 사고로 인해 출두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부윤, 읍면장 또는 경찰 관리, 선장
(船長) 또는 역장(驛長)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마찬가지로 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않고, 또한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출두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출두 명령
의 경우에는 경찰법처벌규칙(警察犯處罰規則)에 따라, 징용명령의 경우에는 국가총동원법(國家總動
員法)의 벌칙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습니다.

문 : 경계 경고가 발효됐을 때, 또는 공습 때에는 출두하지 않아도 됩니까?

답 : 공습으로 교통 두절되는 경우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만, 사실상 출두 가능한 상태라면 출두해야 합니다.

징용의 종류

문 : 징용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습니까?

답 : 그렇습니다. 종류라고 하기에는 다소 이상합니다만, 이해하기 쉽게 이를 크게 현원징용(現員徵用)과 신규징용(新規徵用)으로 나눌 수 있는데, 신규징용에는 특수한 기능을 가진 자의 징용, 즉 특수징용과 특별히 특수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일하는 데 문제가 없는, 즉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징용이 있습니다.

일정 연령층의 징용이라는 것은 일반징용을 실시하는 경우의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문 : 현원징용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답 : 조선에서는 올해 2월 무렵부터 수차례에 걸쳐 근로 관리가 비교적 좋은 민간의 공장·광산에 대해 현원징용을 실시해 왔습니다. 이 현원징용은 일반징용 실시의 전제로서 실시된 것으로, 현재 종사하고 있는 자는 여자, 그 밖에 일부 예외를 제외한 공장장 이하 전 종업원을 응징사로 이루어 국가를 위해 일하는 체제를 확실히 정비할 필요에서 실시해 온 것입니다.

그 결과는 □□도 매우 감소하였고, 또한 징용된 종업원도 매우 기뻐해, 가동 능률 등도 대개 90% 이상이라는 성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문 : 사장도 징용 대상입니까?

답 :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현재 조선에 공장·사업장이 있습니다만, 사장이 내지에 있는, 즉 부재 사장(不在社長)인 경우에는 징용해도 실효가 없으므로, 모든 사장을 징용 대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문 : 일정 연령자의 징용이라는 것은 보통 일반징용과 어떻게 다릅니까? 그리고 이러한 제도를 마련한 이유는?…….

답 : 일정 연령자의 징용이라고 해도 보통 일반징용과 마찬가지로 국민징용령에 입각한 지용이며, 징용령의 운용에서 그 대상자를 일정 연령의 남자로 규정하고, 그리고 징용 절차상 특별한 조치를 취한 데 불과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마련한 이유는 □□주의라고 할까요, 고른 우수한 노무 요원을 획득하고자 하는 것과, 후방 징소(徵召)의 정신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분명하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에 있습니다. 따라서 징용 대상자를 일정 연령층에 한정하고, 그 연령에 해당하는 자는 예외를 요하는 극히 한정된 자 외에는 빈부, 학력, 귀천의 구별 없이 공평하게 다루어집니다. 따라서 그 전형 방법도 절대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 : 내지인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징용은 어떤 상황입니까?

답 : 내지에서 대규모로 국민징용이 실시된 것은 특별히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조선에서 특별히 내지인을 원하는 징용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내지인을 지정하여 징용합니다. 지금까지 특수 기능을 가진

사람이나 일정 학교를 졸업한 자 등 매우 많은 내지인이 징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정 연령자의 징용에서 내지인도 물론 징용됩니다.

징용 대상에서 제외된 자

문 : 징용에서 제외되는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답 : 국민징용령에 확실하게 징용되지 않는 대상으로 지정된 자는

- (1) 육해군의 군인으로 현재 복무 중인 자 및 소집 중인 자.
- (2) 육해군의 학생생도.
- (3) 육해군의 군속(軍屬).
- (4) 의료 관계 직업 능력 신고령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하는 자.
- (5) 수의사 직업 능력 신고령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하는 자.
- (6) 선원법(船員法), 조선선원령(朝鮮船員令) 및 관동주선원령(關東州船員令)의 선원.
- (7) 법령에 따라 구금 중인자.

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징용되지 않는 자는

- (1)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직에 있는 관리, 대우(待遇) 관리 또는 공리(公吏).
- (2) 지방 공공 단체의 의원(議員).
- (3) 총동원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일 하는 자.

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징용령을 운용함에 제외되는 범위는 일반징용과 일정 연령자 징용은 다르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징용은 가능한 한 불용불급(不用不急)한 경우에 우선적으로 징용하는 방침이며 따라서 제외 범위는 실제로 매우 넓지만, 그 때 그때의 사정에 따라 그 범위는 달라지기도 합니다. 일정 연령층의 징용인 경우에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후방 응소(應召)라는 정신을 특히 강조하기 위해 제외 범위를 가능한 한 좁게 규정하고 또한 명확하게 해 놓았습니다.

문 : 일정 연령층의 징용에서 제외되는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답 : 국민징용령에서 징용 대상에서 제외된 자 외에,

- (1) 관리, 대우 관리 및 도부읍면(道府邑面)의 관원(官員).
- (2) 각 학교 규정에 따른 학교 재학자.
- (3) 조선총독부 군무(軍務) 예비 훈련소, 그 밖에 관립(官立) 훈련소 또는 양성소에 입소 중인 자.
- (4) 철도 및 체신(遞信) 협업원(現業員), 방공감시대원(防空監視隊員), 군 작업청(軍作業廳), 군(軍) 관리 공장 또는 현원징용을 실시하고 있는 지정 공장·광산에서 근무하는 자.
- (5) 국민직업능력신고령에 따른 과학 기술자 및 기술자인 기능자.
- (6) 선원직원능력신고령에 따른 요신고자.
- (7) 징병 검사를 마치고 가까운 시일에 입영이 예정된 자.

- (8) 육해군 군인으로서 1년 이상 군에 복무한 자 및 육해군 군속으로 1년 이상 조선 밖의 지역에 서 근무한 자로 귀환한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9) 국민징용령에 따라 징용되어 1년 이상 총동원 업무에 종사한 자로 징용 해제 후 1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단, 성행(性行) 불량으로 총동원 업무에 종사하는 데 부적격으로 판정받아 징용을 해제당한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 (10) 관 알선에 따라 6개월 이상 출동했던 노무자로 현재 해당 업무에 종사 중인 자.

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 : 그러면 현원징용을 받지 않은 광산·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자는 징용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 :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보통 일반징용에서는 생산 확충의 중요 공장·사업장에 현재 종사하고 있는 자는 가능한 한 징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 : 현원징용인 사람들의 결근이 최근 현저하게 많아져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답 : 현원징용 공장·광산의 종업원은 징용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일반징용을 면하기 위해 이런 곳에 취직하는 자가 많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동기로 취직을 희망하는 자는 현원징용을 받은 공장·광산에서 채용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상황에 밀려 필요하지 않는 자를 채용하거나 또는 근로 관리를 느슨하게 하면, 계으름 피우는 자가 발생하므로, 공장·사업장에서는 이 점을 충분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문 : 총동원 업무란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것입니까?

답 : 이는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으로 말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국가총동원법에서는 국가 총동원상 필요한 물자의 생산이라던가 운송 등이라는 추상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총동원 물자란 무엇인가 하면, 국가총동원법 제2조에 나와 있습니다만, 무기, 함정, 탄약 등은 비교적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그 밖의 물자에 대해서는 “국가 총동원상 필요한”이라는 표현이 있어, 구체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각 사업에 대해 일일이 법령의 취지에 따라 해석할 수 밖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문 : 생산과 관련된 일이 아니면 총동원 업무가 아닙니까?

답 : 생산과 관련된 일이 아니어도 국가 총동원상 필요한 금융, 위생, 교육, 정보 또는 계발(啓發) 및 선전, 경비, 군사상 필요한 공건(工建) 사업 등의 업무는 총동원 업무에 속합니다.

문 : 정보, 선전 업무는 모두 총동원 업무인 것입니까?

답 : 전부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 총동원상 필요한 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예를 들면, 군의 정보반원 등은 훌륭한 총동원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 : 징용되어 일하고 있는 자라도 다른 곳에 또 다시 징용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 : 징용되어 있는 자가 다시 징용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하고 있는 곳에서 같은 회사의 장소로 전근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먼저 ‘일하는 장소’로 지정된 장소를 변경하기 때문에 징용 변경서가 교부됩니다. 회사에서 전근할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이유를 진술하여 조선총독에게 신청해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 징용 변경 절차를 밟으므로, 회사쪽에서 마음대로 전근시킬 수는 없습니다.

문 : 징용 후에도 소집령은 옵니까?

답 : 징용은 병역법을 거스르지 않는다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물론 옵니다.

징용명령서가 오고 나서 출발까지

문 : 출두 여비가 없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답 : 그런 사람은 출두명령서 또는 징용명령서를 거주지의 부(府) 또는 읍면 사무서에 제시하고 출원하면 임시변통지불에 따라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 : 신체, 기타에 따라 이 사람은 탄광, 이 사람은 공장으로 구별되는 것입니까?

답 : 산업의 종류뿐 만 아니라, 작업의 종류에 따라서도 가능한 한 적성 배치라는 것을 바탕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 : 징용명령서가 오고 나서 출발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답 : 가능하다면 적어도 1주일이나 10일 정도는 여유가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매우 긴급을 요하는 경우나 그 밖에 수송 계획의 상황 등으로 인해 여유가 없는 경우도 적지 않아, 응징사나 그 가족에게 안타까운 사례도 있습니다만,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한 것이므로, 양해해 주십시오.

문 : 출발 전에 어떤 준비를 하면 됩니까?

답 : 징용명령서와 인감은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돈은 도중의 용돈 정도 준비하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작업복은 출두지 또는 취업처에서 지급됩니다만, 만약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가능한 한 국민복에 전투모, 각반 착용이 바람직하며, 또한 취업처에서는 충분한 의료를 입수할 수 없으므로 셔츠나 갈아입을 옷 두, 세 가지 지참하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침구는 휴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면 도구, 기타 필요한 것은 적당히 지참해도 지장이 없겠습니다만, 수건 등은 가능하면 좀 여유 있게 몇 장 휴대하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이 밖에 특히 부임(赴任) 사항 등에서 가져가야 할 것을 요구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호적 등본, 사진 등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출발 전에는 특히 건강에 조심해 병이 나지 않도록 주의할 것, 방첩(防諜)에 유의하여 절대 기밀 사항을 누설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문 : 징용된 자는 같은 면 출신자라면 같은 공장·광산으로 가게 됩니까?

답 : 출신지를 바탕으로 조직하므로, 자연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가족을 부를 수도 있는가?

문 : 징용되어 내지의 취업지로 가서, 희망한다면 가족을 부를 수도 있습니까?

답 : 징용 기간에 불구하고 2년을 넘어 그 공장·사업장에 근무하는 자는 훈련 기간 6개월 경과 후 가족을 부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실정으로는 가족을 부를 경우 수용 시설 관계로 즉시 실현 가능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조선 내의 징용일 경우에도 수용 시설 관계로 실제로는 곤란한 경우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훈련 기간

문 : 훈련 기간에는 무엇을 합니까?

답 : 규율 훈련, 정신 훈련, 학과 및 실습 작업을 통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 : 징용된 자에게 국어¹¹⁾를 가르쳐 줍니까?

답 : 국어 습득에는 많은 힘을 쏟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간 중에 해제되지는 않는가?

문 : 징용이 기간 중에 해제되는 일은 없습니까?

답 : 있습니다. 즉 피징용자가 질환, 그 밖의 사유로 그 일에 종사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때, 또는 종사할 필요가 없어졌을 때 사용주 또는 피징용자 본인의 신청에 따라, 내지에서는 지방 장관, 조선에서는 도지사가 징용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문 : 징용 기간에 병이 나거나 부상을 당하면 고향으로 돌아 올 수 있습니까?

답 : 징용간 곳의 관청의 장 또는 공장·사업장의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 일시 귀향할 수 있습니다.

문 : 친형제가 위독하거나 집이 화재로 불타 버린 경우에는 돌아 올 수 있습니까?

답 : 이 경우에도 관청의 장 또는 사업주의 허가를 얻어 일시 귀향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 위독하다는가 사망한 경우에는 근무처에서 여비가 지급됩니다.

징용된 곳의 급여는 어떤가?

문 : 내지로 징용된 경우, 그 공장에서 내지인 노무자와 수입 등에서 차별은 없습니까?

답 : 임금은 물론 그 밖의 처우에서도 내지인과 조선인 사이에 전혀 차별이 없습니다.

문 : 징용일 경우 일하는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답 : 회사에 따라 다르며, 또한 작업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만, 현재 중요 공장·광산은 대부분 주야로 일을 하므로, 3교대제라면 8시간 내지 9시간, 2교대제라면 적어도 10시간은 일을 해야 합니다.

문 : 징용되기 전에 근무하던 곳과의 관계는, 관청일 경우에는 휴직 처리됩니다만, 회사나 사무소일 경우에는 그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답 : 회사나 사무소도 관청의 예에 따라 군무응소(軍務應召)의 경우에 준하여 □□로서 □였다고 생각 됩니다.

문 : 징용된 자의 급여는 대체로 어느 정도입니까?

답 : 내지에서는 전국적으로 응징사의 급여를 □□하여, 직업별 또는 지역별, 연령별로 대체로 일정합니다. 예를 들면, 조선(造船) 공장에서는 당초 3개월간은 60엔 정도입니다만, 3개월이 지나면 100엔 이상이 됩니다. 또한 석탄광에서는 대개 채탄부, 최고 6엔(圓), 최저 3엔, 평균 4엔 50전 정도로, 훈련 기간 중이라도 2엔 50전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11) 국어는 일본어를 말함.

조선에서도 응징사에 대한 급여는 일반 □×10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이들의 급여에 대해서는 조선 내에 징용되는 경우 □□하고, 일본에 징용되는 경우에도 조선총독이 인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 : 그 급여는 국가에서 주는 것입니까, 그 공장에서 주는 것입니까?

답 : 피징용자를 사용하는 관청의 장, 또는 사업주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무기율(服務紀律)과 표창제도(表彰制度)

문 : 응징사의 복무기율을 어기거나 도망한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답 : 응징사가 복무기율을 어기거나, 그 밖에 응징사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도지사가 훈고(訓告) 또는 견책(譴責)이라는 두 종류의 징계를 합니다. 다만, 사업주인 응징사의 징계는 조선총독이 직접 행하고, 그 중 문책의 경우에는 관보(官報)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주하거나 계으름을 피워 장기간 출근하지 않은 자는 불응징죄(不應徵罪)로서 당연히 국가총동원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문 : 응징사에 대한 특별한 표창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답 : 현재 근로자로 공적 특히 우수한 자에 대해서는 근로현공장(勤勞顯功章)을 수여하여 표창하는 제도가 있습니다만, 이 제도에서는 표창의 수도 적고 또한 피징용자처럼 취업 기간이 짧은 자는 자연 해당자도 극히 적으므로, 올해 8월 「피징용자표창규정」을 마련해 응징사만을 표창하게 되었습니다. 표창의 종류는 상장(賞狀), 응징유공장(應懲有功章) 및 응징장(應懲章) 등 세 종류가 있습니다.

문 : 누가 표창합니까?

답 : 조선총독이 표창합니다만, 수여는 도지사가 전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에 걸렸을 때

문 : 정용된 곳에서 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어떠한 처우를 받습니까?

답 : 업무상인 경우와 사적인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 처우가 다릅니다. 업무로 인해 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장법(工場法), 광산이라면 광부노역부조규칙(礦夫勞役扶助規則)에 따라 부조를 받습니다. 예를 들면, 응징사가 부상을 입거나 병에 걸렸을 때에 사업주는 그 비용으로 요양을 하게 하고, 또는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함과 동시에 요양 중에 급여의 60%에 상당하는 휴업부조료(休業扶助料)를 지급합니다. 또한 부상이나 병을 치료해도 불구자가 된 경우에는 장애부조료(障礙扶助料)라고 해서, 예를 들면 두 눈을 실명한 경우에는 급여의 600일분 등 그 장애 정도에 따라 부조액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망한 경우에는 급여의 400일분인 유족부조료와 약간의 장례비가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사적인 질환인 경우에는 위에서 말한 부조는 없습니다만, 공장·광산은 거의 전부 국민 건강보험에 강제 가입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부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은 내지에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만, 조선에는 공장법이나 건강보험법에 상응하는 제도가 아직 없습니다.

다만 광산 노무자에 대해서 광부 노무 부조 규칙이 있어, 내지에서와 마찬가지로 부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장이라도 징용을 실시하는 커다란 공장에서는 내지의 공장법과 마찬가지 부조 제도를 복리시설로서 실시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그다지 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사적인 부상인 경우에도 공장·광산측에서 정의상(情誼上)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 : 근무처의 통풍·채광 상태가 나빠, 폐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답 : 그럴 경우 이는 업무상 질병인지 아닌지 매우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결국 그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하겠습니다만, 그 공장 시설의 결함이 폐병을 발생시키기에 충분한 정도라면 업무상 질환으로 취급될 것입니다.

남겨진 가족은 어떻게 되는가?

문 : 징용된 자가 할 일 없이 빈둥거리는 사람, 혼자 사는 사람이라면 상관없지만, 가정에 중요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징용된 다음 가족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답 : 가족의 생활이 곤란해진 경우에는 군사부조(軍事扶助)와 비슷한 부조를 국가가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국민징용부조규칙(國民徵用扶助規則)이라는 법령이 있어서, 징용으로 인해 가족과 따로 떨어져 살아야 하고 혹은 피징용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병에 걸려 그로 인해 징용을 해제당한 경우에, 본인 또는 가족의 생활이 곤란해질 경우 국가가 직접 부조를 합니다.

문 : 부조의 종류는 ……?

답 : 군사부조와 마찬가지로 생활 부조, 의료, 조산(助產), 생업 부조, 재난 당한자 임시 생활 부조 및 매장비 지급과 법령상 부조 기간이 경과했더라도 부조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행하는 계속 부조 등 일곱 종류입니다.

징용에 대한 조선총독부의 대책

문 : 최근 징용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그 취지를 충분히 철저하게 전하지 않아서 인지 민심에 상당한 동요를 안겨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에 대해 총독부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답 : 전국(戰局)의 급박한 전개와 함께 어디까지나 동원은 강력하게 진행시켜야 합니다만, 그 동원에 따른 마찰을 가능한 한 피하고자 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하여

- (1) 동원 방법의 합리화.
- (2) 근로 관리의 쇄신.
- (3) 근로 원호(勤勞援護)의 철저한 강화.

이러한 세 가지 점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동원 방법의 합리화 —보도원제(補導員制)의 폐지—

문 : 동원 방법을 어떻게 바꾼 것입니까?

답 : 한 마디로 말하면, 내지에 송출하는 경우에 종래의 관 알선(官斡旋) 방법을 바꾸어, 가능한 한 국민 징용령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내지의 공장·사업장의 근로 관리 상태 혹은 작업의 성질 등에 따라 징용이 불가능한 곳이 있으므로, 전부가 징용으로 송출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만, 관 알선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징용의 경우와 마차가지이므로, 원호(援護)에 대해서 징용과 같은 처우를하도록 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내지 내 송출이 관 알선인 경우에 회사에서 보도원(補導員)이 나와 모집에 협력하였습니다만, 보도원 제도가 여러 가지 제1선의 관청과의 관계, 기타 보도원의 질이 나빠 적절한 동원 수행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이 보도원 제도를 폐지하고 관청이 전부 직접 모집해 부산이나 여수 등 조선 출발지까지 인솔하여, 그곳에서 사업주에게 인계하도록 하였습니다. 조선 내 알선인 경우에는 보도원과 같은 협력원 제도가 있었습니다만, 이것 역시 폐지하여 오직 관청에서만 모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문 : 예를 들면, 경기도 숭인면의 징용자는 그 면(面) 사람이 데리고 가는 것입니까? 군청 사람이 군(郡)에서 모아 데리고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道)에서 모아 데리고 가는 것입니까?

답 : 인솔의 경우는 면, 군 및 도에서도 직원이 나옵니다. 2개 도 이상에 걸친 큰 수송인 경우에는 본부(本府)에서도 가능한 한 인솔자를 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 : 내지로 가는 경우, 종래에는 어디에서 인계하였습니까?

답 : 승차지(乘車地)입니다.

문 : 이번에는 부산 또는 여수에서 인계하도록 되었으므로, 그곳까지 사업자 측 사람들이 와서 일본의 사업장까지 인솔하는 것입니까?

답 : 그러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자 측의 인솔자도 부산에서 갑자기 인계한다면 대원들의 얼굴도 모르고 또한 전혀 친밀감도 느낄 수 없으므로, 사업자 측 사람들도 가능한 한 군이나 면까지 와서 함께 인계지까지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문 : 내 친구가 징용되어서 부산까지 환송하고자 합니다만, 가능합니까?

답 : 전부 단체 수송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수송 폭주(輜輶) 형태이므로, 가족이나 친구들이 부산 까지 환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근로 관리의 쇄신

문 : 근로 관리의 점에서는 어떤 식으로 바뀌는 것입니까?

답 : 내지로 간 노무자가 돌아 와서, 혹은 통신을 통해 내지의 광산·공장의 나쁜 모습을 전해 들으면 조선 내의 일반 민중은 가려는 마음이 없을 것입니다. 원활한 동원을 상당히 방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를 개선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지에서는 종래와 달리 매우 까다롭게 근로 관리 쇄신을 요구하고, 특히 나쁜 곳에 대해서는 후생성(厚生省)이 할당한 동원에 그 송출을 중지시키는 등의 조치까지 취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내지 내의 관청과 회의하여 근로 관리의 쇄신에 대해 그 이상의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

다. 즉, 노무자에게는 누락 없이 가족 수당을 지급하고, 그 밖의 일반 노무관리도 조선 반도 노무자에 대해 절대 내지인 노무자와 구별하지 않도록 하여, 황국 신민으로서의 자질 연마에 충분히 유의할 것, 또한 식량, 작업용 물자, 그 밖의 복리 시설에 대해서도 가능한 조치를 실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가족수당

문 : 그 가족수당이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답 : 내지의 공장·사업장에는 이전부터 가족수당 제도가 있었습니다만, 조선인 노무자에 대해서는 그 특수한 가족제도로 인해 좀처럼 부양 범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가족수당의 지급은 사실상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령별로 20세 미만은 부양 가족 1명, 25세까지는 부양 가족 3명, 25세 이상은 부양 가족 4명이라는 일정 기준을 마련하여 1인당 5엔의 가족수당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문 : 그러면 25세이면서 부양 가족이 5명인 사람이라도 3명분의 가족수당만 받는 것입니까?

답 : 그렇습니다. 어쨌든 가족수당을 전면적으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방법입니다.

문 : 이는 국가가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징용가는 곳의 공장·광산에서 주는 것입니까?

답 : 징용가는 곳의 공장·광산에서 주는 것입니다.

문 : 이는 어떤 방법으로 받는 것입니까? 매년 한꺼번에 모아 주는 것입니까? 매월 주는 것입니까?

답 : 노무자의 급여와 함께 사업주가 지불합니다.

가정에 송금하는 방법

문 : 가정에 송금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무래도 매달 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가족이 곤란을 겪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만…….

답 : 매월 적당한 방법으로, 예를 들면 모아서 출신 군에 보내는 방법 등도 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업주에게 책임지고 가정 송금이 절대 끊어지지 않도록 충분히 협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가정 송금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로 원호(勤勞援護)의 강화 –근로동원원호회의 조직과 사업–

문 : 제3의 근로 원호 철저히 강화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답 : 9월 4일에 재단법인 조선근로동원원호회를 설치하여 앞으로 근로 원호를 철저히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문 : 그 조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답 : 재단법인으로 본부(本部)를 조선총독부 노무과 안에, 지부(支部)를 각 도청 내에 두고, 정무총감(政務總監)을 회장, 도지사를 지부장으로 하며 광공국장(礦工局長)을 부회장, 노무과장은 상무이사 가운데 1명으로 참여시키며, 또한 하부조직으로 부, 군, 도(島)에 분회(分會)를, 경성부(京城府)의 각 구

(區) 및 읍면에 분회의 지소(支所)를 두고, 분회장은 부윤, 군수, 도사(島司)의 현직에 있는 자가 담당하며, 활동의 주체는 도의 지부에 두고 실정에 따라 업무를 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행정과 표리일체의 관계 하에 근로 동원의 원활한 운용을 촉진하는 데에 기구로서의 특색이 있습니다.

문 : 회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답 : 회원은 통상 회원(通常會員)과 찬조 회원(贊助會員)의 두 종류가 있으며, 통상 회원은 국민징용령에 따라 실시한 공장·사업장의 사업주 및 국민근로보국협력령에 따른 근로보국대원(勤勞報國隊員). 또는 관의 기조 알선에 따른 근로자 배치를 받은 공장·사업장(조선 밖의 것도 포함)의 사업주로 구성되며, 찬조 회원은 원호 사업의 공로자 또는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회장이 추천하는 자, 아울러 매년 100엔 이상 또는 한꺼번에 1,000엔 이상을 조성한 자로 구성됩니다.

문 : 자금은 어떻게 마련됩니까?

답 : 자금은 교부금, 보조금, 회비 및 기부금으로 구성되며, 1944년도는 우선 국고 보조 460만 엔, 예산 총액은 약 1,100만 엔입니다. 또한 이것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국고에서 더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고려하고 있습니다.

문 : 통상 회원의 회비는 어떤 수준입니까?

답 : 동원을 받은 공장·사업장의 사업주가 징용된 자 및 관의 지도 알선으로 피동원자(출근 기간 6개월 이상인 자)에게는 그 수에 3엔을 곱한 액수, 다만 일본 송출 노무자에게는 1인 당 2엔 50전을 곱한 액수를 냅니다. 또한 근로보국대원 및 출근 기간 6개월 미만인 피동원자에게는 그 수에 출근 기간 1개월(1개월 미만도 1개월로 계산) 당 20전을 곱한 액수입니다.

문 : 일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합니까?

답 : 현재 징용 부조 규칙이 있어, 업무상의 부상이나 질병에 따라 사망하거나 혹은 일을 하지 못하게 되거나 함으로써 생활의 곤란을 겪는 유가족에 대해서는 국가가 직접 부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에 해당하는 자, 예를 들면 그 유가족이라고 해도 직계 존속 혹은 처와 형제 혹은 직계 비속으로 각각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이 이외에 본인의 수입에 따라 생활을 해 오던 자가 본인의 사망 혹은 불구·질환으로 인해 즉각 생활이 곤란해지는 자에게 이 회(會)가 원호합니다.

또한 이 피징용자에 대한 원호로 가장 큰 것은 보급금(補給金)의 지급입니다.

나아가 응징사 관계 이외에도 국민근로보국협력령에 따른 근로 부국 대원 및 관 알선 피동원자, 혹은 이들의 유가족에 대해 각각 여러 가지 근로 원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족의 원호

문 : 원호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답 : 이를 일반원호와 특별원호로 나누고 있습니다. 일반원호는 국민징용부조규칙에 준하여 행하는 원호이며, 따라서 생활 부조, 의료, 조산(助產), 생업 부조 및 매장비의 지급 등입니다. 징용 부조에 준하는 정도입니다.

특별원호는 응급원호, 준비금의 지급, 유족에 대한 육영 자금(育英資金)의 지급, 본인에 대한 사망 조 위금 및 부상·질병 위로금의 지급 등입니다.

문 : 응급원호라는 것은?

답 : 근로자가 출동했을 때, 즉시 생활에 곤란을 겪게 되는 가족에 대해 신속하고 간편하게 원호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족의 생활 상태에 따라 대체로 1개월분 정도의 생활비에 상당하는 액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문 : 유족의 육영 자금은 어느 정도입니까?

답 : 국민학교 재학자는 1인 당 연 60엔 이내, 중등학교 재학자는 1인 당 연 250엔 이내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문 : 유족이라면 동원된 노무자가 사망한 경우 모두가 해당하는 것입니까?

답 : 아닙니다. 업무상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만을 말합니다.

문 : 응징사의 가족이나 유족에게 곤란한 일이 생겼을 때, 원호회에 자신이 신고하는 것입니까?

답 : 그런 경우에는 유가족 본인이 신고해도 되고, 또는 본인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윤 또는 읍면장의 신청에 따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애국반 등에서도 자주 응징사의 가정을 살피고, 그런 일이 있다면 즉시 부, 읍, 면의 담당자에게 연락해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급금제도(補給金制度)

문 : 보급금제도에 대해 설명을 들어봅시다.

답 : 이는 예를 들면, 응징사가 징용 전에 100엔의 수입이 있었는데 응징사로 간 뒤에 그것이 70엔의 수입밖에 되지 않을 경우에 수입이 30엔 줄기 때문에 생활에 영향을 줍니다. 바로 이 응징 전의 수입을 보급(補給)해 주는 것이 보급금제도입니다.

그러나 응징 전의 수입과 현재의 수입과의 차액 전부를 보급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25세로 특수한 관계에서 수 백 엔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모든 차액을 보급하자면 매우 힘겨운 일이므로, 일정 기준을 마련해, 즉 25세 이상 30세 미만은 80엔을 기준으로 삼아, 아무리 수 백 엔을 받았다고 해도 연령에 비해 상응하지 않는 수입이므로 80엔을 일단 기준으로 마련해, 그 차액만을 보급하는 것입니다.

문 : 그 기준액을 자세히 보여 주십시오.

답 : 징용 당시 부양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 (1) 만 18세 미만은 40엔.
- (2) 만 18세 이상 20세 미만은 50엔.
- (3) 만 20세 이상 25세 미만은 70엔.
- (4) 만 25세 이상 30세 미만은 80엔.
- (5) 만 30세 이상은 90엔.

이어서, 이에 징용 당시 부양 가족이 있으면 그 부양 가족 1인 당 10엔이 가산됩니다.

문 : 이 보급금은 역시 근로동원원호회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답 : 일단 사업주가 대신 지불합니다만, 그 중 3분의 2는 국고에서 보조하고, 3분의 1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국고 부담의 금액은 이를 근로동원원호회에 보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근로동원원호회에서 사업주에게 대신 지불한 것을 나중에 보조하는 것입니다.

문 : 내지로 간 피징용자에 대해서는 내지와 조선의 어느 쪽 원호회가 보급금을 지급합니까?

답 : 내지에 징용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내지의 원호회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징용을 받은 자뿐만 아니라, 관 알선에 의해 내지로 출동한 노무자에 대해서도 보급금이 마찬가지로 지급되므로, 출동자는 출발 전 관청 또는 원호회에서 배포한 “종전 수입액 신고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여기에 주거지의 부윤, 읍면장의 증명을 받아 지참해야 합니다.

기재 요령은 용지의 뒷면에 자세히 실려 있으므로, 이에 따라 정확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 : 특별보급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답 :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기본 보급입니다만, 특별보급이라는 것은 징용을 위해 부양 가족과 세대를 따로 하게 된 자에게 한 달에 15엔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기본 보급과 마찬가지로, 내지에 출동한 근로자는 피징용자 외에, 관 알선 노무자에 대해서도 내지의 원호회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 : 가족수당 이외에 보급되는 것입니까?

답 : 그렇습니다. 가족수당과는 별로로 나옵니다.

문 : 역시 징용가는 곳의 공장·광산에서 지급받습니까?

답 :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역시 3분의 1은 국고에서 부담합니다.

징용 가는 곳에서 하게 될 일에 대한 불안

문 : 징용될 경우, 무엇보다 가정을 떠나 먼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게 될 일이 가장 불안합니다만…….

답 : 그렇습니다. 본인은 지금까지 펜만을 잡고 일을 하였지만, 앞으로 육체 노동을 하면서 해머를 휘두르거나 탄광 속에서 일을 해야 하는데, 과연 그런 일을 할 수 있을지 불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날 국가의 요청에 따라 근로 동원이 강제 배치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이상, 익숙하지 않은 일을 하게 되어도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화족(華族) 출신의 아가씨라도 공장의 일개 직공으로 일을 하고, 외람되지만 황족(皇族)이라도 공장에서 근로 봉사를 하는 시절입니다. 어떤 직업에 있었던 자라도 일개 병졸로 입영하여 육체적인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훌륭히 복무하고 있으므로, 이는 결국 정신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안위를 구하는 마음을 버리고 국가를 위해 어떻게 해서든지 극복하겠다는 기백이 제일입니다.

가정을 떠나는 일은 사사로운 감정에서는 물론 동정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급박한 정세 아래에서는 그 정도의 고통은 각오해야 합니다. 각국에서 모두 많은 군대를 동원하려고 하는 이 때, 그 정도의 사람들은 모두 가정을 떠나 일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신에 출동한 노무자가 결코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사회가 이를 잘 지켜 가야만 합니다.

여자와 징용

문 : 마지막으로 참고로 여자 동원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만……. 여자의 징용은 실시되는 것입니까?

답 : 여자에 대해서는 국민징용령에 따른 징용은 실시하지 않는 것이 현재 본부(本府)의 방침입니다.

문 : 여자정신근로령(女子挺身勤勞令)이라는 법령이 지난 번 공포되었습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답 : 올해 8월 22일부로 공포된 여자정신근로령은 국가총동원법에 입각한 국민의 근로 협력에 관한 칙령으로, 종래 내지에서 실제로 실시되어 온 여자정신대제도에 법적 근거를 부여한 것입니다.

대상은 국민등록자인 여자로 되어 있습니다. 즉, 내지에서는 12년 이상 40년 미만의 배우자 없는 여자입니다. 조선에서는 특수한 기술 노무자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여자의 등록을 실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현재 즉각적 실시는 불가능합니다.

출동 기간은 대개 1년입니다. 출동 방법은 지방 장관이 시정촌장(市町村長), 그 밖의 단체장 또는 학교장에게 대원의 선발을 명하여, 그 결과를 지방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 장관은 이 보고를 받고 대원을 결정하고 본인에게 정신근로명령서를 교부합니다. 출동은 대조직(隊組織)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 : 앞으로 조선에서 여자정신근로령은 내지와 마찬가지로 할 방침입니까?

답 : 여자정신근로령은 조선에서도 실시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조선에서는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반 여자의 등록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대상이 되는 자는 국민등록의 요신고서(要申告書)인 여자의 13종의 기능자인 기술자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자는 매우 적습니다. 앞으로도 여자를 동원하는 경우, 여자정신근로령 발동에 따르고자 하는 생각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조선의 여자 정신대는 모두 관의 지도알선에 따른 것으로, 내지의 가장 근로 관리가 좋은, 시설이 정비된 비행기 공장 등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 공장은 공장인지 학교의 연장인지 모를 정도로 훌륭한 곳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관의 지도알선을 표면에 내세울 계획입니다.

그러나 전국(戰局)의 추이에 따라 여자 동원까지도 강화해야 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국민은 그런 각오를 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문 : 외국의 여자 동원 실정은 어떻습니까?

답 : 최근 정보에 따르면, 맹방(盟邦)인 독일에서는 45세 이상의 부인, 6세 이하의 유아를 가진 부인, 수학(修學) 연령의 아이를 2명 이상 가진 부인을 제외하고, 일할 수 있는 여자는 모두 근로에 동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적국 미국에서는 재작년 7월 현재 부인 노무자 수 1700만 명, 모든 노무자 수의 31%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에서는 16세부터 50세까지의 미혼자 및 아이가 없는 기혼 여자를 징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금까지 동원 수 약 870만 명이라고 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20세부터 25세까지 독신 여자는 육, 해, 공군의 여자 보조군(女子補助軍)으로 소집할 수 있게 되어 실제로는 상당히 많이 동원되고 있다고 합니다.

소련에서는 여자 노무 활동이 더욱 가혹하여 “일하지 않는 자 먹지 말라”는 슬로건 아래 철저한 여자

근로 동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며, 후방 근로는 대부분 여자가 담당할 뿐만 아니라 군인으로서도 상당수가 전선에 출동하였다고 합니다.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 러시아, 영국, 독일은 모두 근로 동원을 일본보다 가혹하고도 심각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근로 동원에 지는 국민이라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없습니다. 이 긴박한 가을, 조선 반도에 부과된 국민징용의 취지를 자각하여 그 완수에 전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록〉

국민징용령(國民徵用令)

1939년 7월 8일 칙령(勅令) 제451호

개정(改正) 1940년 제674호

1941년 제1129호

1942년 제38호 제781호

1943년 제600호

1944년 제89호

제1조 국가총동원법(1938년 칙령 제317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해 이하 동일) 제4조의 규정에 입각하여 제국 신민(帝國臣民)의 징용 및 국가총동원법 제6조의 규정에 입각하여 피징용자의 사용 또는 임금·급료, 그 밖에 종업 조건에 관한 명령은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한 것 외에 본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 징용은 국가의 요청에 근거하여 제국 신민을 긴요한 총동원 업무에 종사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도록 한다.

제3조 징용은 국민직업능력신고에 따른 요신고자(要申告者, 이하 요신고자라고 칭한다)에 한해 이를 실시한다. 다만 징용 중 요신고자가 아닌 자를 계속 징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여기서 제외된다.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앞 항의 규정에 상관없이 명령에 정한 바에 의해 요신고자 이외의 자를 징용할 수 있다.

제4조 본령에 따라 징용한 자는 국가가 행하는 총동원 업무 또는 공장·사업장 관리령에 따라 정부가 관리하는 공장·사업장, 그 밖의 시설(이하 관리 공장이라고 칭한다)에서 실시하는 총동원 업무에 종사하게 한다.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전 항의 규정에 상관 없이 후생대신(厚生大臣)이 지정하는 공장·사업

장, 그 밖의 시설(이하 지정 공장이라고 칭한다)에서 실시하는 총동원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징용 및 징용의 해제는 후생대신이 직접 이를 실시하는 경우 및 제22조의 2의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것 외에, 후생대신의 명령에 따라 실시한다.

제6조 총동원 업무를 행하는 관청(육·해군의 부대 및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동일)의 소관 대신(大臣) 또는 관리 공장 혹은 지정 공장의 사업주가 징용에 따라 인원의 배치를 필요로 할 때에는 후생대신에게 청구 또는 신청해야 한다.

전 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 공장의 사업주가 하는 신청은 해당 관리 공장을 관리하는 주무대신을 경유해야 한다.

제7조 후생대신이 전 조의 규정에 따른 청구 또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 징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용명령을 발하여 징용해야 할 자의 거주지[국민직업능력신고령(國民職業能力申告令)]에 의한 과학 기술자로 직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관청, 관리 공장 혹은 지정 공장에서 시행하는 총동원 업무에 종사시키기 위해 징용해야 할 자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동 령에 의한 취업지 혹은 해당 관청, 관리 공장 혹은 지정 공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장관[도쿄부(東京府)라면 경시총감(警視總監) 이하 동일]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징용해야 하는 자가 국민직업능력신고령에 의한 과학 기술자인 자의 그 거주 장소(직업에 종사하는 자인 경우에는 취업 장소)에 이동이 생겨 국민직업능력신고령 제6조 제1항 후단(後段)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전후의 거주지(직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동 령에 의한 취업지)를 관할하는 지방 장관이 달라질 경우에 후생대신은 전 항의 규정에 상관 없이 앞의 거주지(직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동 령에 의한 취업지)를 관할하는 지방 장관에게 징용명령을 알려야 한다.

제7조의 2 지방 장관이 징용명령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명령이 정하는대로 출두명령서를 발급하고 징용해야 할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지방 장관은 전 항의 출두명령서를 받고 출두한 자의 신체 상태, 거주 및 취업 장소, 직업, 기능 정도, 가정 상황, 희망 등을 검사 또는 조사하여 복무의 적합 여부를 판정하여 종사할 총동원 업무, 직업 및 장소를 결정한 다음, 징용명령서를 발하여 징용 대상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긴급을 요하는 때 혹은 전 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혹은 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 장관은 전 2항의 규정에 상관 없이 바로 징용명령서를 발하여 징용 대상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제7조의 3 전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혹은 조사 및 복무 적부(適否) 판정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도록 청부현(廳府縣)에 국민징용관을 둔다.

국민징용관은 보안부장(保安部長)인 경시청 부장, 경찰부장인 히카이도청(北海道廳) 혹은 부현의 부장, 경찰국 경무부장인 오사카부(大阪府) 부장 또는 지방 장관이 지정하는 경시청 혹은 히카이도청의 사무관, 직업관 혹은 기사(技師) 혹은 지방 사무관, 지방 직업관 혹은 지방 기사를 이에 충당한다.

제7조의 4 후생대신이 관리 공장 또는 지정 공장의 사업주사업주법인(事業主法人)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징용하여 해당 공장에서 행하는 총동원 업무에 종사하게 할 경우에는 제6조 내지 전조의 규정에 상관없이 명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용명령을 발하고 해당 공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장관에게 이를 알려, 지방 장관으로 하여금 징용명령서를 발해 징용 대상자에게 이를 교부하게 하거나 징용명령서를 발해 징용 대상자에게 이를 교부해야 한다.

제8조 징용명령서에는 다음과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다만, 군기보호상(軍機保護上) 특히 필요할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에 제시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징용 대상자의 성명, 단생(団生)의 연월일, 본적, 거주 장소(국민직업능력신고령에 의한 과학기술자이면서 직업에 종사하는 자는 취업 장소).
2. 종사해야 할 총동원 업무를 행하는 관청 또는 관리 공장 혹은 지정 공장의 명칭 및 소재지.
3. 종사해야 할 총동원 업무, 직업 및 장소.
4. 징용 기간.
5. 출두해야 할 날짜 및 장소.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 항의 제1호 중 거주 장소 또는 취업 장소에 관한 사항은 징용 대상자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관청, 관리 공장 혹은 지정 공장에서 행하는 총동원 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해 징용하는 것이거나 사업주(사업주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인 경우에는 이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

제9조 삭제

제10조 삭제

제11조 출두명령서 또는 징용명령서를 교부받은 자가 부상이나 질병, 그 밖에 □할 수 없는 사고로 인해 지정된 날짜 및 장소로 출두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후생대신은 지방 장관에게 그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전 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가 있을 경우에 후생대신 또는 지방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두 날짜 혹은 장소를 변경하거나 그 대상자가 징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용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출두변경명령서 또는 징용취소명령서를 발해 그 대상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제12조 피징용자를 사용하는 관청의 소관 대신 또는 관리 공장 혹은 지정 공장의 사업주가 피징용자를 사용하는 관청, 관리 공장 혹은 지정 공장, 피징용자가 종사하는 총동원 업무, 직업 혹은 장소 혹은 징용 기간에 대해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후생대신에게 이를 청구하거나 신고해야 한다. 관리 공장에서 사용하는 자에 대해 해당 관리 공장을 관리하는 주무 대신이 그 징용의 변경을 필요로 할 때 역시 마찬가지이다.

제13조 후생대신이 전 조의 규정에 따른 청구 또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징용자를 사용하는 관청, 관리 공장 혹은 지정 공장, 피징용자가 종사하는 총동원 업무, 직업 혹은 장소 또는 징용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후생대신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 조의 규정에 따른 청구 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고

해도 피징용자의 징용을 변경할 수 있다.

후생대신이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징용을 변경하게 할 경우에는 관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일 경우에 해당 관청의 소관 대신에게, 관리 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 해당 관리 공장을 관리하는 주무 대신에게 협의해야 한다.

제14조 피징용자를 사용하는 관청의 소관 대신 또는 관리 공장 혹은 지정 공장의 사업주는 피징용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총동원 업무에 종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 또는 그 자로 하여금 총동원 업무에 종사하게 할 필요가 없어졌을 때에는 후생대신에게 징용의 해제를 청구 또는 신청해야 한다.

피징용자가 질환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총동원 업무에 종사하기 어려운 경우에 관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는 해당 관청의 소관 대신에게, 관리 공장 또는 지정 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는 후생대신에게 그 내용을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 후생대신은 전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 또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징용을 해제할 수 있다. 후생대신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 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고 해도 징용을 해제할 수 있다.

후생대신은 전 항의 규정에 따라 관청에서 사용하는 자의 징용을 해제하려고 할 때에는 해당 관청의 소관 대신에게 협의를 해야 한다.

제16조 후생대신은 징용의 변경 또는 해제를 하려고 할 때에는 징용변경명령 또는 징용해제명령을 발해 명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징용자의 취업지를 관할하는 지방 장관, 징용명령서를 발부한 지방 장관 또는 제8조 제5호의 출두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 장관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지방 장관은 징용변경명령 또는 징용해제명령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징용변경명령서 또는 징용해제명령서를 발부해 피징용자에게 이를 교부해야 한다.

피징용자는 본 령 시행지 외의 장소에서 취업할 경우에 징용의 변경 또는 해제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전 2항의 규정에 상관없이 후생대신은 징용변경명령서 또는 징용해제명령서를 발부해 피징용자에게 이를 교부해야 한다.

제16조의 2 제12조 전단(前段), 제13조 제1항 제2항, 제14조 제1항 및 제15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은 피징용자인 관리 공장 또는 지정 공장의 사업주(사업주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는 징용의 변경 또는 해제에서 이를 준용한다.

후생대신은 피징용자인 관리 공장 또는 지정 공장의 사업주(사업주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징용 변경 혹은 해제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전 조의 규정에 상관없이 명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용변경명령서 혹은 징용해제명령서를 발부하여 해당 공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장관에게 이를 알리고 지방 장관으로 하여금 징용변경명령서 혹은 징용해제명령서를 발부하여 피징용자에게 이를 교부하게 하거나 징용변경명령서 혹은 징용해제명령서를 발부해 피징용자에게 이를 교부해야 한다.

제16조의 3 피징용자는 충성을 다해 그 종사하는 총동원 업무에 □□해야 한다.

제16조의 4 피징용자의 표창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명령을 통해 정한다.

제16조의 5 피징용자이면서 관리 공장 또는 지정 공장에서 행하는 총동원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응징사(應徵士)라고 칭한다.

응징사의 징벌, 복제(服制), 그 밖의 응징사의 복무(服務)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명령을 통해 정한다.

제17조 피징용자는 총동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관청에서 사용하는 자인 경우에는 해당 관청의 장의 지휘를 받고, 관리 공장 또는 지정 공장에서 사용하는 자인 경우에는 전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하는 명령에 의한 것 외에 해당 관리 공장 또는 지정 공장의 사업주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18조 피징용자에 대한 급여는 그자의 기능 정도, 종사하는 업무 및 장소 등에 따라, 또한 종전의 급여, 그 밖에 이에 준해야 하는 수입을 감안하여 피징용자를 사용하는 관청의 장 또는 사업주가 지급하도록 한다.

피징용자에 대한 급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관청에서 사용하는 자의 경우에 해당 관청의 소관 대신, 후생대신에게 협의하여 정하고, 관리 공장 혹은 지정 공장에서 사용하는 자의 경우에는 명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 공장 또는 지정 공장의 사업주, 후생대신의 인가를 받아 정해야 한다.

제19조 징용 대상자가 출두명령서의 교부를 받고 출두할 경우 여비는 지방 장관이 지급한다.

관리 공장 또는 지정 공장에 배치되기 위해 출두명령서를 받고 출두한 자에 대해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된 여비의 액수는 해당 광리 공장 또는 지정 공장의 사업주가 국고에 이를 납입해야 한다.

피징용자가 징용명령서를 받고 출두할 경우, 징용을 해제되어 귀향할 경우 또는 피용자 또는 그 가족이 위독하거나 사망으로 인해 관청의 장 또는 사업주의 통지에 따라 피징용자의 가족이 출두하거나 관청의 장 또는 사업주의 허가를 얻어 피징용자가 잠시 귀향할 경우의 여비는 명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청에서 사용하는 피징용자의 경우에는 해당 관청의 장이 지급하고, 관리 공장이나 지정 공장에서 사용하는 피징용자의 경우에는 해당 관리 공장이나 지정 공장의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도록 한다.

징용 대상자가 출두명령서를 교부받고 출두할 경우 또는 피징용자가 징용명령서를 교부받고 출두할 경우에 전도금(前渡金)이 없으면 출두할 수 없는 자의 여비는 그 거주지의 시정촌[市町村, 도쿄도(東京都)의 구(區)]가 있는 구역에 있으면 도쿄도]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임시 변통 지불해야 한다.

징용 대상자가 출두명령서를 교부받고 출두할 경우의 여비 및 그 임시 변통지불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후생대신이 정한다.

피징용자가 징용명령서를 교부받고 출두할 경우의 여비 및 그 임시 변통 지불 아울러 징용이 해제되어 귀향할 경우 및 피징용자 또는 그 가족이 위독하거나 사망으로 인해 관청의 장 혹은 사업주의 통지에 따라 피징용자의 가족이 출두하거나 관청의 장 혹은 사업주의 허가를 얻어 피징용자가 잠시 귀향할 경우의 여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관청에서 사용하는 피징용자의 경우

에는 해당 관청의 소관 대신이 후생대신에게 협의하여 이를 정하며, 관리 공장이나 지정 공장에 서 사용하는 피징용자의 경우에는 후생대신이 정한다.

제19조의 2 후생대신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총동원법 제6조의 규정에 입각하여 피징용자를 사용하는 관리 공장이나 지정 공장의 사업주에 대해 피징용자의 사용 또는 임금·급료, 그 밖의 종업 조건에 관해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9조의 3 피징용자가 징용됨으로써 그 가족이 피징용자와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또는 피징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일이 아닌 업무상 부상이나 질환을 입거나 병에 걸려 이 때문에 징용을 해제되었을 경우에 본인 또는 가족이 생활하는 데 곤란해질 경우에는 명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대해 부조(扶助)를 할 수 있다.

피징용자가 징용되어 총동원 업무에 종사하던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일이 아닌 업무상의 부상이나 질환을 입거나 병에 걸려 이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 유족이 생활을 하기에 곤란해질 경우에는 명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대해 부조를 할 수 있다.

전 2항의 가족 또는 유족의 범위 및 부조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명령으로 이를 정한다.

제19조의 4 전 조의 규정에 따른 부조가 피징용자이면서 관리 공장 혹은 지정 공장에 사용되거나 사용되었던 자 또는 그 가족 혹은 유족에 대해 이루어질 때에는 명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 공장이나 지정 공장의 사업주가 부조에 필요한 비용을 국고에 납입할 수 있다.

제20조 후생대신 또는 지방 장관은 명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용에 관해 국가총동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입각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후생대신 또는 지방 장관이 징용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총동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입각하여 해당 관리(官吏)에게 공장·사업장, 그 밖의 장소에 임검(臨檢)하여 업무 상황 또는 장부(帳簿)·서류, 그 밖의 것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해당 관리에게 그 신분을 입증할 증표를 휴대하게 해야 한다.

제21조 다음의 각 호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징용하지 않는다.

1. 육·해군의 군인이면서 현역인 자(아직 입영하지 않는 자를 제외한다) 및 소집 중인 자(소집 중의 신분으로 취급받는 자를 포함한다).
2. 육·해군 학생 생도(해군 예비 훈련생 및 해군 예비 보습생을 포함한다).
3. 육·해군 군속(軍屬) (피징용자이면서 이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4. 의료 관계자 직업 능력 신고령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하는 자.
5. 수의사 직업 능력 신고령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자.
6. 선원법(船員法)의 선원, 조선선원령(朝鮮船員令)의 선원 및 관동주선원령(關東州船員令)의 선원.
7. 법령에 따라 구속 중인 자.

제22조 다음 각 호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는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외에 징용하지 않는다.

1.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직(職)에 있는 관리, 대□(待□) 관리 또는 공리(公吏).

2. 제국의회(帝國議會), 도쿄도 의회(東京都議會), 도부의회(道府議會), 시정촌(市町村會),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의원(議員).

3. 현의원(縣議員)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면서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자.

제22조의 2 후생대신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명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 장관에게 징용명령, 징용변경명령 또는 징용해제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즉각 출두명령서, 징용명령서, 징용변경명령서 혹은 징용해제명령서를 발부해 징용 대상자 또는 피징용자에게 이를 고부하게 하거나, 지방 장관에게 제4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7조의 4, 제12조의 □□ 제15조(제16조의 2 제1항에서 징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의 2 제2항, 제18조 제2항 또는 제19조의 2의 규정에 따른 후생 대신의 □권(□權)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 장관이 후생대신의 직권을 행할 경우에는 동 항에 게시하는 각 조항에 따른 총동원 업무를 행하는 관청의 소관 대신(大臣), 피징용자를 사용하는 관청의 소관 대신, 해당 관청의 소관 대신 또는 해당 관리 공장을 관리하는 주무 대신의 직권은 각 총동원 업무를 행하는 관청의 장, 피징용자를 사용하는 관청의 장, 해당 관청의 장 또는 공장·사업장관리령에 의한 해당 관리 공장의 관리관이 행한다.

제23조 후생대신은 명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직업지도소장(國民職業指導所長)에게 징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분장(分掌)하게 하거나 이에 준하는 자에게 징용에 관한 사무를 보좌하게 할 수 있다.

시정촌장(市町村長) 도쿄도(東京都)의 구(區)에 있는 구역, 교토시(京都市), 오사카시(大阪市府), 나고야시(名古屋市), 요코하마시(橫濱市) 및 고베시(神戶市)에서는 □장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앞 항의 규정에 따라 징용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시정촌(도쿄도의 구가 있는 구역에서는 도쿄도)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게 임시 변통 지불해야 한다.

전 항의 비용 및 그 임시 변통 지불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후생대신이 정한다.

제24조 후생대신은 본 령의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해 내각 총리대신에게 협의해야 한다.

제25조 본 령 가운데 후생대신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조선, 대만, 사할린 또는 남양군도(南洋群島)에서는 각각 조선 총독, 대만 총독, 사할린청 장관 또는 남양청 장관으로 하며, 총동원 업무를 행하는 관청의 소관 대신, 피징용자를 사용하는 관청의 소관 대신 또는 해당 관청의 소관 대신 또는 해당 관리 공장을 관리하는 주무 대신으로 되어 있는 것은 관청의 소관 대신 혹은 주무 대신이 육군 대신 또는 해군 대신인 경우를 제외한 외에 조선, 대만, 사할린 또는 남양군도에서는 각각 조선 총독, 대만 총독, 사할린청 장관 또는 남양청 장관으로 한다.

본 령 중에 지방 장관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조선에서는 도지사(道知事), 대만에서는 주지사(州知事) 또는 의장(議長), 사할린에서는 사할린청 장관, 남양 군도에서는 남양청 장관으로 하며, 국민 직업 지도 소장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조선에서는 부윤(府尹)·군수(郡守) 또는 도사(島司), 대만에서는 시윤(市尹) 또는 군수(□□□)에서는 청장(廳長), 사할린에서는 사할린청 국민 직업 지도 소장, 남양 군도에서는 남양청 지청장(支廳長)으로 한다.

제7조의 3 제1항 중 청부현(廳府縣)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조선, 대만, 사할린 또는 남양 군도에

서는 각도(各道), 주 또는 청은 사할린청 또는 남양청이라고 하며, 같은 제7조 제2항 중 보안부장(保安部長)인 경시청 부장, 경찰 부장(警察部長)인 훗카이도청(北海道廳) 혹은 부현(府縣)의 부장, 경찰국 경무부장(警務部長)인 오사카부 부장(大阪府部長)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조선에서는 광공부장(礦工部長)인 도사무관(道事務官), 대만에서는 총무부장(總務部長)인 주부장(州部長), 사할린에서는 경찰부장인 부장, 남양 군도에서는 내정부장(內政部長)인 부장으로 하며, 경시청 또는 훗카이도청의 사무관, 직업관(職業官) 혹은 기사(技師) 혹은 지방 사무관, 지방 직업관 또는 지방 기사라고 되어 있는 것은 조선에서는 도(道)의 이사관(理事官) 혹은 기사, 부윤, 군수 또는 도사(島司), 대만에서는 지방 이사관 혹은 지방 기사, 사할린에서는 사할린청의 서기관(書記官), 사무관 혹은 기사, 남양 군도에서는 남양청의 사무관 혹은 기사라고 한다.

제26조 본령에 규정하는 것 외에 징용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명령으로 정한다.

부칙

본령은 1939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 조선, 대만, 사할린 및 남양 군도에서는 193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40년 10월 19일 칙령(勅令) 제674호]

본령은 1940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41년 12월 15일 칙령 제1129호)

본령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42년 11월 1일 칙령 제781호)

본령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43년 7월 20일 칙령 제600호)

본령은 194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조선, 대만, 사할린 및 남양 군도에서는 194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44년 2월 19일 칙령 제89호)

본령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단, 조선, 대만, 사할린 및 남양 군도에서는 제25조 제3항의 개정 규정을 제외한 것 외에 194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민징용령시행규칙(國民徵用令施行規則)

1939년 9월 30일 조선총독부령(朝鮮總督府令) 제164호

개정 1940년 제219호
1943년 제305호

제1조 조선 총독이 발하는 징용명령, 징용변경명령 또는 징용해제명령은 문서를 통해 이를 통지한다.

단, 긴급하여 이에 따르기 어려울 경우에는 전신(電信), 지급관보(至急官報)을 통해 전한다.

제2조 삭제

제3조 국민징용령(이하 '령'이라고 칭한다) 제7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道知事)가 발하는 출두명령서는 별지 양식 제1호에 따른다.

제4조 징용 대상자는 출두명령서를 교부받았을 때에는 출두명령서를 휴대하고 지정된 날짜 및 장소로 출두하여 해당 관리(官吏)에게 재출해야 한다.

제4조의 2 본령 제7조의 4의 규정에 따라 조선 총독이 발하는 징용명령은 징용 대상인 사업주(사업주 법인일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종사해야 할 총동원 업무를 행하는 관리 공장 또는 지정 공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이를 알린다.

도지사가 전 항의 징용명령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징용명령서를 발부해 징용 대상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징용 대상 사업주(사업주 법인일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종사해야 할 총동원 업무를 행하는 관리 공장 또는 지정 공장이 두 개 이상인 도(道)가 있을 때에는 전 2항의 규정에 상관없이 조선 총독 징용명령서를 발부해 징용 대상자에게 이를 교부한다.

제5조 징용명령서, 출두변경명령서, 징용취소명령서, 징용변경명령서 및 징용해제명령서는 별지 양식 제2호의 1 내지 5에 따른다.

제6조 징용명령서, 출두변경명령서 및 징용취소명령서는 부윤(府尹) · 읍면장을 통해 징용 대상자 또는 피징용자에게 교부하도록 한다.

제7조 징용 대상자 또는 피징용자가 징용명령서 또는 출두변경명령서를 교부받았을 때에는 징용명령서 또는 출두변경명령서에 첨부한 수령증에 수령 연월일 시간을 기입하여 날인한 다음 즉시 제출해야 한다.

제8조 징용 대상자 또는 피징용자가 징용명령서 또는 출두변경명령서를 교부받았을 때에는 징용명령서 또는 출두변경명령서를 갖추고 지정된 날짜 및 장소에 출두하여 해당 관리 또는 해당 관리 공장 혹은 지정 공장의 사업주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9조 령(令)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징용명령서를 발부한 조선 총독 또는 출두명령서 또는 징용명령서를 발부한 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해야 한다.

1. 부상 · 질병에 의해 출두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직접 받을 수 없는 사정으로 의

사의 진단서를 얻지 못할 때에는 경찰 관리의 설명서).

2. 현재지변이나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고로 인해 출두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부윤·읍면장 또는 경찰 관리, 선장(船長) 또는 역장의 설명서.

제10조 령(令)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선 총독이 발부하는 정용변경명령 또는 정용해제명령은 피징용자가 지정한 장소에 출두하기 전에는 정용명령서를 발부한 도지사, 피징용자가 지정한 장소에 출두한 경우에는 출두지를 관할하는 도지사, 피징용자가 총동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취업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통지한다.

제11조 령(令)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발부하는 정용변경명령서 또는 정용해제명령서는 피징용자 총동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그 자를 사용하는 관청의 장 또는 관리 공장 혹은 지정 공장의 사업주를 경유하여 교부해야 한다.

제12조 전 조의 규정은 령(令)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선 총독에서 정용변경명령서 또는 정용해제명령서를 교부할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2조의2 령(令) 제1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선 총독이 발부하는 정용변경명령 또는 정용해제명령은 피징용자인 사업주(사업주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종사하는 총동원 업무를 행하는 관리 공장 또는 지정 공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통지한다.

도지사 전 항의 정용변경명령 또는 정용해제명령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즉시 정용변경명령서 또는 정용해제명령서를 발부하여 피징용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피징용자인 사업주(사업주 법인일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종사하는 총동원 업무를 행하는 관리 공장 또는 지정 공장이 2개 이상인 도(道)가 있을 경우에는 전 2항의 규정에 상관없이 조선 총독이 정용변경명령서 또는 정용해제명령서를 발부하여 피징용자에게 교부한다.

제13조 피징용자가 정용변경명령서 또는 정용해제명령서를 교부받았을 때에는 해당 명령서에 첨부한 수령증에 수령 연월일 시간을 기입하여 날인한 다음 즉시 제출해야 한다.

제13조의 2 관리 공장 또는 지정 공장의 사업주가 임금통제령을 작용 받고 피징용자의 급여에 관해 령(令)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신청서에 임금 규칙의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제14조 조선 총독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용에 관해 정용 대상자 또는 그 자를 현재 사용하거나 사용한 것이 있는 자에게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전 항의 보고는 긴급히 필요한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윤, 군수 또는 도사(島司)가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 해당 관리(官吏) 령(令)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검(臨檢)하는 경우에는 별표 양식 제3호의 증표를 휴대해야 한다.

제16조 관리 공장 또는 지정 공장의 사업주는 해당 관리 공장 또는 지정 공장에서 사용하는 피징용자이며 사망자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에 제시한 사항을 정용명령서를 발부한 조선 총독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본적, 성명 및 출생 연월일.

2. 징용명령서 발부자, 발부 연월일 및 발부 번호.
3. 사망 연월일 및 원인.
4. 사망 전후의 조치 및 사업주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행한 부조(扶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출손(出損) 상황.
5. 유족의 주소 및 씨명.

제17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령(令) 제22조의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1. 전쟁 중의 전투 행위에 의한 재해 및 그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 때에 긴급 징용이 필요한 경우.
2. 징용의 변경 또는 징용의 해제에 관해 조선 총독이 정하는 경우.

제18조 도지사가 령(令) 제22조 2의 규정에 따라 직권(職權)을 행사한 때에는 조선 총독에게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부칙

본령은 193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40년 10월 19일 부령(府令) 제219호]

본령은 1940년 10월 20일 시행한다.

부칙 (1943년 9월 30일 부령 제305호)

본령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양식 제1호) (용지는 백색으로 하고 크기는 일본 표준 규격 B6 으로 한다)

(앞면)

출두명령서 발부번호	제 호
------------	-----

출두명령서

본적 : 무슨 도(道) · 부(府) · 현(縣) 무슨 부(府) · 군(郡) · 도(島) · 면(面)

무슨 읍 · 시(市) · 정(町) · 촌(村) 무슨 정 · 동(洞) · 리(里) · 번지(番地)

거주 또는 취업장소 : 무슨 도 · 무슨 부 · 군 · 도 무슨 읍 · 면 무슨 정 · 동 · 리 · 번지

씨명

몇 년 몇 월 몇 일 생

이 사람은 국민징용령 제7조의 2에 따라 다음의 날짜와 장소로 출두를 명한다.

출두해야 하는 날짜	19 년 월 일 오전/ 오후 시
출두해야 할 장소	
비고	

19 년 월 일

도지사 씨명 (인)

(뒷면)

출두명령서를 교부받은 자의 마음가짐

1. 출두명령서를 교부받은 자는 해당 명령서와 도장을 지참하고 지정된 날짜와 장소로 출두하여 해당 관리(官吏)에게 신고해야 한다.
2. 출두명령서를 교부받은 자가 부상이나 질환으로 지정된 날짜 및 장소로 출두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직접 할 수 없는 사정으로 의사의 진단서를 얻지 못할 때에는 경찰 관리의 설명서)를 첨부하여 이 명령서를 발부한 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3. 출두명령서를 교부받은 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피할 수 없는 사고로 인해 지정된 날짜와 장소로 출두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부윤(府尹) 또는 읍면장 혹은 경찰관리, 선장 혹은 역장의 설명서를 첨부하여 이 명령서를 발부한 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4. 출두명령서를 교부받은 자이면서 여비의 전도금(前渡金)을 받지 못하면 출두할 수 없는 자는 거주지의 부윤 혹은 읍면장에게 해당 명령서를 제시하여 임시 변통 지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출두할 장소가 거주지의 부·읍·면일 때에는 여기에서 제외한다.

주의(注意)

부·읍·면에서 여비의 임시 변통 지불을 한 경우에는 아래에 지불을 한 부·읍·면, 각각 지불을 한 연월일 및 “여비 금 몇 엔 몇 십전 지불함”이라고 기재하고 날인하여 본인에게 돌려 주어야 한다.

〈참조〉

국민징용령 제7조의 2, 지방 장관 징용명령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명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두명령서를 발부하여 징용 대상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지방 장관은 전 항의 출두명령서를 교부받고 출두한 자에 대해 신체의 상태 및 거주 및 취업 장소, 직업 기능 정도, 가정 상황, 희망 등을 검사 또는 조사하여 복무 적부 여부를 판정하여 종사할 총동원 업무, 직업 및 장소를 결정한 다음 징용명령서를 발부하여 징용 대상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전 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 혹은 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 지방 장관은 전 2항의 규정에 상관없이 즉시 징용명령서를 발부하고 징용 대상자에게 이를 교부할 수 있다.

기재를 위한 마음자세

1. 취업 장소는 국민직업능력신고령(國民職業能力申告令) 제2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요신고자이면서 직업에 종사하는 자에 한해 이를 기재하도록 한다. 이 경우에는 거주 장소는 기재할 필요가 없다.
2. 취업 장소 및 출두해야 할 장소는 그 소재지 및 명칭을 자세히 기재하도록 한다.
3. 비고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한다.
4. 문자는 예서로 명료하게 기재하도록 한다.

(양식 제2호의 1) (용지는 백지로 하고 크기는 일본 표준 규격 B5로 한다)

(앞면)

징용영서(徵用令書) 발부 번호	제 호																
징용영서 본적 : 무슨 도(道) · 부현(府縣) 무슨 부 · 군(郡) · 도(島) · 시(市) 무슨 읍(邑) · 면(面) · 구(區) · 정(町) · 부 무슨 정 · 동(洞) · 리(里) · 번지(番地) 거주 또는 취업 장소 : 무슨 도 · 무슨 부 · 군도(郡島) 무슨 읍면 · 무슨 정 · 동 · 리 · 번지 씨명 몇 년 몇 월 몇 일 생 이 사람은 다음과 같이 징용한다(된다).																	
<table border="1"> <tr> <td>종사해야 할 총동원 업무를 행하는 관청 또는 관리 공장 혹은 지정 공장의 명칭 · 소재지</td> <td>무엇 무엇</td> </tr> <tr> <td>종사해야 할 총동원 업무</td> <td>무엇 무엇</td> </tr> <tr> <td>종시해야 할 직업</td> <td>무엇 무엇</td> </tr> <tr> <td>종사해야 할 장소</td> <td>무엇 무엇</td> </tr> <tr> <td>징용기간</td> <td>몇 년 몇 월 몇 일부터 몇 년 몇 월 몇 일까지</td> </tr> <tr> <td>출두해야 할 날짜</td> <td>몇 년 몇 월 몇 일 오전/오후 몇 시</td> </tr> <tr> <td>출두해야 할 장소</td> <td>어디 어디</td> </tr> <tr> <td>비고</td> <td></td> </tr> </table>		종사해야 할 총동원 업무를 행하는 관청 또는 관리 공장 혹은 지정 공장의 명칭 · 소재지	무엇 무엇	종사해야 할 총동원 업무	무엇 무엇	종시해야 할 직업	무엇 무엇	종사해야 할 장소	무엇 무엇	징용기간	몇 년 몇 월 몇 일부터 몇 년 몇 월 몇 일까지	출두해야 할 날짜	몇 년 몇 월 몇 일 오전/오후 몇 시	출두해야 할 장소	어디 어디	비고	
종사해야 할 총동원 업무를 행하는 관청 또는 관리 공장 혹은 지정 공장의 명칭 · 소재지	무엇 무엇																
종사해야 할 총동원 업무	무엇 무엇																
종시해야 할 직업	무엇 무엇																
종사해야 할 장소	무엇 무엇																
징용기간	몇 년 몇 월 몇 일부터 몇 년 몇 월 몇 일까지																
출두해야 할 날짜	몇 년 몇 월 몇 일 오전/오후 몇 시																
출두해야 할 장소	어디 어디																
비고																	
19 년 월 일 조선총독 씨명 (인) 도지사 씨명 (인)																	

징용영서(徵用令書) 발부 번호	제 호
수령증 1. 징용영서 (몇 년 몇 월 몇 일 발부 제 몇 호) 다음을 수령한다. 19 년 월 일 오전 / 오후 시 분 본적 : 무슨 도(道) 현(縣) 무슨 부(府) · 군(郡) · 도(島) · 시(市) 무슨 읍(邑) · 면(面) · 구(區) · 정(町) · 촌(村) 무슨 정 · 동(洞) · 리(里) · 번지(番地) 거주 또는 취업 장소 : 무슨 도 무슨 부 · 군 · 도(島) 무슨 읍 · 면 무슨 정 · 동 · 리 · 번지 씨명 조선총독 씨명 (인) 도지사 씨명 (인)	

(뒷면)

징용영서(徵用令書)를 교부받은 자의 마음자세

1. 징용영서를 교부받은 자는 해당 영서에 첨부한 수령증에 수령 연월일 시간을 기입하여 날인한 다음 이를 제출해야 한다.
2. 징용영서를 교부받은 자는 해당 영서를 지참하고 지정된 날짜 및 장소에 출두하여 해당 관리(官吏) 또는 해당 관리 공장 혹은 지정 공장의 사업주에게 신고해야 한다.
3. 징용영서를 교부받은 자가 부상·질병으로 인해 지정된 날짜 및 장소에 출두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직접 얻을 수 없는 사정에 따라 의사의 진단서를 얻을 수 없을 때에는 경찰 관리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해당 영서를 발부한 조선 총독 혹은 도지사에게 자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4. 징용영서를 교부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밖에 피할 수 없는 사고로 인해 지정된 날짜 및 장소에 출두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부윤(府尹)·읍면장 혹은 경찰 관리, 선장(船長) 혹은 역장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해당 영서를 발부한 조선 총독 혹은 도지사에게 자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5. 징용영서를 교부받은 자이면서 여비의 전도금(前渡金)을 받지 못해 출두할 수 없는 자는 거주지의 부윤 혹은 읍면장에게 해당 영서를 제시하고 임시 변통 지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출두해야 할 장소가 거주지의 부·읍면인 경우에는 여기서 예외로 한다.

기재하는 마음자세

1. 취업 장소는 국민직업능력신고령(國民職業能力申告令) 제2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요신고자이면서 직업에 종사하는 자에 한해 이를 기재하도록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거주 장소는 기재하지 않도록 한다.
2. 취업 장소, 종사해야 할 장소 및 출두해야 할 장소는 그 소재지 혹은 명칭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한다.
3. 군기 보호상(軍機保護上) 필요한 경우에는 종사해야 할 총동원 업무, 직업 또는 장소는 기재하지 않도록 한다.
4. 비고는 조선 총독 혹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한다.
5. 문자는 예서로 명료하게 기재하도록 한다.
6. 징용영서(徵用令書)를 교부받은 자는 인장을 지참하지 않았을 때에는 사인 혹은 지장 날인도 금하지 않도록 한다.
7. 징용 대상자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관청 또는 관리 공장 혹은 지정 공장에서 행하는 총동원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징용될 경우에는 거주 장소, 취업 장소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

(양식 제2호의 2) (용지는 백지로 하고 크기는 일본 표준 규격 B5로 한다.)

출두변경영서(出頭變更令書) 발부 번호	제 호						
징용영서(徵用令書) 발부 연월일	몇 년 몇 월 몇 일						
<p>출두변경영서(出頭變更令書)</p> <p>본적 : 무슨 도(道) · 부현(府縣) 무슨 부 · 군(郡) · 도(島) · 시(市) 무슨 읍(邑) · 면(面) · 구(區) · 정(町) · 촌(村) 무슨 정 · 동(洞) · 리(里) · 번지(番地)</p> <p>거주 또는 취업 장소 : 무슨 도 무슨 부 · 군 · 도(島) 무슨 읍 · 면 무슨 정 · 동 · 리 · 번지 씨명</p> <p>몇 년 몇 월 몇 일 생(生)</p> <p>이 사람은 그 출두해야 할 날짜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p> <table border="1"> <tr> <td>출두해야 할 날짜</td> <td>몇 년 몇 월 몇 일 오전 / 오후 몇 시</td> </tr> <tr> <td>출두해야 할 장소</td> <td>어디 어디</td> </tr> <tr> <td>비고</td> <td></td> </tr> </table> <p style="text-align: right;">19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조선총독 씨명 (인) 도지사 씨명 (인)</p>		출두해야 할 날짜	몇 년 몇 월 몇 일 오전 / 오후 몇 시	출두해야 할 장소	어디 어디	비고	
출두해야 할 날짜	몇 년 몇 월 몇 일 오전 / 오후 몇 시						
출두해야 할 장소	어디 어디						
비고							

출두변경영서를 교부받은 자의 마음자세

1. 출두변경영서를 교부받은 자는 해당 영서에 첨부된 수령증에 수령 연월일 시간을 기입하여 날인한 다음 즉시 이를 제출해야 한다.
2. 출두변경영서를 교부받은 자는 징용영서와 함께 해당 영서를 지참하고 지정된 날짜 및 장소로 출두하여 해당 관리(官吏) 또는 관리 공장 혹은 지정 공장의 사업주에게 신고해야 한다.

수령증

출두변경영서(出頭變更令書) 발부 번호	제 호
수령증	
1 출두변경영서 (몇 년 몇 월 몇일 발부 제 호)	
이를 수령한다.	
19 년 월 일 오전 / 오후 시 분	
본적 : 무슨 도부(道府) · 현(縣) 무슨 부 · 군도(郡島) · 시(市) 무슨 읍(邑) · 면구(面區) · 정(町) · 촌(村) 무슨 정동(町洞) · 리(里) · 번지(番地)	
거주 또는 취업 장소 : 무슨 도 무슨 부 · 군 · 도(島) 무슨 읍 · 면 무슨 정 · 동 · 리 · 번지	
씨명 (인)	조선총독 씨명 (인) 도지사 씨명 (인)

기재하는 마음자세

1. 본적 및 거주 또는 취업 장소는 종전에 발부한 징용영서에 기재한 본적 및 거주 또는 취업 장소를 기재하도록 한다.
2. 출두해야 할 장소는 그 소재지 및 명칭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한다.
3. 비고는 조선 총독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한다.
4. 문자는 예서로 명료하게 기재하도록 한다.
5. 출두변경영서를 교부받은 자가 인장을 지참하지 않았을 때에는 사인 또는 지장 날인을 하는 것도 금하지 않도록 한다.

(양식 제2호의 3) (용지는 백지로 하고 크기는 일본 표준 규격 B5로 한다)

징용취소영서(徵用取消令書) 발부 번호	제 호
징용영서(徵用令書) 발부 연월일	몇 년 몇 월 몇 일
징용취소영서 본적 : 무슨 도(道) · 부(府) · 현(縣) 무슨 부 · 군(郡) · 도(島) · 시(市) 무슨 읍(邑) · 면(面) · 구(區) · 정(町) · 촌동(村洞) · 리(里) · 번지(番地) 거주 또는 취업 장소 : 무슨 도 무슨 부 · 군 · 도(島) 무슨 읍 · 면 무슨 정(町) · 동(洞) · 리 · 번지 씨명 몇 년 몇 월 몇 일생(生) 이 사람은 그 징용을 취소한다.	
19 년 월 일	
조선총독 씨명 (인) 도지사 씨명 (인)	

징용취소영서를 교부받은 자의 마음자세

징용취소영서를 교부받은 자는 해당 영서에 첨부된 수령증에 수령 연월일 시간을 기입하여 날인한 다음 즉시 이를 제출해야 한다.

정용취소영서(徵用取消令書) 발부 번호	제 호	
수령증		
1 정용취소영서 (몇 년 몇 월 몇 일 발부 제 호)		
다음을 수령한다.		
19 년 월 일 오전 / 오후 시 분		
본적 : 무슨 도(道) · 부(府) · 현(縣) 무슨 부 · 군(郡) · 도(島) · 시(市) 무슨 읍(邑) · 면(面) · 구(區) · 정(町) · 촌(村) 무슨 정 · 동(洞) · 리(里) · 번지(番地)		
거주 또는 취업 장소 : 무슨 도 무슨 부 · 군 · 도(島) 무슨 읍 · 면 무슨 정 · 동 · 리 · 번지		
씨명	(인)	
조선총독	씨명	(인)
도지사	씨명	(인)

기재하는 마음자세

1. 본적 및 거주 또는 취업 장소는 종전에 발부한 정용영서(徵用令書)에 기재한 본적 및 거주 또는 취업 장소를 기재하도록 한다.
2. 문자는 예서로 명료하게 기재하도록 한다.
3. 정용취소영서(徵用取消令書)를 교부받은 자가 인장을 지참하지 않았을 때에는 사인 또는 지장 날인을 하는 것도 금하지 않도록 한다.

(양식 제2호의 4) (용지는 백지로 하고 크기는 일본 표준 규격 B5로 한다)

정용변경영서(徵用變更令書) 발부 번호	제 호
정용영서(徵用令書) 발부 연월일	몇 년 몇 월 몇 일
정용변경영서	
현재 종사하는 장소 : 어디 어디	
본적 : 무슨 도(道) · 부(府) · 현(縣) 무슨 부 · 군(郡) · 도(島) · 시(市)	
무슨 읍(邑) · 면(面) · 구(區) · 정(町) · 촌(村) 무슨 정 · 동(洞) · 리(里) · 번지(番地)	
거주 또는 취업 장소 : 무슨 도 무슨 부 · 군 · 도(島) 무슨 읍 · 면 무슨 정 · 동 · 리 · 번지	
성명	
몇 년 몇 월 몇 일 생(生)	
이 사람은 그 무엇무엇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된다).	
종사해야 할 총동원 업무를 행하는 관청 또는 관리 공장 혹은 지정 공장의 명칭	어디 어디
종사해야 할 총동원 업무	무엇 무엇
종시해야 할 업무	무엇 무엇
종사해야 할 장소	어디 어디
징용기간	몇 년 몇 월 몇 일부터 몇 년 몇 월 몇 일까지
출두해야 할 날짜	몇 년 몇 월 몇 일 오전/오후 몇 시
출두해야 할 장소	어디 어디
비고	
19 년 월 일	
조선총독 씨명 (인)	
도지사 씨명 (인)	

정용변경영서(徵用變更令書)를 교부받은 자의 마음자세

1. 정용변경영서를 교부받은 자는 해당 영서에 첨부된 수령증에 수령한 연월일 시간을 기입하여 날인한 다음 즉시 이를 제출해야 한다.
2. 출두해야 할 날짜 및 장소에 관해 정용변경영서를 교부받은 자는 정용영서와 함께 해당 영서를 지참하고 지정된 날짜 및 장소로 출두하여 해당 관리(官吏) 또는 해당 관리 공장 혹은 지정 공장의 사업주에게 신고해야 한다.

징용변경영서(徵用變更令書) 발부 번호	제 호	
수령증		
1 무엇 무엇에 관한 징용변경영서 (몇 년 몇 월 몇 일 발부 제 몇 호)		
이를 수령한다.		
19 년 월 일 오전 / 오후 시 분		
현재 종사하는 장소 : 어디 어디		
본적 : 무슨 도(道) 무슨 현(縣) 무슨 부(府) · 군(郡) · 도(島) · 시(市) 무슨 읍(邑) · 면(面) · 구(區) · 정(町) · 촌(村) 무슨 정 · 동(洞) · 리(里) · 번지(番地)		
거주 또는 취업 장소 : 무슨 도 무슨 부 · 군 · 도(島) 무슨 읍 · 면 무슨 정 · 동 · 리 · 번지		
씨명	(인)	
조선총독	씨명	(인)
도지사	씨명	(인)

기재하는 마음자세

1. 현재 종사하는 장소, 취업 장소, 종사해야 할 장소 또는 출두해야 할 장소는 그 소재지 및 명칭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한다.
- 1의 2. 현재 종사하는 장소가 군기보호상(軍機保護上) 필요에 따라 기재하지 않아야 할 장소일 경우에는 이를 기재하지 않도록 한다.
2. 현재 종사하는 장소는 종전에 발부한 징용영서(徵用令書), 출두변경영서(出頭變更令書) 또는 징용변경영서(徵用變更令書)에 기재한 종사해야 할 장소를 기재하도록 한다.
3. 본적 및 거주 또는 취업 장소는 피징용자가 지정한 장소에 출두하기 전에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두한 경우에 발부하는 징용변경영서에 한해 이를 기재하도록 한다. 이 경우에는 현재 종사하는 장소는 기재할 필요가 없다.
4. 군기 보호 상, 그밖에 필요할 때에는 종사해야 할 총동원 업무, 종사해야 할 취업 혹은 장소 또는 출두해야 할 날짜 혹은 장소는 이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5. 불필요한 문자는 말소하도록 한다.
6. 비고는 조선 총독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한다.
7. 문자는 예서로 명료하게 기재하도록 한다.
8. 징용변경영서를 교부받은 자가 인장을 지참하지 않았을 때에는 사인 또는 지장 날인을 하는 것도 금하지 않도록 한다.

(양식 제2호의 5) (용지는 백지로 하고 크기는 일본 표준 규격 B5로 한다)

징용해제영서(徵用解除令書) 발부 번호	제 호
징용영서(徵用令書) 발부 연월일	몇 년 몇 월 몇 일
징용해제영서	
현재 종사하는 장소 : 어디 어디	
본적 : 무슨 도(道) · 부(府) · 현(縣) 무슨 부 · 군(郡) · 도(島) · 시(市) 무슨 읍(邑) · 면(面) · 구(區) · 정(町) · 촌(村) 무슨 정 · 동(洞) · 리(里) · 번지(番地)	
거주 또는 취업 장소 : 무슨 도 무슨 부 · 군 · 도(島) 무슨 읍 · 면 무슨 정 · 동 · 리 · 번지	
씨명	
몇 년 몇 월 몇 일 생(生)	
이 자는 몇 년 몇 월 몇 일에 징용을 해제한다(된다).	
19 년 월 일	
조선총독 씨명 (인)	
도지사 씨명 (인)	

징용해제영서(徵用解除令書)를 받은자의 마음자세

징용해제영서를 받은자는 해당 영서에 첨부된 수령증에 수령한 연월일 시간을 기입하고 날인한 다음
즉시 이를 제출해야 한다.

징용해제영서(徵用解除令書) 발부 번호	제 호	
수령증		
1 징용해제영서(徵用解除令書) (몇 년 몇 월 몇 일 발부 제 몇 호)		
이를 수령한다.		
19 년 월 일 오전 / 오후 시 분		
현재 종사하는 장소 : 어디 어디		
본적 : 무슨 도(道) · 부(府) · 현(縣) 무슨 부 · 군(郡) · 도(島) · 시(市)		
무슨 읍(邑) · 면(面) · 구(區) · 정(町) · 촌(村) 무슨 정 · 동(洞) · 리(里) · 번지(番地)		
거주 또는 취업 장소 : 무슨 도 무슨 부 · 군 · 도(島) 무슨 읍 · 면 무슨 정 · 동 · 리 · 번지		
씨명	(인)	
조선총독	씨명	(인)
도지사	씨명	(인)

기재하는 마음자세

1. 현재 종사하는 장소는 그 소재지 및 명칭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한다.
2. 현재 종사하는 장소가 군기 보호 상 필요에 따라 기재해서는 안 되는 장소인 경우에는 이를 기재하지 않도록 한다.
3. 현재 종사하는 장소는 종전에 발부한 징용영서(徵用令書), 출두변경영서(出頭變更令書) 또는 징용변경영서(徵用變更令書)에 기재한 종사해야 할 장소를 기재하도록 한다.
4. 본적 및 거주 또는 취업 장소는 피징용자가 지정된 장소에 출두하기 전에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두한 경우에 발부하는 징용해제영서(徵用解除令書)에 한해 이를 기재하도록 한다. 이 경우에는 현재 종사하는 장소는 기재할 필요가 없다.
5. 문자는 해서(楷書)로 명료하게 기재하도록 한다.
6. 징용해제영서를 교부받은 자가 인장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인 또는 지장 날인하는 것을 금하지 않도록 한다.

(양식 제3호) (용지의 크기는 일본 표준 규격 B7으로 하고 중앙 점선을 따라 반으로 접도록 한다)

(겉면)

국민징용(國民徵用)에 관한 임검표(臨檢票)

(뒷면)

제 호 19 년 월 일 교부

관직(官職)

조선총독부인(朝鮮總督府印) 또는 도인(道印)

씨명

국가총동원법 제31조

: 정부는 국가 총동원상 필요할 때에는 명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를 요구하거나 해당 관리(官吏)에게 필요한 장소에 임검(臨檢)하여 업무의 상황 또는 장부(帳簿) 서류 그 밖의 것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국가총동원법 제42조

: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 관리의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엔 이하의 별금에 처한다.

국민징용령 제20조 제2항 및 제25조의 요지

: 조선 총독 또는 도지사가 징용과 관련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총동원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관리에게 공장·사업장, 그 밖의 장소에 임검하여 업무의 상황 또는 장부(帳簿)서류, 그 밖의 것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해당 관리에게 그 신분을 증명할 증표를 휴대하게 해야 한다.

국민징용령시행규칙 제15조

: 해당 관리령(官吏令)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검하는 경우에는 별표 양식제3호의 증표를 휴대해야 한다.

응징사(應徵士) 복무기율(服務紀律)

1944년 2월 8일

조선총독부령(朝鮮總督府令) 제34호

제1조 국민징용령(國民徵用令) 제16조의 5의 규정에 따른 응징사(應徵士)의 복무에 관해서는 본령(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 응징사는 징용의 본의(本義)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율(紀律)을 준수해야 한다.

1. 응징사는 직기(職紀)를 그리고 책임을 중시하고 모든 능력을 발휘하여 성심을 다해 직무에 임해야 한다.
2. 응징사는 지성상장(至誠上長)에 복종하고 상하가 서로 믿어 화충협동(和衷協同)하여 서로 경애(敬愛)해야 한다.
3. 응징사는 솔선정신(率先挺身)하여 부하의 모범이 되어, 그 신망을 한 몸에 받도록 행동해야 한다.
4. 응징사는 지식·기능·연마에 노력해야 한다.
5. 응징사는 기절(氣節)을 그리고 염치를 중시하여 응징사로서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6. 응징사는 거상간소(居常簡素)하게 하여 질실강의(質實剛毅)의 기풍을 진작하여 견인불발(堅忍不拔)의 정신을 힘양해야 한다.
7. 응징사는 보건 위생에 유의하여 체력·연마에 힘써야 한다.
8. 응징사는 직장·보안에 유의하여 재해 예방, 그 밖의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9. 응징사는 기계, 기구, 재료, 제품 그 밖의 물자를 존중하여 함부로 거칠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
10. 응징사는 자기의 직무에 관해 모두 알고 있는 모든 기밀을 유지하고 방첩상(防諜上)에 유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제3조 사업주인 응징사는 생산 수행의 모든 책임을 진다는 자각을 갖고 솔선수범하여 전 조의 기율을 준수하는 것 외에, 항상 사기 진작에 노력하여 명확한 기획하에 시의적절한 지휘를 진행함과 동시에 공장·사업장 총동원 일가의 육친(肉親)과 같은 단결을 도모하여 전력 증강의 결실을 맺어야 한다.

제4조 응징사가 전 조의 기율을 위반하여 다른 응징사로서의 본분(本分)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을 때에는 이를 징계할 수 있다.

제5조 징계는 다음 두 가지로 한다.

1. 훈고(訓告).
 2. 견책(譴責).
- 훈고 및 견책은 문서를 작성해 실행한다.

제6조 사업주인 응징사의 징계는 조선총독, 그 밖의 징계는 해당 관리 공장 혹은 지정 공장의 소재지

를 관할하는 도지사가 이를 행한다. 조선 총독이 견책의 징계를 행한 경우에는 조선총독부 관보(朝鮮總督府 官報)에 이를 공고(公告)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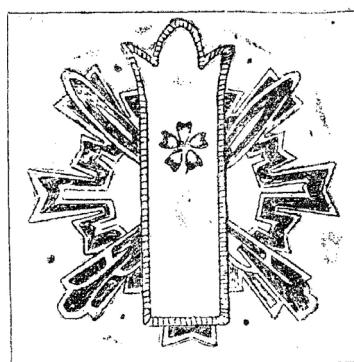
제7조 응징사는 별표 제식에 따른 휘장을 왼쪽 가슴에 달아야 한다.

응징사가 아닌 자는 전 항의 휘장을 달 수 없다.

부칙(附則)

본령(令)은 발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식(制式)〉



1. 본 그림의 실물 크기를 나타낸다.
2. 바탕 및 색(地及色) : 포지(布地) 국방색(國防色)
3. 방패 : 검정색
4. 방패 테두리 : 금색 또는 황색
5. 벚꽃 모양 : 금색 또는 황색
6. 창 : 은색 또는 홍해□□□색(紅海□□色)
7. 창 테두리 : 은색 또는 짙은 갈색
8. □광(□光) : 홍색(紅色) 또는 백색

피징용자(被徵用者) 표창규정(表彰規程)

1944년 8월 8일

조선총독부령(朝鮮總督府令) 제288호

제1조 국민징용령(國民徵用令) 제16조의 4의 규정에 따른 피징용자의 표창은 본령(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 조선총독(朝鮮總督)은 피징용자이면서 징용의 본의(本義)에 따라 그 본분(本分)을 다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된 자에 대해 상장(賞狀)을 수여하여 이를 표창한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표창해야 할 자의 공적이 특히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표창장을 주고 응징유공장(應徵有功章)을 수여한다.

제3조 조선총독은 피징용자이면서 그 임무를 완결한 자에게 응징장 수여 증서(應徵狀 授與證書)를 주고 응장장(應徵章)을 수여한다.

제4조 응징유공장 및 응징장의 형상(形狀) 및 제식(制式) 아울러 상장(賞狀), 표창장 및 응징장 수여 증서의 양식은 첨부한 그림과 같다.

제5조 응징유공장은 오른쪽 가슴에 달도록 한다.

제6조 응징유공장을 수여받을 자가 그 전에 사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를 수여한다.

제7조 응징유공장을 수여받은 자가 수상자로서의 체면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반납하도록 해야 한다.

제8조 응징유공장을 수여받은 자가 이를 잃어버렸거나 훼손시켰을 경우에, 조선총독은 청원에 따라 이를 다시 주어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응징유공장을 다시 받은 다음에 잃어버린 응징유공장을 찾았을 때에는 즉시 조선총독에게 그 하나를 반납해야 한다.

제9조 응징유공장은 본인에 한해 종신토록 달 수 있으며 유족은 이를 보존할 수 있다.

제10조 응징유공장을 수여한 경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반납하게 한 경우에는 조선총독부 관보에 공시한다.

제11조 응징유공장은 식전(式典), 그 밖의 이유가 있을 때에는 달도록 한다.

제12조 제5조 내지 제9조 및 전 조의 규정은 응징장에 준용(準用)한다.

제13조 본령(令)은 응징장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 외에, 육군 또는 해군의 사업에 사용되는 피징용자에게는 이를 준용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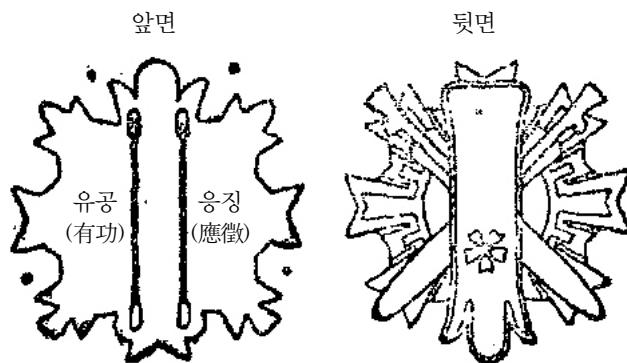
부칙(附則)

본령은 발표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은 본령 시행 전 이미 징용 해제된 자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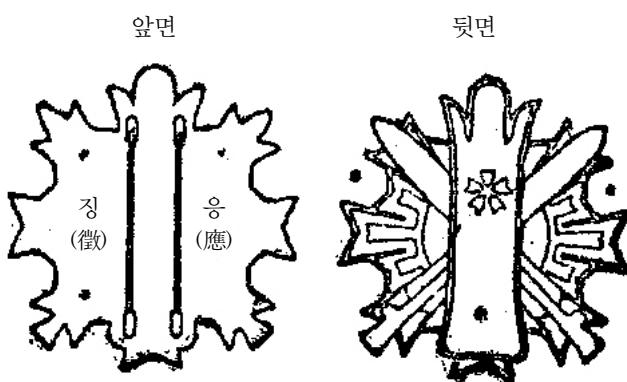
〈첨부 그림〉

〈응징유공장(應徵有功章) 및 응징장(應徵章)의 형상(形狀)〉



응징유공장의 제식	
바탕질	은색 금속
크기	위의 그림대로
윗면	방패 부분
	창 부분
	일장(日章) 및 광(光) 부분
뒷면	은색 배꽃 바탕. 응징유공이라는 네 글자를 도드라지게 새긴다.
측면	은색.

〈응징장〉



웅징장의 제식	
바탕질	은색 금속.
크기	위의 그림대로
앞면	은색
뒷면	은색 배꽃 바탕. 웅징이라는 두 글자 도드라지게 새긴다.
측면	은색

비고〉 바탕질은 전시특례로 하되 다른 것으로 이에 충당케 할 수 있다.

〈상장(賞狀)의 양식〉

상장	웅징사(應徵士) 씨 명
위 사람은 징용의 본의(本義)에 따라 그 본분(本分)을 다하여 타의 모범이 되어 이에 이를 표창한다.	
년 월 일	
조선총독 위훈작(位勳爵) 씨 명 (인)	

비고〉 피표창자(被表彰者) 중 국가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피징용자인 경우에는 상장에서 '웅징사'라는 표현을 제외한다.

〈표창장(表彰狀) 양식〉

표창장	웅징사 씨 명
위 사람은 징용의 본의(本義)에 따라 그 본분(本分)을 다하여 타의 모범이 되어 이에 응징유공장을 수여하여 이를 표창한다.	
년 월 일	
조선총독 위훈작(位勳爵) 씨 명 (인)	

비고〉 피표창자(被表彰者) 중 국가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피징용자인 경우에는 상장에서 '웅징사'라는 표현을 제외한다.

〈응징장 수여 증서 양식〉

응징장 수여 증서

씨 명

위 사람은 징용의 본의(本義)에 따라 그 임무를 완수하여 이에 이 응징장을 수여한다.

년 월 일

조선총독 위훈작(位勳爵) 씨 명 (인)

국민징용부조규칙(國民徵用扶助規則)

1943년 9월 30일

조선총독부령(朝鮮總督府令) 제309호

제1조 국민징용령(國民徵用令) 제19조의 3의 규칙에 따른 부조(扶助)는 본령(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 국민징용령 제19조의 3 제1항의 가족은 다음에 제시하는 자로 한다.

1. 피징용자(被徵用者) 또는 피징용자였던자의 배우자(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사실상 혼인 관계와 마찬가지 상황에 있는자를 포함한다. 이하 마찬가지) 또는 자녀이면서 현재 같은 집 사는 자. 다만, 양자는 가독(家督) 상속인 또는 호주(戶主) 상속인에 한한다.
2. 전 호에 제시한 자를 제외한 피징용자 또는 피징용자였던자에 한해 부양을 받아야 할 자이면서 피징용자가 징용되었을 때 또는 징용을 해제받았을 때부터 줄곧 같은 집에 살고 있는 자.
3. 전 2호에 제시한 자를 제외한 피징용자 또는 피징용자였던자에게 부양받아야 할 자이면서 피징용자가 징용되었을 때 또는 징용을 해제받았을 때 같은 세대에 있고 또한 줄곧 그 세대에 있는 자.

제3조 국민징용령 제19조의 3 제2항의 유족은 다음에 제시한 자로 한다.

1. 사망한 피징용자 또는 피징용자였던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이면서 현재 피징용자 또는 피징용자였던자가 사망한 때 속했던 집에 있는 자. 다만, 양자는 가독 상속인 또는 호주 상속인에 한한다.
2. 전 호에 제시한 자를 제외한 사망한 피징용자 또는 피징용자였던자에게 부양을 받아야 할 자이면서 피징용자 또는 피징용자였던자가 사망한 때부터 줄곧 같은 집에 있는 자.
3. 전 2호에 제시한 자를 제외한 사망한 피징용자 또는 피징용자였던자에게 부양을 받아야 할 자이면서 피징용자가 징용되었을 때 또는 징용을 해제받았을 때 같은 세대에 있고 또한 줄곧 그 세대에 있는 자.

제4조 부조는 다음 각 호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루어진다.

1. 피징용자가 징용됨으로써 가족과 세대를 달리 하게 된 경우에 그 가족이 생활하는 데 곤란을 겪게 된 경우.
2. 피징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지 않은 업무상 부상·질환을 얻었거나 질병에 걸려 이로 인해 징용을 해제된 경우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생활하는 데 곤란을 겪게 된 경우.
3. 피징용자가 징용되어 총동원 업무에 종사하던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지 않은 업무상 부상을 얻었거나 질병에 걸려 이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이 생활하는 데 곤란한 경우.
피징용자가 징용된 경우에 가족과 세대를 달리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에 따라 그 가족이 생활하기에 곤란을 겪게 되는 경우에 부조를 할 수 있다.

제5조 부조는 생활에 필요한 한도를 넘을 수 없다.

부조의 종류는 생활 부조, 의료·조산(助産), 생활 부조 및 매장비의 지급으로 한다

제6조 부조는 부조를 받고자 하는 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도지사(道知事)가 실시한다.

부조는 부조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부윤(府尹)·읍면장(邑面長)의 신청에 따라 실시한다. 단,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신청이 없어도 이를 실행할 수 있다.

부조의 정도 및 방법은 도지사가 피징용자의 지급을 받는 급여 또는 피징용자였던 자 및 부조를 받으려고 하는 자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받는 보험 급부, 부조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소득, 노동 능력 그 밖 가정의 사정 등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제7조 부조는 부조를 받은 자의 거택(居宅)에 실시한다.

도지사가 거택 부조를 할 수 없거나 이를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한 때에는 부조를 받은 자를 적당한 시설에 수용하거나 수용을 위탁하여 부조할 수 있다.

제8조 생활 부조는 금전 또는 물품의 급여로 실시한다.

제9조 생업 부조는 생업에 필요한 자금, 기구, 자료의 급여 혹은 화여(貨與)를 하거나 또는 생업에 필요한 기능을 주어서 실시한다.

제10조 거택 부조의 경우에 생활 부조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한 사람 당 하루에 35전 이내로 한다.

1. 세대에 부조를 받는 자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전 항의 비용은 감액할 수 있다.

제11조 거택 부조의 경우에 의료 및 생업 부조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의 한도는 도지사·조선 총독의 인가를 받아 정한다.

제12조 거택 부조의 경우에 조산(助産)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12엔 이내로 한다.

제13조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용 부조(收容扶助)의 경우에 부조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의 한도는 도지사·조선 총독의 인가를 받아 정한다.

제14조 부조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매장을 행하는 유족에게 매장비를 지급한다.

매장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82엔 이내로 한다.

부조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 매장을 행할 유족이 없을 때에는 부조를 한 도지사가 매장을 해야 한다.

제15조 재해로 인해 필요한 경우에 도지사는 1 세대 총액 30엔을 한도로 생활 부조를 위해 금전 혹은 물품을 임시 급여하거나 이와 아울러 급여할 수 있다.

제16조 피징용자 또는 피징용자였던 자가 6년의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와 그 가족 및 유족에게 부조를 하지 않는다.

제17조 피징용자 또는 피징용자였던 자가 6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해진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무효가 될 때까지의 동안에 그 자 및 그 가족 및 유족에게 부조를 하지 않는다.

제18조 피징용자 또는 피징용자였던 자의 가족 또는 유족이 6년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진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해 부조를 하지 않는다. 6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해진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무효화되기까지의 동안에 역시 마찬가지이다.

- 제19조 피징용자이면서 도망한 자에 대해서는 그 도망 동안 그 가족에 대해 부조를 하지 않는다.
- 제20조 피징용자 또는 피징용자였던 자이면서 태만하거나 소행불량한 자에 대해서는 그 피징용자인 자 및 그 피징용자 또는 피징용자였던 자의 가족 및 유족에게 정황에 따라 부조를 하지 않거나 부조의 정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
- 피징용자 또는 피징용자였던 자의 가족 또는 유족이면서 태만하거나 소행불량한 자에 대해서 역시 전 항과 마찬가지이다.
- 제21조 피징용자였던 자이면서 일본의 국적을 상실한 자에 대해서 부조를 하지 않는다.
- 제22조 피징용자의 가족에 대한 부조는 필요한 경우에 피징용자 징용 해제 후 20일 이내로 이를 계속할 수 있다.
- 제23조 피징용자 또는 피징용자였던 자의 가족에 대한 부조는 피징용자 또는 피징용자였던 자 사망 후 3개월 이내로 이를 계속할 수 있다.
- 전 항의 규정에 따라 부조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동안 피징용자 또는 피징용자였던 자의 유족으로서의 부조는 하지 않는다.
- 제24조 피징용자의 가족에 대한 부조는 피징용자가 제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른 후 3개월 이내로 이를 계속할 수 있다.
- 전 항의 규정에 따라 부조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동안 피징용자였던 자의 가족으로서의 부조는 하지 않는다.
- 제25조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도지사는 조선 총독의 인가를 받아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14조 제2항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금전을 증액시킬 수 있다.
- 제26조 부조의 폐지 혹은 정지 또는 부조의 정도 혹은 방법의 변경은 도지사가 행한다.
- 제27조 부조의 폐지 혹은 정지 또는 부조의 정도 혹은 방법의 변경 처분은 부조를 받은 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부윤·읍면장을 거쳐 통지한다.
- 도지사가 부조의 개시, 폐지 혹은 정지 또는 부조의 정도 혹은 방법의 변경을 한 경우에는 피징용자를 사용하거나 사용한 관청의 장 또는 관리 공장 혹은 지정 공장의 사업주에게 이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 제28조 관리 공장 또는 지정 공장의 사업주는 피징용자이면서 해당 관리 공장 또는 지정 공장에서 사용하거나 사용한 자의 징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 부조를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도지사 또는 부윤·읍면장으로부터 조회를 받았을 때에는 즉각 통지해야 한다.
- 관리 공장 또는 지정 공장의 사업주는 해당 관리 공장 또는 지정 공장에서 사용하는 피징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지 않은 업무상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려 이로 인해 징용을 해제받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즉각 해당 피징용자였던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부윤·읍면장에게 이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 관리 공장 또는 지정 공장의 사업주는 해당 관리 공장 또는 지정 공장에서 사용하는 부조를 받은 가족을 가진 피징용자 다음 각 호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부조를 행하는 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1. 지급을 받은 급료, 임금 또는 급료, 임금에 준하는 급여의 액수에 드물게 변경이 있어 부조의 폐지 또는 부조의 정도 변경을 요한다고 인정한 경우.
2. 제16조, 제17조, 제19조 또는 제20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3. 종사해야 할 총동원 업무를 행하는 관리 공장 또는 지정 공장에 대해 징용을 변경받았을 경우.
제29조 부조를 거부당한 자 또는 부조를 폐지 혹은 정지당한 자는 60일 이내에 조선 총독에게 심사를 청원할 수 있다.

전 항의 규정에 따른 청원은 문서로 처분을 행하는 도지사를 거쳐 제출하여 행해야 한다.
조선 총독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부조를 행하게 하거나 부조의 폐지 혹은 정지 처분을 취소하도록 할 수 있다.
제30조 관리 공장 또는 지정 공장의 사업주는 피징용자이면서 해당 관리 공장 또는 지정 공장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된 자 또는 그 가족 혹은 유족에 대해 행한 부조에 필요한 비용을 국고로 납입해야 한다.
피징용자가 징용을 해제받거나 사망한 경우에 사업주가 본인 또는 유족에 대해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부조 또는 그에 준하는 출손(出損)을 한 경우에 조선 총독은 전 항의 비용 납입을 면제할 수 있다.

부칙(附則)

본령(令)은 발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가총동원법(國家總動員法) [초(抄)]

1938년 4월 1일

법률(法律) 제55호

제1조 본 법(法)에서 국가 총동원이란, 전시(전쟁에 준하는 사변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마찬가지이다)에 국방(國防) 목적 달성을 위해 국가의 전력을 가장 유효하게 발휘하도록 인적 및 물적 자원을 통제 운용한다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본 법에서 총동원 업무란, 다음에 제시한 것을 말한다.

1. 총동원 물자의 생산, 수리, 배급, 수출, 수입 또는 보관과 관련한 업무.
2. 국가 총동원상 필요한 운수 또는 통신과 관련한 업무.
3. 국가 총동원상 필요한 금융과 관련한 업무.
4. 국가 총동원상 필요한 위생, 가축 위생 또는 구호(救護)와 관련한 업무.
5. 국가 총동원상 필요한 교육 훈련과 관련한 업무.
6. 국가 총동원상 필요한 시험 연구와 관련한 업무.
7. 국가 총동원상 필요한 정보 또는 계발(啓發) 선전(宣傳)과 관련한 업무.
8. 국가 총동원상 필요한 경비(警備)와 관련한 업무.
9. 앞의 각 호에 제시한 것을 제외한 칙령(勅令)으로 지정한 국가 총동원상 필요한 업무.

제4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상 필요할 때에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국 신민(帝國臣民)을 징용하여 총동원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단, 병역법의 적용을 금하지 않는다.

제31조 정부는 국가 총동원상 필요한 경우에는 명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를 요구하거나 해당 관리(官吏)에게 필요한 장소에 임검(臨檢)하여 업무 상황 혹은 장부 서류, 그 밖의 것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 다음 각 호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징용에 응하지 않거나 동 조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
2.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자.

〈출전 : 國民總力朝鮮聯盟, 『國民徵用の解説』, 1944년 10월〉

3) 조선노무협회

(1) 오노 정무총감, 조선노무협회 임무의 중요함

회장 정무총감 오노 로쿠이치로(大野緑一郎)

조선노무협회가 금년 6월말 설립한 이래, 점차 그 기구를 갖추어 국가의 요구에 대응하여 소정의 사명을 향해 사업을 개시한 것은 경하하여 마지않은 바이다.

요즘 세계정세는 독소전(獨蘇戰)의 전개, 서아(西亞)로의 전화파급(戰禍波及), 미국의 참전태도 적극화 등에 따라 점점 심각도를 더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동아정세 또한 영·미·네덜란드 등의 일본자산동결에 따른 전면적 경제압박, 소위 ABCD 공동전선의 결성 등, '지나사변'의 다변성이 점점 그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가 이에 고도국방력의 완성을 기해 다음에 올만한 중대사변에 대한 임전체제 확립에 매진하게 된 과정은 이미 국민 주지의 사실에 속한다.

물론 국민은 똑같이 전투에 관한한 언제 어떠한 적성(敵性) 국가군의 도전을 만나는 경우도 깊이 육해군부당국의 합산을 신뢰하고, 아무런 기우를 품을 필요가 없지만, 그 대신 우리 무척 육해군으로 하여금 뒷날의 근심 염려 없이 감투(敢鬪)하게 하기 위해서 다해야 할 후방 국민의 임무가 종래보다 배로 중대해진 것을 통절하게 자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종래 우리나라의 국민경제는 유감스럽지만 식량 하나를 제외하면 영·미의 세력권에 의존하는바 많은 것을 면하지 못하고, '지나사변' 수행에서 항상 제3국의 교만한 견제를 받는 원인이 되었지만, 지금은 그들 상대국과의 상호자산동결을 기회로 삼아, 우리나라는 동아공영권 내에서 전시국민경제의 조달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세에 이르게 된 것이고, 이에 공영권 확립에 따른 대동아의 수많은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시기를 맞이함과 동시에 목전에 이 위국을 참고 견디기 위해 국민으로서 대단한 결의를 필요로 하는 단계에 도달한 것이다.

즉 당면 급무로서 우리들 국민은 어디까지나 '성전'을 수행하고 국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자·기재 등 모든 것을 적의 있는 타국의 공급에 의존하는 일 없이 스스로의 고안 노력에 의해 산출할 각오가 필요하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는 구래의 기업 또는 근로에 동반하는 개인적 공리주의의 관념 태도를 배척하고, 국민활동의 모든 동기, 목적을 국방력 증강의 일점에 집중할 필연에 이르려서는 많은 말도 필요 없고, 우리 국민경제 내지 전쟁경제를 완전히 자력주의의 기조 상에 재건하지 않으면 쉽게 시국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어려운 경우로 이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정부가 국가총동원관계법령을 강화하는데 상응하여 국민 측으로부터 개로운동(皆勞運動)이 활발히 일어나기 시작한 근거를 이룬 것이다.

이때에 즈음해서 우리 조선이 소유하는 물적 자원과 인적 요소를 돌아보면, 그 양과 질에 있어서 국방국가에 기여할 수 있을만한 극히 다대한 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실로 자신을 갖는 바지만, 국가에 의한 일정 기획의 방침에 따라 인력을 적절하게 안배해서 생산 활동에서의 효율의 완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조직·통제·훈련의 치밀함을 요하는 것은 명백하고, 관(官)에 협력해서 이 부문을 담당해야할 사명에 서는 조선노무협회(朝鮮勞務協會)의 임무 또한 무척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생각하건대 노동대중으로 하여금 관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흔쾌히 그 부서에 대해 근로보국의 정성 을 바치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정신을 계도하여 착오 없는 시국 인식하에 근로의 신성, 숭고한 까닭 을 이해를 요하게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따라서 이 본지를 체득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업주 측에 게 우선 구래의 노동으로써 상품이라고 간주하는 관념을 시정하고, 노동이 인격의 표현으로서 직능봉 공(職能奉公)의 길이라고 하는 신시대정신의 이해에 서서, 그들을 화도(化導)하고 포옹하는 아량을 갖 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국가는 가능한 한 노무자에 대한 후생 시설을 강구하고, 국민총력운동 또한 개로운동의 분야에서 근로에 관한 신국민 도덕의 고취에 힘쓰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국가의 요청에 따라 중견노무자의 단련, 노무관리의 지도, 그 밖의 직접 관의 노무행정의 일부를 대행하려고 하는 노무협회로서, 이 사이에 준비해야 할 사항이 상당히 광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동시에 회원인 개개 사업주 모두에게도 금후의 시무(時務)에 처해야 할 진중한 준비를 바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시국의 추이는 언제 통렬한 번운복우(翻雲覆雨)¹²⁾ 현상을 초래할지 예측할 수가 없고, 고도 국방국 가 체제 확립에 작은 응체(凝滯), 빈틈이 있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비상시다. 나는 본 회 회장의 자격으로 전 회원 모두의 분기(奮起)와 협력을 기대하는 바이다.

〈출전 : 政務總覽 大野緑一郎, 「本協會の任重し」, 『朝鮮勞務』 제1권 1호, 1941년 10월, 2~4쪽〉

(2) 미바시(三橋孝一郎), 조선노무협회의 설립에 즈음하여

경무국장(警務局長) 미바시 고이치로(三橋孝一郎)

이번 노무에 관한 관의 시책에 협력하는 관민일체의 특수기관으로서 조선노무협회가 설립되고 그 기관지로서 『조선노무』의 발간을 보기에 이른 것은 정성에 시기가 더해져 흔쾌하기 짝이 없다.

목하 긴박한 임전태세 하에서는 고도국방국가체제의 급속한 확립이 기대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국력충실의 기초가 되어야 할 국가생산력의 비약적 확충이야말로 시국하 중요한 요무다. 그리고 이 생산력의 확충에 대해 그 근간이 되어야 할 것은 결국 사람이고 노동력이다. 즉 전시하에 있어서는 노무 동원은 병력동원과 서로 똑같이 중대한 역할이 부하되는 것이다.

조선에서는 이번 '지나사변'의 발발에 따라 대륙전진병참기지로서 중요한 역할이 부하되어 중요 제생산의 비약적 발전을 보아가고 있지만, 이에 따라 그 노동력 수요도 현저하게 증대해 가고, 이 공급력의 확보는 극히 중요한 문제가 된 것이다. 더구나 이는 단지 조선뿐만 아니라 '내외지' 공통의 문제로서 하루라도 빨리 해결을 요하는 바이다. 특히 조선은 수많은 청장년 남자를 전선에 보낼 수 있는 '내지'에 비교할 때, 후방 일본의 가장 중요한 노동력 공급지로서 그 부하된 책무는 극히 중대하다고 해야 마땅하다.

이 조선의 노동력문제에 관련하여 경찰이 종래 치안확보의 견지로부터 간여해온 부문은 극히 많지

12) 손바닥을 뒤집듯이 인정이 매우 변하기가 쉽다는 의미. 즉 변화무쌍함을 일컬음.

만, 특히 노동분쟁의 노무자 빼오기, 도주, 부정모집의 단속 등의 소극적 부문으로부터 더욱 나아가서 노무자의 정착지약(定着指藥) 내지 가라후토(樺太)¹³⁾로의 부정 도항 단속, 막연한 도만도지(渡滿渡支)의 단속 등 적극적 지약의 부문에 이르기까지 노무 제반의 사항에 대해 지약과 단속의 양면에 걸쳐서 만전을 기함으로써 조선 내 치안의 확보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반면 직접간접으로 노무행정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해가는 바이지만, 장래 노무관계의 임전체제의 색채가 농후화되어짐과 동시에 그 사상적 영향도 또한 점차 심각화되는 것을 면하지 못함으로써 고도국방국가체제 확립의 일 지표가 될 사상의 통일로 그 책무의 일부분으로 삼는 경찰에 과해져야 할 임무는 더욱 가중되어가는 것은 명백하다.

조선 자체는 물론 ‘내지(内地)’ 그 밖의 외지에 대한 노동력의 부족 보충에 관해서도 조선 목하의 실정은 금후 상당한 곤란이 예상될 정세에 있어서 이 공출에 따른 치안상의 문제도 또한 경시가 허용되지 않은 바이다.

그러나 요는 조선 2,400만 민중이 현재의 시국을 인식하고 목하 전개되고 있는 국민개로운동의 취지를 잘 대처하여 실로 후방의 산업전사로서의 자각에 입각하여 국가가 필요로 하는 제 산업에 그 노력 을 정신공헌(挺身貢獻)하기에 이르면 위에서 서술한 것과 같은 노무에 관한 수많은 곤란한 문제도 즉시 깨끗하게 처리해야 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은 것이다.

조선노무협회가 이런 중대한 시국 하에 결성된 것은 실로 의미가 있는 일로서 그 사명에 일로매진 (一路邁進) 할 것을 기념함과 동시에, 경찰 관계에 있어서는 본 협회를 통해 소위 근로자의 시국 인식, 사상 선도 등, ‘내지’ · 만주 · 지나 도항 단속의 취지의 주지 선전, 오해의 일소, 각종 중요 노무법령 위반의 미연방지 등의 제 대책실시에 유감없도록 처치를 강구하며, 시국하 치안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아울러 노무동원계획의 원활한 수행에 기여했으면 하는 바이다.

이에 창간호의 발행에 즈음해서 소감의 일부분을 피력하여 축의를 표하며 장래의 발전을 비는 바이다.

〈출전 : 警務局長 三橋孝一郎, 「朝鮮勞務協會の設立に際して」,
『朝鮮勞務』 제1권 1호, 1941년 10월, 8~9쪽〉

(3) 조선노무협회 창립총회

조선노무협회는 6월 28일 오전 10시부터 조선총독부 제3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개회하고 본회 부회장 미다카(三滄) 내무, 미바시(三橋) 경무 양 국장당일 회장 오노(小野) 정무총감은 사정 때문에 결석 및 본회 각 이사 출석. 우선 미다카 부회장은 회장을 대신해서 인사를 하고 이어서 상임이사 임(林)노무과장으로부터 본회 창립의 경과 및 회칙, 1941년도 예산에 대해 상세 설명이 있었고, 질의응답 후 전회 일치로 회칙 및 1941년도 예산을 의결하고 오후 1시 종료 해산했다.

13) 사할린의 일본명.

(의안 제1호)

조선노무협회 설립취의서

시국하 내외의 정세에 감안하여 고도 국방 국가체제의 확립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물자 및 자금 통제의 운영과 더불어, 생산력의 확충 등 시책의 만전을 기할 것을 요한다고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바이다. 그런데 목하 노무 상황은 국책적으로 중요한 제 산업에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해도 공급이 이에 따르지 못한다. 이 펁박의 정도가 점차 현저해지고 모집 경합에 따른 노무배치의 혼란, 이동의 증가 및 노동자 질의 저하 등 사업경영상 우려해야 할 현상이 나타난다. 더구나 장래 한층 더 그 심각정도가 점차 더 심화하려는 추세에 있고, 이 대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국가총동원법에 입각한 각종 노동법령 및 직업소개령 등의 시행과 함께 노무행정기구의 정비확충을 계획하고 있다고 할 지라도 그 성과에 관해서는 금후의 시행조치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 즉 정부에서는 금후의 노무행정의 운영에 대해 국가적 중요 제 생산에 있어서의 노무수급의 적합을 기함과 동시에 더욱 나아가서 노동력의 유지배양 및 능률증가를 도모하는 등 노무의 양적 및 질적 대책의 강화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또 한편으론 이에 관해 민간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분야도 적지 않다. 즉 노무에 관한 정부의 시책 실시에 협력함과 동시에 사업주 및 노무자의 이익에 공헌해야 할 유력한 특수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이에 조선노무협회를 설립하고 정부의 방침에 순응해서 중견노무자의 육성, 노무관리의 지도, 노무자 모집의 통제, 노동사정 및 직업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등 여러 국가사업을 실시해서 그 성과의 거양(舉揚)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의안 제2호)

조선노무협회 회칙

제1장 명칭

제1조 본회는 조선노무협회라고 칭한다.

제2장 목적 및 사업

제2조 본회는 노무수급의 조정 및 노동력의 유지증강에 관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발전에 협력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본회는 전 조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사업을 행한다.

1. 노무자의 교양훈련에 관한 사항
2. 노동사정 및 직업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및 그 보급선전에 관한 사항
3. 노무자원의 개척에 관한 사항
4. 노무관리의 지도에 관한 사항

5. 노무자 및 그 가족의 보호지도에 관한 사항
6. 관청 및 민간과의 연락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 사무소

제4조 본회는 사무소를 조선총독부 내에 둔다.

제4장 자산 및 회계

제5조 본회의 자산은 다음에 게재한 것으로부터 성립한다.

1. 별지목록의 자산
2. 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
3. 사업에 따른 수입
4. 보조금 및 조성금
5. 회비 및 기부금
6. 그 밖의 수입에 관련된 금품

전 항 제1호의 자산 및 기본자산으로서 지정된 기부금은 이 기본자산으로 한다.

제6조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3월 31일에 끝난다.

제5장 회원

제7조 본회에 다음의 회원을 둔다.

1. 명예회원 학식경험이 있고 또는 본회를 위해 특히 공로가 있는 자로서 회장이 추천한 자
2. 특별회원 본회의 취지에 찬성하고 매년도 100원 이상 또는 일시에 1,000원 이상을 각출한 자
3. 보통회원 본회의 취지에 찬성하고 본회 발행 간행물을 강독하며 매년도 3원 이상의 각출을 행한 자

제6장 임원 및 직원

제8조 본회의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회장

부회장 2명

이사 약간 명(중 2명을 상무이사로 한다)

감사 약간 명

제9조 회장으로는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을 추대하고 부회장은 조선총독부 내무국장 및 경무국장으로 한다.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會務)를 통괄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사고 있을 시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0조 이사는 본회의 사업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관직에 있는 자 및 본회의 사업에 관해 지식경험이 있는 자 및 특별회원 중에서 회장 이를 위촉한다.

단, 상무이사는 본회의 사업에 밀접한 관계있는 관직에 있는 자를 요한다.

상임이사는 본회의 상무를 관장한다.

제11조 이사는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감사는 본회의 회무를 감사한다.

제12조 본회에는 참여(參與)를 둘 수 있다.

참여는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참여는 본회의 사업에 관해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13조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관직에 있다는 이유로써의 임원인 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임원은 임기만료라고 할지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그 직무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 제14조 본회에 다음과 같은 직원을 둔다.

주사 약간 명

서기 약간 명

주사 및 서기는 회장 이를 명하는 것을 면제한다.

주사 및 서기는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에 종사한다.

제7장 이사회

제15조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이를 조직한다.

이사회는 회장 이를 소집한다.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 이에 해당한다.

제16조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세입출 예산

2. 결산 인정

3. 회칙 변경

4. 그 밖의 회장에게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附議)한 사항

제17조 이사회의 의사(議事)는 출석자의 과반수로 이를 결정할지 여부의 동수가 될 때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 특별 사정이 있을 시는 서면 동의로 이사회에 대신할 수 있다.

전 항의 경우에서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과반수의 동의로써 이사회의 결의로 간주한다.

제8장 지부 및 분회(分會)

제19조 본회는 각 도에 지부를 각 조선총독부 직업소개소 또는 부군도(府郡島)에 분회를 둔다.

지부 및 분회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이를 정한다.

제9장 부칙

제20조 본 회칙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제21조 본회 설립 당초의 이사는 다음 사람으로 정한다.

조선총독부 노무과장 임승수(林勝壽)

동 보안과장 후루카와 가네히데(古川兼秀)

(의안 제3호)

조선노무협회 지부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지부는 그 소재도의 이름을 광칭(冠稱)한다.

제2조 지부 회칙은 회장의 승인을 받는 것을 요한다.

제3조 지부는 그 소재 도청 내에 두는 것으로 한다.

제2장 임워 및 직워

제4조 지부에 다음 임원을 두다

지부장

부지부장 2명

이사 약간 명(중 2명을 상무이사로 한다)

감사 약간 명

제5조 지부장은 도지사 직에 있는 자에게 회장이 이를 위촉하다

지부장은 지부를 대표하고 사무를 통괄하다

제6조 부지부장은 내무부장 및 경찰부장 직에 있는 자에게 지부장이 이를 위촉하다

부지부장은 지부장을 보좌하고 지부장 사고 있을 시는 부지부장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7조 이사는 본회의 사업에 밀접한 관직에 있는 자, 본회의 사업에 관해 지식경험 있는 자 및 특별회원 중에서 지부장이 이를 위촉한다. 단, 상무이사는 지부의 사업에 밀접한 관계있는 관직에 있는 자를 유했다.

상물이사는 지분의 상물을 담당하다

제8조 감사는 지부장이 이를 위촉한다.

감사는 지부의 회무를 감사한다.

제9조 지부에 참여를 둘 수 있다.

참여는 지부 사업에 관해 지부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10조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관직에 있는 것을 이유로써의 임원인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 할지라도 후임자가 취임하기에 이를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 지부에 다음 직원을 둔다.

주사 약간 명

서기 약간 명

주사 및 서기는 지부장이 이를 명면한다.

주사 및 서기는 지부장의 명을 받아서 사무에 종사한다.

제3장 이사회

제13조 이사회는 지부장, 부지부장 및 이사로써 이를 조직한다.

이사회는 지부장이 소집한다.

이사회의 의장은 지부장이 담당한다.

제14조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세입출 예산

2. 결산 인정

3. 회칙 변경

4. 그 밖의 지부장에게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附議)한 사항

제15조 이사회의 의사(議事)는 출석자의 과반수로 이를 결정할지 여부의 동수가 될 때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 특별 사정이 있을 시는 서면 동의로 이사회에 대신할 수 있다.

앞 조항의 경우에는 지부장, 부지부장 및 이사의 과반수의 동의로써 이사회의 결의로 간주한다.

제4장 자산 및 회계

제17조 지부의 자산은 다음에 계재하는 것으로 성립한다.

1.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수입

2. 사업에 동반하는 수입

3. 보조금, 조성금 및 교부금

4. 기부금

5. 그 밖의 수입에 관련된 금품

지부에 기본재산을 설치할 수 있다.

기본재산으로서 지정된 기부금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8조 지부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3월 31일로 끝난다.

제5장 부칙

제19조 지부의 회칙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변경하지 못한다.

(의안 제4호)

조선노무협회 분회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분회는 그 소재 부군도의 이름을 관칭한다.

제2조 분회의 회칙은 지부장의 승인을 받는 것을 요한다.

제3조 분회는 그 소재 조선총독부직업소개소 내(조선총독부직업소개소의 설치 없는 구역에 있어서는 부군도청 내)에 두는 것으로 한다.

제2장 임원과 직원

제4조 분회에 다음 임원을 둔다.

분회장

이사 약간 명(중 2명 이내를 상임이사로 한다)

감사 약간 명

제5조 분회장은 조선총독부 직업소개소장 또는 부윤(府尹), 군수, 도사(島司)의 직에 있는 자에게 지부장을 위촉한다.

분회장은 분회를 대표하고 분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6조 이사는 본회의 사업에 밀접한 관계있는 관직에 있는 자 및 본회의 사업에 관해 지식경험 있는 자 중에서 분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단, 상임이사는 분회의 사업에 밀접한 관계있는 관직에 있는 자를 요한다.

상무이사는 분회장을 보좌하고 분회장 사고 있을 시에는 그 직무를 대신하는 외에 분회의 상무를 담당한다.

제7조 감사는 분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감사는 분회의 회장을 감사한다.

제8조 분회에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경찰서장(조선총독부 직업소개소장 분회장인 분회에 있어서는 부윤을 가담한다)의 직에 있는 자에게 지부장이 이를 위촉한다.

고문은 분회의 사업에 관해 분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9조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관직에 있는 이유로써 임원인 자는 임기는 그 재직기관으로 한다.

제10조 분회는 다음의 직원을 둔다.

서기 약간 명

서기는 분회장이 이를 명 면제한다.

서기는 분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에 종사한다.

제12조 분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3월 31일에 끝난다.

제3장 이사회, 자산 및 회계

제13조 분회의 이사회, 자산 및 회계에 관해서는 조선노무협회지부규정의 예에 따른다.

제4장 부칙

제14조 분회의 회칙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변경 할 수 없다.

(의안 제5호)

조선노무협회(본회) 1941년도 세입세출예산

〈세입〉

과 목			금년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 교		부기(附記)
관(款)	항(項)	목(目)			증	감	
1 기부금			77,500	—	77,500	—	
			77,500	—	77,500	—	
	1 특정기 부금		77,500	—	77,500	—	내지공출 60,000엔 도외공출 17,500엔
2 회비			97,000	—	97,000	—	
	1 회비		97,000	—	97,000	—	
	1 특별회원 회비		73,000	—	73,000	—	본회취급회비 47,000엔 토건협의원(土建協會員) 50인 광산연맹체비(礦山聯盟替費) 120인 대상공업자(大商工業者) 60인 지부취급회비남부금 26,000엔

	2 보통회원 회비	24,000	—	24,000	—	10,000원 30,000의 8할	각 3엔
3 보조금 및 조성금		50,000	—	50,000	—		
2 보조금		50,000	—	50,000	—		
	1 국고 보조금	50,000	—	50,000	—		
4 잡수입		1,600	—	1,600	—		
1 잡수입		1,600	—	1,600	—		
	1 재산수입	1,560	—	1,560	—	기본재산 80,000엔의 연 3분9리 반년분	
	2 이자	5	—	5	—		
	3 간행물 수입	5	—	5	—		
	4 잡수입	30	—	30	—		
합계		226,100	—	226,100	—		

〈세출〉

관	항	목	금년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 교		부 기
					증	감	
1 회의비			590	—	590	—	
	1 회의비		590	—	590	—	
	1 회의비		590	—	590	—	임원회 연 3회 각 30엔 90엔 총회 1회 500엔
2 사무비			24,310	—	24,310	—	
	임직원비		15,870	—	15,870	—	
	1봉급급여		8,700	—	8,700	—	11,600엔의 9개월분 주사 1인 연액 3,000엔 서기 2인 각 연 1,500엔 = 3,000엔 총탁 1인 연액 2,000엔 고용 4인 각 연 840엔 = 3,360엔 급사 1인 연액 240엔
	2잡급(雜給)		—	—	—	—	임직원여비 2,800엔 임원여비 10명 각 100엔 = 1,000엔 직원여비 4명 각 450엔 = 1,800엔 임직원위로금 4,370엔 직원위로금 3,500엔 직원위로금 870엔

	2수요비		6,620	—	6,620	—	
		1비품비	5,000	—	5,000	—	초도조변비(初度調辨費)
		2소모품비	450	—	450	—	월 50엔의 9개월분
		3도서 및 인쇄비	450	—	450	—	월 50엔의 9개월분
		4통신 운반비	720	—	720	—	일반통신운반비 월 30엔 과 전화요금 월 50엔의 9개월분
	3잡비		1,820	—	1,820	—	
		1제잡비	1,820	—	1,820	—	필경(筆耕) 및 속기비 450엔 식사준비료 280엔 잡출 1,000엔
3사업비			30,400	—	30,400	—	
	1편집 간행비		20,900	—	20,900	—	
		1편집비	1,400	—	1,400	—	편집타합회비 9회 각 10엔 = 90엔 편집위원회 450엔 원고료 900엔 잡비 60엔
		2간행비	19,500	—	—	—	기관지간행비 15,900엔 도서팜플렛 등 간행비 3,600엔
	2조사연구 등 강습회		4,000	—	4,000	—	
		1조사비	500	—	500	—	노동사정조사회
		2연구비	700	—	700	—	노무관리연구비 700엔 연구회 270엔 노무관리지도비 300엔 연구자료인쇄 그 밖의 잡비 130엔
		3강습회	2,800	—	2,800	—	노무관계직원강습회 금년도 1회 100명 4일간 회장대여비 100엔 수강자숙박훈련비 600엔 강사사례 30엔 강습잡비 100엔 강습자여비보급 1,950엔
	3표창식		1,500	—	1,500	—	
		1표창비	1,500	—	1,500	—	우량근로보국대표창 700엔 우량노무자표창 600엔 표창잡비 60엔

	4강연회 및 간담회		1,000	—	1,000	—	
		1강연회 및 간담회	1,000	—	1,000	—	20회 1회 50엔
	5견학 시찰비		3,000	—	3,000	—	
		1견학비		—	—	—	공장사업장견학 60명 각 50엔
4보조비			135,500	—	135,500	—	
	1지부 보조비		135,500	—	135,500	—	
		1지도훈련소 보조비	100,000	—	100,000	—	건축보조 2개소 각 50,000엔
		2잔류가족 생업 원호보조비	15,000	—	15,000	—	500가구 분 1가구 평균 30엔
		3노무자부조 (扶助)구제비 보조	5,000	—	5,000	—	
		4노무자원 개척비보조	2,500	—	2,500	—	1지부 평균 1,000엔
		5지부일반 사업비보조	13,000	—	13,000	—	
5교부금			13,500	—	13,500	—	
	1지부 교부금		13,500	—	13,500	—	
		1특결회원 회비교부	13,500	—	13,500	—	본회 급회비 47,000엔의 5할
6적립금			10,000	—	10,000	—	
	1기본 적립금		10,000	—	10,000	—	
		1기본 적립금	10,000	—	10,000	—	
7예비금			1,800	—	1,800	—	
	1예비금		1,800	—	1,800	—	
		1예비금	1,800	—	1,800	—	
회계			226,100	—	226,100	—	

〈출전 : 朝鮮勞務協會創立總會, 『朝鮮勞務』 제1권 1호, 1941년 10월, 100~108쪽〉

(4) 『조선노무』 창간호 편집후기

이번 ‘대동아전쟁’에 대해서 조선이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무엇인가 말하자면, 그것은 식량자원과 노무자원 두 가지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식량자원 쪽은 상당한 재정적 정치적 곤란을 동반하지만 어느 정도는 금전으로써 구입의 길이 있지만, 노무자원 쪽은 전혀 그 길이 없다. 즉 이번 성전수행에 필요한 노무를 완전히 공출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조선에게 부하되어진 가장 중대한 책무라고 해야 할 것이다

× ×

본회에 있어서도 작년 6월 창설 이후 앞서 서술한 취지를 명심하여, 정부가 행하는 노무통제정책에 순응해서 여러 중요사업을 실시하며 그 성과의 거양(舉揚)에 만전을 기해 왔지만, 노동사정 및 직업문제에 관한 지식 보급 주제를 목적으로 발간되어진 본지(本誌)도 점차 이번 호로써 통권 3호를 발간하기에 이른 바이다.

× ×

본 호의 각호는 어느 것이나 모두 뛰어난 저작이지만, 그 중에서도 본부 노무과에서 노무동원실시계획에 따른 조선인 노무자의 ‘내지’ 이입에 대해 상세한 수속요강과 이입후의 훈련요강을 발표하게 된 것은 우리들의 진실을 알리려고 욕심하는 바이고, 크게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이시이(石井), 호시다(星田) 양 씨는 시국하 최근 특히 공무 다단한 때 틈을 내서 본지를 위해 유익한 옥고를 보내주신 것 감사한다.

× ×

이와나가(岩永) 씨는 전문적 입장에서 조선에서의 토건관계 노무의 현황에 관해 논해주셨고, 아라가네(荒金) 씨는 본회 전라남도 지부로서 설치된 노무지도원 훈련소를 시찰한 기록을 보내주셨고, 서(徐) 씨는 국민개로 선에 따라 반도청년이여 깨어나라 라고 힘차게 호소하였다.

× ×

경상남도 사회과에서 노무 미담을 보내주신 것은 본회의 사명상으로도 실로 기뻤고, 장래도 이러한 사실이 있으면 계속해서 보내주었으면 한다. 각 지부로부터의 기고가 전혀 없지만, 지부통신을 비롯해서 지부 관계자의 기고를 기대한다. 조선에서의 노무에 관한 유일한 반관지(半官誌)인 본지의 사명을 감안하여, 본부 노무과와 같이 각 도 노무계의 각 관계관의 기고가 없는 것은 허전한 마음이 듈다. 시국상 다망하시리라는 것은 알지만 부디 본지를 위해 집필해 주실 것을 졸필로 부탁드린다.

〈출전 : 「編輯後記」, 『朝鮮勞務』 제1권 1호, 1941년 10월, 105쪽〉

(5) 조선노무협회 지부통신

전라남도 노무지도원훈련소의 개황

조선노무협회 전라남도지부

1. 서론

본 도에서는 종래 정부의 방침에 입각하여, 시국하 노무조정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도내 국민의 시국 인식과 노무보국정신의 양양에 따라 해마다 다수의 노무자를 ‘내지’ 또는 ‘서북선(西北鮮)’ 방면으로 공 출취로(供出就勞)시킨 것이다. 그런데 이들 노무자는 언어, 풍속, 습관 등 취로지방과 다른 관계 상 여러 가지로 지장을 초래하고, 더욱이 규율적 통제가 있는 노동경험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노무관리 상실로, 또한 내선일체화상 유감스러운 점이 많아 노무자 훈련의 필요를 통감하기 시작한 것이다. 노무자 훈련의 이상을 말하자면 공출노무자 전원에 대해서 근로보국정신의 확립, ‘국어’의 숙달, 규율훈련 등 단기간의 지도훈련을 필요로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대규모 설비와 막대한 경비를 요하고 도저히 급속한 실현은 곤란하기 때문에 당분간 지난 1941년 7월 조선노무협회 본도(本道) 지부의 결성과 함께 중요사업의 일환으로써 노무지도원, 즉 공출노무자 반장, 조장, 단장이 될만한 인물의 훈련을 계획한 것이다.

이 훈련에 요하는 경비는 훈련소 건축비 및 경상비의 일부를 본 부내(府內) 노무협회 본부로부터의 조성에 의존하는 것으로 하여, 금년은 당분간 구 도립사범학교 2층을 빌림. 2월 16일부터 즉시 훈련을 개시한 것이다.

2. 훈련소의 개황

1) 소재지

광주부(光州府) 아시히초(旭町) 143번지 구 사범학교 교사 내

2) 명칭

전라남도 노무지도원훈련소

3) 건물

앞에서 서술한 대로, 빌린 구 사범학교 교사는 철근 콘크리트 2층 건물로 2층 교실 네 개중 두 개에 다다미 80장을 깔아서 교실 겸 침실로 하고, 한 방을 식당으로 한 방을 사무실과 훈련생 침구 그 밖에 창고로 칸막이한 바, 백 명은 충분히 수용할 수 있게 되었다.

4) 훈련의 목적

본 훈련소는 별항 훈련소 규정 제2조에 정해져 있는 것처럼 도 알선 노무자 지도 지위에 서야할 중견 노무자에 대해 견실한 국가 관념과 공고한 국민적 신념과 산업전사인 궁지를 견지시키고, 노무자로서 완전한 자질을 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 목적은 반장, 단장될만한 자를 훈련해서, 그 인솔하는 노무원을 지도유치하게 해서 국책에 기여하게 하는 것이다.

5) 훈련소 직원

소장 노무협회 전라남도 지부 부지부장 도리야마(鳥山) 내무부장

감사 동 지부 상임이사 야스다(安田) 사회과장

주사 동 지부 주사 이토이 기요지(糸井喜代治)

서기 동 지부 서기 다카시마 히로미츠(高島弘光)

보도원 2명

강사 전라남도 고등경찰과장 정가 이작(井家伊作)

동 위생과장 다나카 이토유키(田中 従之)

동 사회주사 기타자키 시가토(北崎志賀都)

동 속 마에다 하루우미(前田春海)

동 동 미치다 가즈오(道田一男)

종방전남공장장(鍾紡全南工場長) 우시시마 다카카즈(牛島隆一)

광주신사신관(光州神社神官) 오시무라 다카후미(押村堯文)

군사원호회주사(軍事援護會主事) 나카무라 나오지로(中村直次郎)

체육협회주사(體育協會主事) 후지무라 슈헤이(藤村修平)

6) 훈련기간 일주일

7) 훈련교수과목

국체관념, 경신사상의 함양. 시국인식 및 방첩사상(防諜思想)의 함양. 간이 부기(簿記). 구급법 및 보건위생. 노무지도자 소양(수송 상의 주의를 포함한다), 예의범절. 교련. 실습. 등이고, 그 담임강사 및 시간표는 별표와 같다.

8) 입소자 자격

국민학교(6년제) 졸업 이상,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갖는, 연령 25세 이상 40세 미만의 병적(兵籍)을 갖지 않는 반도인 남자로, 사상함양, 소행선량, 신체 건전한 장래 도 알선 노무자 반장, 또는 단장으로서 일반노무자를 통제할 수 있는 재간을 갖고, 향당 청장년 간에 신망이 두텁고 또한 스스로 노동에 전딜 수 있는 자.

9) 입소자 전형

노무협회지부 분회장인 부윤, 군수, 직업소개 소장, 입소자 모집 할당의 통지를 받았을 때는 지원자

로 하여금 입소원서(양식 제1호)에 이력서, 호적초본, 사진을 첨부하여 지부장 앞으로 추천하여, 훈련소장은 이 지원자 중에서 전형고사를 치룬 후에 입소를 허가하기로 되어 있다.

전형고사는 각 부(府), 군(郡), 도(島)청에서 행하는데, 도계관(道係官)이 이를 담당하고, 우선 도립의원 의사, 또한 공의(公醫)로 하여금 정밀하게 신체검사를 행하고, 그 합격자에 대해 구술시험을 행해서 인물 본위로 고사하는 것으로 하고, 포회사상(抱懷思想), 시국인식의 정도, 산업전사로서의 자각의 유무, 학력, 경력을 고려하여 용모, 태도, 언어, 동작 등 상세하게 관찰하며, 또한 이미 노무자로서 경험을 갖는 자는 출가(出稼) 기간 중의 상황 등을 청취하여, 출로 중 부정행위를 행하거나 또는 출가근성의자의 경우는 입소허가를 보류하는 것으로 하고 또한 종래 노동 경험의 유무에 주의하여 스스로 노동에 견딜 수 있는 지의 여부를 보며, 난폭과격, 술버릇 폭행 벼룩 등이 있는 듯한 자도 이를 피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전형하기로 한 것이다.

10) 전형 상황 및 그 결과

제1회 전형고사의 결과를 보면 입소희망자가 상당히 많고, 입소예정 인원 500명에 대해 지원자로서 부윤, 군수가 추천하는 자의 1200명을 달하는 성황으로 상당히 우수한 지도원을 선정할 수가 있었다.

3. 개소식 및 제1회 입소식의 상황

드디어 입소자도 결정하고 제 설비, 준비, 모든 준비가 갖추어졌기 때문에 2월 16일 오전 11시부터 상쾌하게 개소식이 추진이 되어, 당일은 본부(本府) 후생국장 각해대리로서 조선노무협회 후쿠에(福江)주사, 다케나가(武永) 전라남도 지사 각하, 야마시타(山下) 광주지방법원장 각하를 비롯하여 도内外의 지명인사 수십 명의 참석하에 식을 거행하게 되었다. 당일은 마침 싱가포르 함락의 길보가 있었던 다음 날로, 거국적으로 환희감격이 한창이었기 때문에 경사의 이중주로 실로 의의 깊은 거식이었던 것이다. 제1회 입소생 64명은 체격, 자세, 태도 어느 것도 나무랄 데 없고, 원기 발랄하여 국민복에 전투모, 각반이라는 복장으로 일반적으로 깊은 감명을 주어, 노무자의 자질향상에 새로운 국면을 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식순

개식사. 궁성요배. 국가 제창. 묵도. 후생국장 고사(告辭). 지사(知事)고사, 소장식사, 축사. 답사. '황국신민'의 서사 제창. 만세 봉창. 개식사.

위의 순서로 거식되었고, 그 고사 식사 등은 다음과 같다.

후생국장 고사

조선노무협회 본 도 지부에서는 시국의 요청에 응해 이번 노무지도원훈련소를 설치하게 되어서, 오늘 이에 그 개소식을 거행하게 되고 아울러 제1회 지도원 입소식을 거행할 수 있게 된 것은 실로 때맞춘 기회이어서 심심한 축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대동아전쟁’ 발발 이후, 우리의 충용무열(忠勇武烈)한 육해공군 장병의 용전역투(勇戰力鬪)에 의해서 수많은 혁혁한 전과를 올려가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능위가 그렇게 시키는 바로 실로 감격해하지 않습니다. ‘황군’ 장병의 위대한 공적과 수많은 고귀한 호국 영령에 대해서 심심한 경의와 만강의 감사 뜻을 올리는 바입니다.

바야흐로 우리 제국은 국가의 성쇠와 동아의 흥망을 거는 중대한 시국에 제회(際會)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성전의 목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전선장병의 분투에 유감이 없도록 후방에 있어서의 생산력의 확충을 행하고, 따라서 고도 국방 국가체제의 강화확립을 도모하는 것을 결여할 수 없는 긴요한 사정입니다. 그래서 생산력의 확충상 불가결한 긴요 문제는 그 요원(要員)의 원만한 충족을 기하는 것에 있는 것이므로, 그 전제로서 국민개로운동의 전개, 근로보국대의 활동 등을 촉진하고, 더욱이 ‘내지’에 호응해서 청장년 등록의 실시, 국민근로보국협력령 및 노무조정령의 시행 등에 따라 노무요원 충족의 규칙을 한층 더 강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노무의 충족은 단지 양적 확보로만은 충분히 행하기 어렵고 특히 금후의 정세는 한정된 인적자원으로써, 급격 또는 다수의 수요에 입각해서 응할 필요가 있는 것이어서, 이를 위해서는 노무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고, 각자가 전선 ‘황군’ 장병과 같은 기분으로 전신전령을 내던져, 멸사순국(滅死殉國)의 정신으로 일하도록 훌륭한 산업전사를 한 명이라도 연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본 노무지도원훈련소의 개소는 본 도를 효시로 해서 그 사명은 극히 중대하며 직원 각위의 노고는 용이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본 훈련소 설립의 취지를 감안하여, 노무자의 자질 연성에 완벽을 기하고 또한 훈련을 받게 되는 모든 자는 충분히 몸을 꼭 연마하여 반도 노무자의 중견으로서의 수료 그 날에는 모범적 산업전사로서 근로에 힘써 ‘대동아 신질서 건설’을 위해 활약해 주었으면 하고 실로 염원하는 바입니다. 이로써 고사를 대신합니다.

1942년 2월 16일

조선총독부 후생국장 이시다 센타로(石田千太郎)

전라남도 도지사 고사

금일 여기에 전라남도 노무지도원훈련소 개소식 및 제1회 입소식을 거행하기에 이르러 소감 한 마디를 말씀드리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바야흐로 우리 일본제국은 ‘대동아 신질서 건설’을 위해 지나 대륙에서 싸우기를 4년 남짓, 그리고 작년 12월 8일 동아의 화근인 미영 양국에 대해 황공하게도 선전의 대소가 활발(渙發)되어 한 번 개전이 되자마자, 서전 이후 실로 세계전 사상 미증유의 혁혁한 대전과를 올리고, ‘황군’이 가는 곳 적 없고 ‘황군’의 무위(武威)는 동남아시아의 중요지역을 제압하여, 태평양 제해권도 또한 우리 쪽으로 장악하기에 이르고, 미영 착취 침략의 최대 근거지인 싱가포르의 함락도 눈앞에 있는 것은 실로 감격해하지 않는 바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능위 하에 충용 무열한 ‘황군’ 장병의 용전 분투의 덕택이며, 실로 만강의 감사와 숭경(崇敬)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쟁은 실로 오늘 이후에 있고, 바라든 바라지 않는 간에 관계없이 일본은 바야흐로 사상 공전(空前)의 난국에 조우해 있어서, 실로 일억 일심이 되어, 국가의 총력을 유감없이 발휘해서 시국난 극복에 매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즉 전투에 관한 한 언제 어떠한 적성 국가군의 도전을 만나도 우리 ‘황군’에 깊이 신뢰하고 필승불패의 신념으로써 단호히 매진할 뿐입니다만, 그와 동시에 우리 무적 ‘황군’으로 하여금 뒤돌아 볼 염려 없이 감투하기 위해서는 후방 국민이 실로 국민개로의 굳은 각오로써 직역(職域) 봉공의 성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것은 또한 제일선 용사의 진충(盡忠)에 보답하는 후방 국민의 명예로운 의무입니다.

전쟁 수행에는 1명의 병사에 대해 후방에 있어서는 10명 내지 15명의 산업전사의 활동을 요한다고 일컬어지고 있어서 결전 체제하, 널리 근로정신의 양양을 도모함과 동시에, 국민개로체제의 확립은 실제로 초미의 급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때에 즈음해서 우리 반도는 다행히 전국 인구의 4분의 1을 보유하고, 상당히 풍부한 인적 자원의 혜택을 받아 반도 청년의 투철한 국가의식으로 불타는 듯한 애국심과 더불어, 금후 성전 목적 달성을 기여할만한 대단한 것을 지니고 있음을 참으로 자신을 갖는 바랍니다. 본도는 정부의 노무동원 계획에 순응하여 해마다 상당한 노무자를 공출하며, 군수 및 시국 산업 등 국책수행에 매진해 가게 했던 것입니다만, 이 조직적 훈련 지도의 중요성을 통감하여 금번 본 훈련소를 개설하게 된 바이어서, 이에 따라 본도 중견 노무자의 국민정신을 계도하고, 시국의 중대성을 인식시키며, 근로를 신성하게 여기고 또한 시국하 국가적 의의의 중대한 이유를 체득시켰던 것입니다.

넓고 커서 끝이 없는 ‘황은’을 입고 있는 ‘황민’은 지금이야말로 용약분기(勇躍奮起)해서 ‘황은’에 보답해 드려야 할 때입니다. 한 명의 유한자(有閑者), 한 명의 불로자(不勞者), 한 명의 무직자(無職者) 없이 총력을 기울여 흔쾌히 근로에 종사하고, 그 직역에서 봉공을 드린다는 것은 ‘황국신민’의 궁지이자 영예라는 것을 자각하고, 환희 근로에 참가하여 필승의 신념으로써 미중유의 중대 위국을 극복 돌파하여, 황국의 용창(隆昌)과 동아공영권의 확립을 쌓아야 합니다.

제군은 이 영예로운 후방 산업 전사의 중견 지도자로 선택되어 본 훈련소 제1회 훈련생으로서 입소 할 수 있었고, 이 이상 숙원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소정의 훈련기간 중에는 성심성의껏 심신을 연마하고, 장래 노무자의 지도 유액(誘掖)에 결여되지 않기를 기하며 따라서 전시하 국운의 용창(隆昌)에 공헌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 고사를 마칩니다.

1942년 2월 16일

전라남도지사

정5위 훈4등(正五位 勳四等) 무영현수(武永憲樹)¹⁴⁾

소장 식사

금일 여기에 전라남도 노무 지도원 훈련 신설의 준비가 되어서, 지사 각하, 후생국장 대리관을 비롯

14) 엄창섭(嚴昌燮)의 창씨명.

하여 다수의 귀빈의 임석 하에 성대한 개소식 및 제1회 입소를 거행할 수 있게 된 것은 당 훈련소의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고 충심으로 기뻐하지 않는 바입니다.

생각하건대 목하 ‘대동아전쟁’ 하에 있어서의 결전태세 확립을 위해서 국력 충실의 기초가 되어야 할 국가생산력의 비약적 확충이야말로 중요한 요무입니다만, 그 생산력 확충의 근간이 되어야 할 것은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국민의 노동력입니다. 즉 전시 하에서의 노무동원은 병원(兵員) 동원과 같아서 승패의 열쇠를 쥐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전쟁 발발 이후 국가총동원법에 입각해서 강력한 노무통제를 행함과 동시에, 매년 노무동원 계획을 설정하고, 다른 물자 동원 계획, 생산 확충 계획과 함께, 시국 산업에서의 노무원의 획득과 수급 조정에 관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온 것입니다. 그런데 시국의 중대화와 함께 필연적으로 노무동원의 확충 강화가 필요시 되어, 지금은 단지 국민의 일부인 노무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개로 태세의 확립, 즉 국민 동원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본 도는 풍부한 인적 자원에 혜택을 받아, 도민의 근로정신의 양양과 더불어 사변 이후 군수 및 생산 확충 산업에 다수의 노무자를 ‘내지’ 및 ‘서북선(西北鮮)’ 지방으로 공출하여 우수한 성과를 올려가고 있는 것은 실로 경하해마지 않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들 노무자는 언어 풍속 습관 등 취로 지방과 다를 뿐만 아니라, 규율적 통제 있는 노동의 경험이 부족하고, 노무관리 및 내선일체화에 있어 이대로는 도저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조선노무자협회 본도 지부의 사업으로써, 우선 중견 노무자의 훈련을 행하고 그리고 일반 노무자를 지도 유액하게 하여, 시국하 산업 전사로서의 소질 향상을 계획하기 위해 이에 본 훈련소 개설을 보기에 이른 것입니다.

입소생 제군은 각각 본도 중견 노무자로서 다수 지원자 중 선발되어, 금일 이에 입소허가의 영예를 젊어지게 된 것이어서 경하해마지 않음과 동시에, 본도 노무자 지도자로서 장래 노무동원의 선구자로 시국하 그 책무는 실로 중요하고 또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무수한 ‘내지’ 청년은 부르심에 따라 제일선에 출동하여 목숨을 걸고 용전분투하여 혁혁한 무위를 세워서 세계를 뒤흔들어 가고 있습니다만, 바야흐로 우리의 반도 청년도 단호히 일어서서 혹은 지원병으로서 혹은 산업전사로서 ‘황국신민’인 적성(赤誠)을 피력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반도는 일부 지원병을 제외하는 것 외에 아직 징병 제도 없이 ‘내지’에 비해 상당량의 노동력의 여유가 있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바이며, 우리 반도는 노무의 질과 양에 있어서 제국 내외를 통틀어 위대한 저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도에는 종래 자칫하면 근로를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오랜 폐풍이 있어 사회상 적지 않은 장애가 되어 있는 것은 실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전시하의 오늘날에 있어서 근로는 국민적 의무이고, 이와 같은 근로 멸시의 관념은 국민 도덕상 단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바랍니다. 우리나라를 바야흐로 미영을 상대로 전고(前古) 미증유의 ‘대동아전쟁’에 국운을 걸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만, 전쟁은 해륙(海陸)의 제일선만이 전장이 아닙니다. 또한 각인의 직장들이 모두 훌륭한 전장이고, 따라서 국민 각자는 제일선 장병과 마찬가지로 그 직역에서 결사보국의 각오로써 근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근로야말로 ‘황군’ 장병과 마찬가지로 군국에 바치는 ‘신민’의 의무이고, 이 의무를 완전하게 완수하는 자야말로 후방 산업전사라고 할 것입니다.

제군은 이 국가흥망의 기로에 선 초비상시국을 맞이하여, 난개타국의 길은 국민개로를 절대 조건으

로 삼는 것임을 깊이 인식하고, 후방 산업전사라는 각오를 견지하고, 더구나 일반 노무자의 지도자라는 지위와 책임을 충분히 자각하여 입소 중에는 법률을 엄수하며, 심신을 열심히 연마하고, 우수한 성적 거양에 힘써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 이로써 ‘황은에 보답 드리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내빈 제현께는 본 소 개설의 사명의 중대함을 감안하여 금후 각별한 지원과 편달해 주시도록 특별히 부탁드려마지 않는 바입니다.

이로써 식사를 마칩니다.

1942년 2월 16일

전라남도 노무지도원훈련소장

종5위 훈6등(從五位 勳六等) 도리야마 스스무(鳥山進)

축사

금일 이에 영예로운 전라남도 노무지도원훈련소 개소식 및 제1회 입소식을 거행하게 되어, 불초 이 성전에 참여하여 축사를 올리는 기회를 얻게 되어 참으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생각하건대 국운옹체의 엄두(嚴頭)에 서서 우리나라는 ‘대동아전쟁’ 완수를 위해 거국일치 용전분투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현대진은 총력전 체제하에 두어져 군비 충실, 경제력 증강의 여하에 따라, 적으로 하여금 바로 성하지맹(城下之盟)¹⁵⁾을 결정하게 하는 것이 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바입니다. 이 경제력의 구성요소 중 주요한 것의 하나는 노동력이고, 그 노무의 합리적 활용이야말로 즉시 전쟁 목적 달성상 필요불가결한 것입니다.

그런데 종래 자칫하면 생산력 확충 계획 수행에 즈음하여, 물적 방면 즉 자재 관계에만 전념하여 인적 요소 즉 노무자 방면은 별로 뜻이 기울여지지 않았던 경향이 있었습니다만, 다행히 정부에서는 노동력의 적정한 배분이 행해져, 겨우 각 산업 부문에서의 수요의 경합을 방지할 수 있게 이른 것은 기뻐해 마지 않은 바입니다만, 아직 노동 능률 증진 문제가 남겨져 있습니다. 한정된 노동자에 따라 보다 많은 능률 양양을 계획하려면 노무자의 완전한 지도 훈련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이에 착목한 조선노무협회 전라남도 지부에서는 전조선에 앞서서 중견 노무자의 지도 훈련을 행하기 때문에, 노무 지도원 훈련소가 설립되어진 것은 완전히 시의에 알맞는 실로 국책적 시설이고, 이 개설의 중요한 임무를 떠맡은 당국에 대해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입소생 제군은 이 가장 의의 깊은 본 훈련소의 제1회 입소생으로서 선발되어 입소하게 되어 그 기쁨이 추측컨대 헤아려지는 바랍니다.

그래서 제군은 노동의 신성한 바를 자각하고, 노무자 지도자로서의 심신을 연성하기 위해 입소된 이 상 충분히 각오하고 있다고 여겨지며, 또한 그 자세 등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도지사 각하를 비롯하여 소장님의 간곡하신 훈시가 있었으니 새삼 제가 말씀드릴 필요도 없습니다만, 제군은 노무자의 지도자로서 국가를 위해 활약할 후방 산업전사입니다. 결사의 각오로써 직장을 지키고, 노무보국의 굳은 각오로 노무 능률 증진을 도모하며, 노무자의 지도에 매진을 기하고, ‘황국신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 주기

15) 수도까지 쳐들어온 적에게 항복하는 굴욕적인 서약.

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 무사(無辭)¹⁶⁾를 늘어놓으며 본 훈련소의 개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한 입소생 제군의 발분을 기념하며 축사를 마칩니다.

1942년 2월 16일

종연방적주식회사 전남공장(鐘淵紡績株式會社 全南工場)

우시시마 다카카즈(牛島隆一)

입소생 총 대표 답사

금일 여기에 전라남도 노무 지도원 훈련소 개소식 및 제1회 입소식이 이렇게 성대하게 거행되어 도지사 각하 및 후생국장 대리관을 비롯해서 다수의 귀빈의 임석을 감사드리며, 더구나 간곡하신 훈시를 받아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황국신민'으로서 이 유사이래의 국가 비상시에 즈음하여 어떻게 해서 진충보국의 정성을 바칠 수 있는가, 그 나아가야 할 길을 찾아서 항상 제일선 장병과 같은 정신으로써 후방에 있어서의 산업전사가 되어, 결사 정신(挺身) 노무로 봉공 드리는 일 외에는 없다고 각오하고 있는 바입니다.

다행히 금번 본 훈련소의 개소와 함께 다수의 지원자 중, 특히 입소를 허가받게 된 본 도 중견 노무자로서 금일부터 간곡한 지도를 받게 된 것은 저희들의 영예가 이에 더할 나위 없어 실로 환희하여 마지 않는 바입니다.

입소 후는 훈시의 취지를 명심하여 준수하고, 심신을 연마하고, '황국신민'으로서 후방 산업전사로서 부족한 점이 없도록 결사적인 노력을 기울여 우수한 성적 거양에 힘써서 그리하여 기대에 부응하도록 맹세 드리는 바입니다.

1942년 2월 16일

입소생 총 대표 옥천양장(玉川良藏)

4. 훈련 상황

1) 훈련 일정 (별표와 같음)

2) 훈련 일과표 (별표와 같음)

즉 훈련생은 2월 15일 오후 3시에 입소하여, 전원을 10명씩 반으로 나누어, 각 반에 반장을 두고, 전원의 대표로서 총 대표를 두며, 취사 당번이나 청소 당번은 각 반 하루 교대로 했다.

그리고 제1일은 입소 중의 마음가짐, 공동 취사의 방법 등의 지시를 받은 후, 취사 당번은 신속히 저녁식사 준비에 착수하고, 다른 자는 사내 청소 정돈을 행하고 저녁식사.

그 후는 종료식 당일까지 무단 외출을 금하고, 드디어 법률적 통제 있는 훈련으로 매일 오전 6시에 기상(단 취사 당번은 오전 5시 반 기상)하여, 침구 정돈, 세면을 행하고 전원 사내외의 청소를 행한다.

16) 난잡하고 정리되지 않은 말.

오전 7시 각 반별로 점호, 배신(拜神), 궁성요배(宮城遙拜), 묵도(默禱)를 행하고, 다음으로 사외에 정렬하여 약 2킬로의 구보를 행하고 오전 7시 40분에 조식을 취한다.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학과, 정오 점심,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소정의 훈련 교수를 받고,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사내외 청소, 오후 6시 저녁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과외 교수 또는 당회, 좌담회, 지시 주의, 자습을 행하는 것으로 하고, 또한 기간 중 영화에 의한 시국인식을 깊게 하는 것으로 했다.

3) 취사

사내에 150인분 정도로 한 번에 지을 수 있는 솔과 냄비를 설비하고, 공동취사를 터득하게 하기 위해 서 윤번으로 이를 담당하게 하고 있지만, 그 메뉴는

주식물 1인 1일분 납작보리 3합, 쌀 2합 계 5합

부식물 아침은 된장국과 단무지, 점심은 염건어류와 단무지, 저녁 간장국과 단무지

이고 연료, 수도비 등 합해서 1인 1일분의 식비 약 70전 정도로 조달하고 있다.

5. 수료상황

부군별	제1회	제2회	제3회	제4회	제5회	제6회	계
목포	4	1					5
광주	1	2	1	1			5
광산	4	6	4	5	5	5	29
담양	4	5	5	6	6	6	32
곡성	3	4	4	6	5	3	25
구례					5	2	7
광양			5	4			9
여수					6	2	8
순천	5	7	5	6	5	4	32
고흥	4	5	5	4	1	1	20
보성	4	3	6	5	2		20
화순	4	5	5	4	4	9	31
장흥	3	2	5	6	7		23
강진	2	3	4	3	4	3	19
해남	4	5	6	4	7	3	29
영암	3	4	4	5	6	2	24
무안	3	4	4	4	2	2	19
나주	5	7	5	2	8	7	34
함평	3	5	2	2	5	3	20
영광	4	4	5	4	4	2	23
장성	4	5	5	6	6	5	31
계	64	77	80	77	88	59	445

이상과 같이 4월 11일까지 445명의 수료자를 냈다. 훈련 중은 화기애애하여 중도 퇴소자 한 명도 없이 병자도 내지 않고, 전원 시종 성심성의껏 훈련을 받고 모두 기뻐하며 씩씩하게 보금자리를 떠나, 그 대부분은 이미 각지 현장으로 출가 취로해 있어서, 현장으로부터 잇따라 통신해온다. 그 일례를 들면, 배계(拜啓) 시하춘난(時下春暖) 시절에 귀 훈련소 더욱 번영하시길 경하 드립니다. 선생님께서는 별고 없으신지요? 소생은 교훈 염수 상 지난 3월 14일 오전 7시 40분 출가를 명령받아, 반 원 42명을 인솔해서 동 15일 오전 7시 반경 흥남(興南)의 본궁역(本宮驛)에 무사히 도착하여, 16일은 일동 휴양하고 17일부터 전남 출신의 산업전사 모두 모여 노무에 착수하고, 제3일이 되었습니다. 오늘까지 사고도 없이 전원 총출동입니다. 그리고 원기발랄하게 일할 수 있는 것은 실로 모두 선생들의 훈육 덕분이어서 참으로 감사 감격해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훈련생이 선생님들과 공동생활을 한 것과 같이, 밤에는 피로를 잊기 위해 좌담회를 열면서 일정한 기율 하에 지내는 것은 이 또한 바람직한 일이 아닐까요. 무엇이든 모두 훈련소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금후도 변함없이 당시의 훈련생이라고 생각하셔서 지도, 편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다카시마(高島)선생님, 오카타(緒方)선생님께도 안부 전해 주십시오. 지금은 제4회생 훈련 중이라 생각합니다. 빨리 졸업해서 오도록 해주시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경구(敬具)

1942년 3월 19일

광산군 송정읍(光山郡 松汀邑) 출신

금광익차랑(金光益次郎)

이토이(糸井) 선생님 귀하

이상 훈련소의 개황을 서술했지만, 당초 훈련기간을 2주일 정도로 할 예정이었지만, 그러면 공출에 시간이 안 맞게 되기 때문에 금년은 입소에서 수료식까지 8일인 만 1주일로 하여 단기간이지만 근로정신의 확립 및 노무자 요령 터득 후 상당 수련이 된 것이라고 믿고 있다. 온돌생활만 해온 훈련생이 한 기 심한 계절에 솜도 적은 얇은 이불을 뒤집어쓰고 합숙하며 훈련을 받아 그 기분만으로도 상당 수련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오늘날의 노무자는 단순한 임금 벌이의 노동자가 아니다. 소위 산업전사이자 노무보국의 돌격대다.

특히 전시 하 내선일체의 견지로 보아 반도민에 부하된 중대 사명 이외의 것은 그렇다 하고, 이 노무 보국정신이 확립되면 훈련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본 훈련소의 성과 여하는 모든 방면에서 상당한 주시를 받아 기대되고 있지만, 훌륭하게 양성하지 않으면 안 될 중요한 책임을 통감한다.

노무지도원훈련소 훈련시간표

시간 월일 \ 일	오전9시	오전10시	오전11시	오후1시	오후2시	오후3시	오후4시
제1일						입소	입소중의 소양
제2일	입소식	신사참배		각종 교련	상 동	좌 동	체 조
제3일	국체명징	간이부기	상 동	내선일체이념	교련	좌 동	체조
제4일	경신사상함양	노무지도자의 소양		과외	교련	좌 동	체조
제5일	시국강화 (講話)	방호	도항상의 주의	과외	과외	교련	좌 동
제6일	시국강화	구급법	보건위생	과외	과외	교련	좌 동
제7일	예의	작법(作法)	교련	과외	예식	교련	좌 동
제8일	과외	호령조정	좌 동	신사참배	수료식		

노무지도원훈련소 교수과목 및 강사

교수과목

국체관념 및 경신사상의 함양(나카무라 주사) 시국강화(이토이 주사) 방호사상의 함양 도항 상의 주의 [정가(井家) 고등경찰과장] 구급법 및 보건위생(다나카 위생과장) 노무지도자 소양[마에다 속(屬)] 예의범절(이토이 주사) 간이부기[마에다 속(屬)] 내선일체의 이념(이토이 주사) 교련(오카다 보도원) 체조(후지무라 강사) 과외 교수(야스다 사회과장, 기타자카 사회주사, 우시시마 다카카즈, 오시무라 다카후미)

노무지도원훈련소 훈련생 일과표

오전6시 기상 – 침구정돈, 세면, 청소

오전7시 조회 – 점호, 배신, 궁성요배, 묵도, 서사제창(誓詞齊唱), 운동

오전7시 40분 – 조식 식사전후의 감사, 식기 세척

오전9시부터 정오까지 학실과(學實科) – 별지 시간표에 따른다.

정오 점심식사 – 묵도, 체조, 식사 전후의 감사, 식기세척

오후1시부터 5시까지 학실과 – 별지시간표에 따른다.

오후5시 청소 – 사내외 청소

오후6시 저녁식사 – 조식과 동일

오후7시부터 9시까지 자습 – 특별교수, 상회(常會), 좌담회, 지시주의, 자습

오후9시 점호 – 점호, 배신, 궁성요배, 서사제창

오후10시 소등 – 취침

훈련기간 중 1,2회 오후 5시부터 입욕한다.

전라남도 노무지도원훈련소 설치취지서

시국 하 군수 및 생산력 확충 계획 수행에 동반하는 노무요원의 충족은 중요한 요무임을 감안하여 본도에서는 본부의 방침에 입각해서 해마다 다량의 노무자를 ‘내지’, ‘서북선’ 방향으로 공출 취로하게 하는데, 이들 노무자는 풍속 습관 등 취로 지방과 다를 뿐만 아니라 규율적 통제 있는 노동 경험이 부족하고 노무 관리상, 또한 내선일체 강화상, 예전 그대로는 수많은 곤란과 영향 많은 현상이 되는 것에 대해, 금번 노무지도원훈련소를 설치하여 중견 노무자의 심신 훈련을 행하고 노무 지도원으로서의 자질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책에 기여하게 하려고 한 것이다.

전라남도 노무지도원훈련소 규칙

제1조 전라남도 노무지도원훈련소는 도 알선 노무자 지도의 지위에 서야 할 중견 노무자에 대해 견실한 국가 관념과 공고한 국민적 신념을 함양하고 산업전사인 궁지를 견지하게 하여 노무자로서 완전한 자질을 연성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 소에 다음 직원을 둔다.

소장

감사 1인

주사 1인

강사 약간 명

서기 1인

보도원 약간 명

제3조 소장은 전라남도 내 내무부장직에 있는 조선노무협회 전라남도 지부 부지부장을, 감사는 동도 사회과장의 직에 있는 동지부 상무이사로서 충원한다. 주사, 강사, 서기, 보도원은 조선노무협회 전라남도 지부장(이하 단지 지부장이라고 칭한다)이 이를 명하고 또는 촉탁한다.

제4조 소장은 지부장의 지휘감사를 받아 사무를 담당한다. 감사는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 사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주사는 소장의 명을 받아서 모든 사무에 종사한다. 강사는 소장의 명을 받아 훈육을 담당한다. 서기 및 보도원은 상사의 지휘를 받아 서무 및 훈육에 종사한다.

제5조 훈련기간은 대개 2주간으로 하고 시의에 따라 신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간 중 사대절(四大節)¹⁷⁾ 이외의 제일(祭日), 휴일은 평일 대로 훈련해야 한다.

제6조 교수 훈련 과목은 다음과 같다.

국체관념 및 경신사상의 함양

시국인식 및 방첩사상의 함양

간이 부기

17) 이전에 일본의 국경일이었던 사방배(四方拜), 기원절(紀元節), 천장절(天長節), 명치절(明治節)의 총칭.

구급법 및 보건위생

노무 지도자 소양

예의범절

교련

실습

제7조 본 소에 입소해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임을 요한다.

국민학교(6년제) 졸업 이상 또는 이것과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연령 25세 이상 40세 미만의 병적을 갖지 않는 반도인 남자로서, 사상, 견실, 소행, 선량, 심신 강건한 장래 도 알선 노무자 반장 또는 단장으로서 일반 노무자를 통솔할 수 있는 재간을 갖고 향당 청장년 간에 신망이 두텁고 또한 스스로 노동에 견딜 수 있는 자일 것.

제8조 조선노무협회 전라남도 지부 각 분회장은 입소자 모집 통지가 있을 시는 지원자로 하여금 다음 서류 등을 갖추어 출원하게 하여 이를 첨부한 뒤 소정 기일까지 순위를 매긴 명부와 함께 제2호 양식에 따라 지부장 앞으로 추천해야 한다.

1. 입소원서(제1호 양식)
2. 자필 이력서
3. 호적초본
4. 사진(명함판의 배판)

제9조 소장은 앞 조항에 따른 입소 지원자 중에서 전형된 훈련생 입소를 허가한다.

제10조 훈련생은 모두 기숙사에 들어가게 하고 여비, 식비 그 밖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야 한다.

제11조 훈련생은 자기의 편의에 따라 중도 퇴소하지 못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는 소장에게 출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2조 다음 각 호의 한 가지에 해당하며, 위업의 전망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퇴소를 명해야 한다.

1. 장래 노무자 반장 또는 단장될 자격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1. 법률을 어지럽히고 개전(改悛)의 전망이 없는 자
1. 질병 그 밖의 사고에 의해 훈련 계속하기 어려운 자
1. 그 밖에 소장에 의해 퇴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제13조 앞 2조에 따라 중도 퇴소하게 된 자에게는 그 재소 중에 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시켜야 한다.

제14조 소정의 훈련을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증서(양식 제3호)을 수여한다.

본 수료증서 수급자는 노무자 반장 또는 단장으로 알선한다.

제15조 본 규정으로 정해진 것 외 필요한 사항은 지부장의 허가를 받아 소장이 이를 정한다.

부칙

본 규정은 발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양식 제1호)

노무지도원훈련소 입소지원서

귀노무지도 훈련소에 입소를 희망해서 특별 전의(誮議)로써 허가해주실 것을 아래와 같이 이력서, 호적초본 및 사진을 첨부하여 이에 부탁드립니다.

년 월 일

본적

주소

씨 명(인)

전라남도 노무지도원훈련소장 귀하

(양식 제2호)

노무지도원 훈련생 추천서(분회명)

본 적				
주 소				
직업		씨명		생년월일
성질		학력		신망 정도
소행		경력		
반장 또는 단장 및 출가 경험의 유무		전과(前科) 유무		가정 상황
그 외 참고 사항				

위 노무 지도원 훈련소 훈련생으로서 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함.

년 월 일 분회장

조선노무협회 전라남도 지부

전라남도 노무 지도원 훈련소장 귀하

(양식 제3호)

제 호

수료증서

씨 명
생 년 월 일

상기 자 본 훈련소에서 소정의 훈련을 수료한 것을 증명함.

년 월 일

전라남도 노무 지도원 훈련소장

편집후기

- “‘대동아건설’은 일본 ‘황도’를 기초로서 대동아민족 사이에 인간 최고의 도의를 시행하는 것이다”란 고이소(小磯) 신 총독이 부산 상륙에 즈음해서 한 담화의 한 구절이다.
- 같은 의미의 말을 다른 몇 사람인가의 사람들이 입에 담은 적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일본 고도(古道)의 정신에 투철한 고이소 장군의 입을 통해서 이를 들을 때, 말은 영묘한 반향을 갖고 감명 깊게 하는 것이다.
- 인간 최고의 도의를 밖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안으로 이를 확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총독도 또한 언급하신 바이다. 그것이 국내 경제 체제상에 어떻게 발현되고, 또한 노무문제 상에 어떻게 투영해 올 것인가? 우리들은 괄목하여 신 총독의 지도를 받자.
- 노무 관리의 문제는 거의 노무에 관한 문제를 중심으로 하고, 또한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무리 고원(高遠)한 이상론도 현실을 유리해서는 공론으로 끝난다. 때문에 실제로 공장, 광산, 토건계 등에 있어서 노무 관리국에 대응할 수 있는 경험이야말로 국가의 노무정책에 대해 권위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 이 의미에서 본 호에 모을 수 있었던 여러 경험이의 진필, 치밀한 기술, 논책은 그 분야를 여는 대단한 것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 본지의 의뢰를 응락하신 집필자 여러분의 그 노고를 감사함과 동시에 또한 각 방면의 노무 관리자가 본 호의 힌트에 따라 계속해서 체험에 의거한 탁견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려 둔다.
- 일본 관리 2만 명의 남방 파견, 반도 청년 수천 명의 미영 포로 감시원 채용 등등, 우리나라의 노동력 문제는 점점 다변적이 되어 가는 감이 있는, 양과 질의 양면에서 노무 문제의 검토를 계을리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시기다.

〈출전 : 「朝鮮勞務協會支部通信」, 『朝鮮勞務』 제2권 3호, 1942년 6월, 69~80쪽〉

2. 병력 동원

1) 육군병사부령(1939~1945)

[1-1]

칙령 제518호

짐은 육군병사부령을 재가하고 이에 이를 공포하게 한다.

히로히토(裕仁)

1939년 8월 1일

내각총리대신 남작 히라누마 기이치로(平沼騏日郎)
육군대신 이타가기 세이시로(板垣征四郎)

칙령 제518호

육군병사부령

제1조 조선 및 대만의 각 병사구에 육군 병사부를 둔다.

육군 병사부는 해당 병사구명을 관청한다.

각 병사구의 구역은 육군 관구표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2조 육군 병사부는 해당 병사구내의 다음과 같은 사무를 담당한다.

1. 징병 및 소모(召募)에 관한 사항.
2. 재향군인(장관(將官) 및 각부 장관은 제외)의 복역 및 소집에 관한 사항.
3. 재향장교단에 관한 사항.
4. 재향군인회에 관한 사항.
5. 전 각호에 든 자 외에 육군대신이 정한 병사에 관한 사항.

제3조 육군병사부에는 다음과 같은 직원을 둔다.

부장

부원

하사관 및 판임문관

전항의 직원 중 하사관은 예비역 또는 후비역(後備役)인 자로 이를 보충할 수 있다.

제4조 부장은 대만군 사령관 또는 사단장에 예속하여 부의 업무를 총리한다.

제5조 부원은 부장의 명을 받아 각기의 적임 업무를 담당한다.

제6조 하사관 및 판임문관은 상관의 명을 받아 사무에 종사한다.

부칙

본령은 공포일로부터 이를 시행한다.

〈출전 : 「陸軍兵事部令(勅令 第518號)」 1939년 8월 1일, 御署名原本 · 昭和十四年, 아시아역사자료센터〉

[1-2]

칙령 제325호

집은 육군병사부령 중 개정의 건을 재가하고 이에 이를 공포하게 한다.

히로히토(裕仁)

1941년 3월 29일

내각총리대신 공작 고노에 후미마로(近衛文磨)

육군대신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칙령 제325호

육군병사부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항 중 '조선 및 대만의'를 삭제한다.

제2조 제2호 중 '및 각부 장관'을 삭제한다.

제3조 제2항 중 '또는 후비역'을 삭제한다.

제4조 중 '대만군사령관'의 밑에 '관동군 사령관'을 첨가한다.

부칙

본령은 1941년 1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출전 : 「陸軍兵事部令中ヲ改正ノ件(勅令 第325號)」, 1941년 3월 29일,

御署名原本 · 昭和十六年, 아시아역사자료센터〉

[1-3]

칙령 제626호

집은 육군병사부령 중 개정의 건을 재가하고 이에 이를 공포하게 한다.

히로히토(裕仁)

1942년 8월 16일

내각총리대신 겸 육군대신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칙령 제626호

육군병사부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2 전조에 든 것 외에 북경, 남경 및 광동에 육군 병사부를 둔다.

전항의 육군 병사부는 각소재지명을 관청한다.

제1항의 육군 병사부의 담임구역은 재지나 육군 최고지휘관이 정한 바에 의한다.

제1항의 육군 병사부의 소관 장관은 필요에 따라 해당 병사부의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2조 중 ‘해당 병사구’의 밑에 ‘(지나에는 해당 담임구역)’을, ‘다음의’의 밑에 ‘병사’를 첨가하고 제3호 내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재향군인(장관을 제외)의 은급, 사금(賜金), 부조금 및 상전(賞典)에 관한 사항

4. 재향장교단에 관한 사항

5. 재향군인회에 관한 사항

6. 국방사상 보급에 관한 사항

7. 군인 원호 및 직업 보도에 관한 사항

8. 전 각호에 든 것 외에 육군대신이 정한 병사 사무에 관한 사항

제3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출장소를 둔 경우에는 출장소장은 부원으로 이를 총당한다

제4조 중 ‘또는 사단장’을 ‘또는 사단장 또는 북지, 중지 혹은 남지의 육군 최고지휘관’으로 개정한다.

부칙

본령은 공포일로부터 이를 시행한다.

〈출전 : 「陸軍兵事部令中ヲ改正ノ件(勅令 第626號)」, 1942년 8월 18일
御署名原本 · 昭和十七年, 아시아역사자료센터〉

[1-4]

칙령 제226호

짐은 육군병사부령 중 개정의 건을 재가하고 이에 이를 공포하게 한다.

히로히토(裕仁)

1943년 3월 27일

내각총리대신 겸 육군대신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칙령 제226호

육군병사부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2 제1항 중 ‘전조’를 ‘전2조’로 고치고 동조를 제1조의 3으로 한다.

제1조의 2 전조에 언급한 것 외에 파라오에 파라오 육군 병사부를 둔다.

파라오 육군 병사부의 담임구역은 남양군도의 구역에 따른다.

제2조 중 ‘지나’를 ‘전2조에 언급한 육군 병사부’로 고친다.

제2조의 2 조선에 있는 육군 병사부에 제1과 및 제2과를 둔다.

각과의 사무의 분장은 육군대신이 이를 정한다.

제3조 제1항의 다음에 다음의 1항을 첨가한다.

전항 직원 외에 조선에 있는 육군 병사부에는부장을 둔다.

제4조 부장은 제1조에 언급한 육군 병사부에서는 대만군 사령관, 관동군 사령관 또는 사단장에, 파라오 육군 병사부에서는 대만군 사령관에, 제1조의 3에 □□ 육군 병사부에서는 북지, 중지 또는 남지에 있어서의 육군 최고지휘관에 예속되어 부의업무를 총리한다.

제4조의 2 과장은 부장의 명을 받아 과의업무를 관장한다.

제5조 중 ‘부장’의 밑에 ‘(조선에 있는 육군 병사부에는 과장)’을 첨가한다.

부칙

본령은 1943년 8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출전 : 「陸軍兵事部令中ヲ改正ノ件(勅令 第226號)」, 1943년 3월 27일,
御署名原本 · 昭和十八年, 아시아역사자료센터〉

[1-5]

칙령 제206호

짐은 연대구 사령부령 및 육군병사부령 중 개정의 건을 재가하고 이에 이를 공포하게 한다.

히로히토(裕仁)

1945년 4월 5일

내각총리대신 고이소 구니아키(小磯國昭)

육군대신 스기야마 하지메(杉山元)

칙령 제206호

제1조 연대구(聯隊區) 사령부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6호를 제7호로 하여 이하는 순차적으로 내리고 제5호의 다음에 다음의 1호를 첨가한다.

6. 학교에서의 교련에 관한 사항

제2조의 2 제1항 중 ‘ 및 제2과’를 ‘, 제2과 및 제3과’로 고친다.

제3조 중 ‘과장’의 다음에 ‘부관’을, ‘부원’의 다음에 ‘부(附)’를 첨가한다.

제4조의 3 부관 및 부는 사령관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한다.

제2조 육군병사부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이하는 순차적으로 내리고 제5호의 다음에 다음의 1호를 첨가한다.

6. 학교에서의 교련에 관한 사항

제2조의 2 제1항 중 ‘및 제2과’를 ‘, 제2과 및 제3과를, 대만에 있는 육군병사부에 제1과 및 제2과’로 고친다.

제3조 제2항 중 ‘과장’의 밑에 ‘, 부관 및 부를, 대만에 있는 육군 병사부에는 과장’을 첨가한다.

제4조의 3 부관 및 부는 부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한다.

제5조 중 ‘조선’의 밑에 ‘및 대만’을 첨가한다.

부칙

본령은 공포일로부터 이를 시행한다.

〈출전 : 「聯隊區司令部令及陸軍兵事部令中ヲ改正ノ件(勅令 第206號)」, 1945년 4월 5일
御署名原本 · 昭和二十年, 아시아역사자료센터〉

2) 병사부 관계 신문기사

[2-1]

병사부(兵士部) 건설, 조선사령부 통합(統轄)

조선군 보도부 발표

시국의 진도에 따라 조선반도가 동아 신질서 건설의 전진기지로서의 주요성(主要性)에 비추어 총후 총력을 유감(遺憾)없이 발휘하기 위하여 필요한 군방면의 시설도 여러 가지로 연구되고 있는데 이번 그 제1보(步)로서 조선군에 병사부를 신설하기로 되었다. 신설하게 될 병사부는 양 사단(師團)에 있어서 군사령부가 이를 통할 지도하는데 그 업무는 대체로 일본의 연대구사사령부(聯隊區師司令部)와 같은 것으로 동원(動員), 초집(招集) 징발, 재향군인(在鄉軍人), 학교교련 청년훈련 등 지방관계의 업무로서 금후 조선인 지원병제도 청년훈련의 비약적 확충 등 조선통치의 쇄신강화에 즉응하여 군방면의 지방 접촉의 제1선으로서 당당히 거보(巨步)를 내 드디어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다. 그런데 조선군에서는 지난 14일이 제1회 협의를 하기 위하여 양 사단에서 관계자를 초집하여 종일 열심히 간담회를 열었는데 병사부 설치예정지는 경성(京城), 평양(平壤), 대구(大邱), 광주(光州), 이상 심택(深澤)부대 관구(管區)], 나남, 함흥(이상 19사단관구)의 6개소 사무개시는 오는 8월 1일부터다.

종전 강원도는 제19사단 관할에 있었으나 금후로는 제20사단 관할에 편입되기로 정식 결정되었다.

〈출전 : 「兵事部新設 朝鮮軍司令部統轄」, 『東亞日報』, 1939년 7월 16일〉

[2-2]

7처에 병사부 신설, 징병제와 건민연성(健民鍊成) 준비에 만전

빛나는 징병제 실시를 앞두고 건병연성에 돌진하는 반도의 징병사무와 일반 병사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육군에서는 오는 8월 1일부터 전선 7개소에 병사부를 신설하기로 되었다. 신설지는 신의주(新義州 평북) 해주(海州 황남) 춘천(春川 강원) 청주(淸州 충북) 대전(大田 충북) 전주(全州 전북) 부산(釜山 경남)의 7부읍 인대 이로써 전선 병사부는 기설의 경성(京城) 평양(平壤 평남) · 대구(大邱 경북) · 파주(波州 경기) · 나남(羅南 함북) 함흥(咸興, 함남)의 6개소를 합하면 13개소로 되어 각도에 전선 병사부가 설치되게 된다.

〈출전 : 「七處에 兵事部 新設－徵兵制와 健民鍊成準備에 萬全」, 『매일신보』, 1943년 7월 6일〉

3) 조선 내 병사부장회의 서류 제출의 건

조참밀 제735호

선내¹⁸⁾ 병사부장회의 서류 제출의 건

1939년 8월 30일
조선군 참모장 기타노(北野憲)

육군차관 야마와키 마사타카(山脇正隆) 전(殿)

선내 병사부의 신설을 계기로 하여 주로 동원 업무, 반도인 특별지원병 관계 업무 및 보도 업무에서 장래 연결 협조를 긴밀히 할 목적으로 당 군 주최 하에 8월 22일~23일 이틀에 걸쳐 선내 병사부장(사단 관계 참모 및 사령부 부대좌 아울러 보도 업무 관계 주임자 등도 함께) 회의를 개최했다. 동 회의의 주요 배포 서류는 별책과 같이 제출한다.

18) 이 문서에서 '선내'는 조선 내를 의미한다.

선내 병사부장회의 자료

조선군 사령부

목 차

1. 군 사령관 고사(告辭)
2. 군 참모장 구연(口演)¹⁹⁾ 요지
3. 군 보도부장 구연 요지
4. 군 고급 참모 구연 요지
5. 군 동원 주임참모 설명 사항
6. 군 보도부원 강화(講話) 요지(현시에서의 선내 신문 지도의 개황)
7. 총독부 학무국장 강화(총독부 시정상의 주요 사항)
8. 회의 일과 예정 및 출석자

비(秘)

고사

시국의 전도가 더욱 중차대해 가는 이때 국방력, 그 중에서도 황군의 전력 확충 강화를 위해 그 배양 및 추진 기관인 병사부의 신설을 우리 반도에서 보게 된 것은 그 의의가 극히 크다 할 것이며, 황국을 위해 진정으로 경축해 마지않는 바이다.

무릇 이번 병사부의 신설은 실로 선내 육군 군정 시설에 일대 전기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 창업에 임하는 제관의 부담 역시 실로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제관은 충분히 그 중책을 명심하고 조선 통치의 대본과 그 설정 및 특수성을 잘 고려하여, 신속히 견고한 기초를 확립함과 동시에 투철한 연구 및 열렬한 노력을 함께 기울여 확고불발의 신념 및 왕성한 실행력으로 더욱더 실적 양양에 힘써 국방 위력을 더한층 충실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

1939년 8월 22일
조선군 사령관 나카무라 고타로(中村孝太郎)

비(秘)

선내 병사부장회의 석상에서의 조선군 참모장 구연 요지

1939년 8월 22일
용산 해행사(偕行社)에서

19) 말로 사연을 베풀어 말함.

창업에 총망하여 업무 번망한 이 때 양 사단 예하의 전선 병사부장 제관의 회합을 기회로 소회를 개진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바이다.

이하 명에 의해 군의 입장에서 장래 제관의 업무상 참고가 되리라고 사료되는 약간의 사항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1. 병사부의 설치에 대하여

병사부 업무는 종래 양 사단에서는 사령부 및 연대내의 한 기관으로 하여금 집무하게 하고 해당 집무자의 지대한 노력으로 지장 없이 업무가 수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획기적인 군비 충실 계획이 확립되어 조선인 중에서도 다량의 특별지원병을 채용하고 국방의 중책 분여(分與)를 기도하게 되면서 그 업무는 점차 복잡해지고 광범위해짐에 따라 이제는 사단 사령부 내의 한 귀퉁이에서 이를 처리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어, 이에 조선군의 요망을 받아들여 병사부를 신설하기에 이르렀다.

무릇 신설 업무는 많은 곤란과 생각지도 않은 착오를 수반하므로 제관의 노고는 실로 충분히 살필 수 있다. 충심으로 제관의 노력에 대해 사의를 표하는 바이다.

다행히도 제관은 모두 이러한 종류의 업무 체험이 비교적 풍부하여 처리 곤란한 일을 잘 단절하고 적확한 기초를 확립하여 병사부 설치의 목적을 달성해줄 것을 믿지만, 이 기회에 한 마디 덧붙여서 완벽을 기할 것을 바라 마지않는 바이다.

2. 군부 및 총독부 측과의 관계에 대하여

병사부 신설은 이를 법제상으로 보면, 실로 조선에서의 육군 군정 시설에 일대 전기를 마련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아마도 병사부는 그 업무 내용이 군사에 관한 사항이겠지만, 그 업무의 주요 대상은 항상 재향군인 혹은 일반 지방 민중이 될 것이다. 따라서 종래의 신설 부대와 같이 순연한 통수권의 발동만으로 활동하는 군대와는 그 취지를 달리 한다.

그러므로 이때 특히 주의를 요하는 것은, 조선 통치의 대본에 따라 총독정치와 밀접한 연계를 유지하고 서로 제휴하여 국방의 중책을 완수하는 것을 일대 신조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업무 실시에 있어서는 충분히 내선인의 동향을 파악하고 각 지방의 특수성에 즉응하여 대국을 잊지 않을 필요가 있다. 특히 군, 사단 및 총독부 행정 각 관청 등의 직역(職域)과 관련성을 깊이 고려하여 서로 긴밀하게 연락 협력하기 바란다.

3. 동원 업무 관계에 대하여

동원 및 소집 등의 업무는 이번 사변에 비추어 보아 전국적으로 반성 계칙(戒飭)할 필요가 있다. 즉 집무자의 법규 연구가 불충분하고 집무의 소홀에서 비롯되는 월법행위로 인하여 인민의 공권에 걱정을 끼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거국일치의 이 시점에서 굳이 이러한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실로 한심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직접적인 주요 원인을 탐구해 보면, 업무에 대한 지식과 연구가 불충분하고, 병적, 전시 명부 및 재향군인 명부 등의 정리가 불량하며 그 감독 지도가 적절치 못한 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서, 이 건에 관해서는 제관이 이미 각 사단에서 엄중히 요망하여 충분히 알고 있으리라 믿고 여기에서는 요지만을 강조하고 쓸데없는 말을 아껴, 이하 두세 가지의 참고 사항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고자 한다.

- (1) 지방청, 경찰서 등의 소집 사무의 검열 지도는 이제까지 대충 적당히 해왔다. 그러나 주무계통을 달리하는 군부의 지도로써 그 실시에 임하면 완엄(緩嚴)이 적절하여, 효과를 거두기 위해 노력하는 연구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제 규칙에 명시된 제사항의 실시에 관한 지도는 가장 적합하고 엄정함을 요하기 때문에 당사자로 하여금 혹시라도 과오, 결함이 없도록 부단한 지도를 실시하기 바란다. 한편 경찰서에 대한 검열 연습 실시에서 지방 도청의 주임자로 하여금 계획하여 실시하도록 하는 따위는 실제적이고 유효적절한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 (2) 선내 재향군인에 대해서는 동원의 영이 내려져서부터 그 완결에 이르기까지 극히 짧은 기간 중에 응급 동원으로 요원을 충족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업무 처리는 물론 동원 계획상의 제 규칙에 의해 처리되어야 하지만, 선내 재향군인 특히 특(분)업자 등이 적은 현황에서는 병사부에서 구분하여 처리할 인원의 배당 등을 특히 적재적소주의의 배당에 유의하여 인원의 경제적 이용을 꾀할 필요가 있다. 또 그 소집 준비는 특히 실정에 맞게 처리함으로써 응급 동원 실시의 요구에 순응할 수 있도록 완벽한 준비를 하기 바란다.
- (3) 선내 재향군인의 변동은 매우 빈번하여 때로는 약5할이 변동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실제로 변동 보고에 누락되는 자가 1, 2할 정도 존재하는 것이 이제까지의 실정이다. 이 때문에 득원에 산입할 수 없는 자가 상당수 있어서 자연히 배당상 공제자로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작전의 요구에 따른 재 조선 사단 응급 동원 부대의 편제를 가급적 크게 할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신고 수리 및 기타 처치를 신속하고 확실하게 하도록 경찰 당사자를 지도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이를 취득하도록 힘쓰는 것이 긴요하다. 부족한 병종에 대해서는 그 필요가 특히 절실하다. 특별히 유의해 주기 바란다.
- (4) 조선은 소련과 접壤한 특수 지리적 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그 방위에 있어서 방공부대의 정비 충실은 매우 긴요함에도 불구하고, 국군 일반의 현황은 작전 당초부터 방공부대의 배속이 충분하다고 할 수 없어 조선 독자의 입장에서 이에 즉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필요로 한다. 즉 상황에 따라서는 방공부대 편성을 위해 지극히 단시간에 실시하는 임시 소집에 의지해야 할 경우가 있음을 고려하여 명을 기다리는 인원의 적화한 조사 및 언제라도 목적에 부응한 임시 소집이 가능한 태세를 고려하는 것이 긴요하다. 이러한 점에 관해서 부단한 연구와 만전을 기한 준비가 있기를 바란다.
요컨대 조선에서의 응급 동원은 출동 야전부대 및 병참부대뿐만이 아니라, 방위부대 역시 마찬가지로 응급 동원으로 단시일 내에 편성을 완료하여 바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 (5) 선내 소집 유예자는 재향군인 총수에 비해서 매우 다수인 상황에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특히 엄선주의로 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실정에 있다. 그리고 본 인원의 대부분은 군 사령관이 결정하여 사단장에게 시달되는 경우가 많다. 군 사령관의 재량에 따라 결정하는 선내 경찰관의 유예자 수도 내년도에는 금년에 비해서 상당히 삭감될 예정인데, 한편 총동원, 군수동원 실시에 있어서 유예자가 증가하는 것은 부득이한 정세이지만, 군으로서는 이런 종류의 비전투원 요원으로 남는 자를 극력 줄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또 소집 유예자로 시달린 자 중 해당자(복역상의 관계 및

관내에 재류 하지 않는 자)가 아닌 자는 될 수 있는 대로 신속히 순서를 거쳐 그 명부를 제출해주기 바란다.

4. 육군특별지원병에 대하여

(1) 반도인 특별지원병제도를 실시한 이래 금년은 2년차로서 작년도 채용된 현역 및 제1보충병은 현재 양 사단부대에 입영 재대(在隊) 중이며 남아서 지키고 있던 제20사단 부대의 현역 보병은 현재 그 대부분이 출정하여 전투에 종사, 이미 약간의 전사상자가 나온 상황이다. 또 금년도 검사를 마친 자의 반수는 현재 훈련소에 입소해 있고 그 나머지는 고향에서 12월의 입소를 준비하고 있다.

본 지원병의 일반 성적은 대체적으로 양호하여 ‘국군’을 위해 참으로 경하해 마지않는 바이다. 그러나 단기간에 의한 군대 교육에서의 형이상학적인 성적을 가지고 바로 지원병의 가치를 속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황국’ 수천 년 아래의 전통적인 정신을 근본적으로 주입하고 동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그들의 생애를 통해서 강력한 훈화 지도를 끊임없이 하여 습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렇지만 현재 시국에 대한 ‘황군’의 부담이 중대하다는 것과 또 조선 통치 일반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중앙부에서도 앞으로 본 제도의 실시를 더욱 강화할 것을 고려 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원병이 부대에 있는 동안에는 물론 재향군인이 된 후의 지도에도 만전을 기해, 본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고 지원병이 진정으로 황군의 일원으로서 그 복무를 완수하게 할 수 있도록 유의해 주기 바란다.

(2) 작년도에 채용한 치중병(輜重兵)(특무병)의 반 및 제1보충병 고사포병 전부는 금월 말 각각 제대함으로써 양 사단 모두 곧 이를 재향군인으로서 송출하게 되었다. 장래 이들 재향군인과 내지 출신 재향군인과의 융화 및 그들에게 반도인 민중의 중견을 맡기기 위한 지도에는 특히 주의해 주기 바란다. 또 이 지원병 출신 재향군인은 처음 생겼으며 게다가 군에 있던 기간이 단시일인 점을 고려하여 재향군인의 본분 특히 군인 정신의 함양에 이후 더욱 적절한 지도를 해주기 바란다.

(3) 본 제도의 지원자는 양년도의 상황에 비추어 보건대 대체적으로 종류 이하의 생활을 해온 가정에서 자란 자가 많고 따라서 그 학력은 심상소학교 졸업 정도인 자가 대부분인 상황이다. 우수한 소질을 가진 지원자(사상은 물론 학력, 가정 관계가 양호한 자)를 얻는 것은 지원병의 복무 성과를 향상시키고 본 제도가 기도하는 바를 완수하는데 있어서 중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지원자 중에 소질이 양호한 자가 많이 증가할 수 있도록 전 지방의 지도를 바란다.

더욱이 지원자는 일반적으로 지원상 인식하고 있어야 할 병역법규에 대한 지식이 너무 불충분한 자가 많다. 그래서 진정으로 병역의무를 자각하여 진실하고 신념이 있는 지원자가 없으므로 재향군인분회 및 경찰서 기타 지방 관청, 단체 등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원자에게 지원상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을 주지시켜 제국군인이 되려고 하는 자가 가져야만 하는 신념을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4) 지원병의 전형 검사는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하는데 군은 특히 그 소질의 선정을 중시하며,

학과 등도 단순히 학력 정도를 검사하는데 그치지 않고 인물고사에 중점을 두어 실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군인정신을 체득할 수 있는 자질을 가진 자의 선발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있다. 작년 및 금년도의 전형 실시위원은 비상한 노력으로 그 전형에 임하여 대체적으로 우수자의 채용에 유감없는 전형을 보였다.

본 전형은 군 사령관의 명을 받은 위원이 이를 담당하고 양년도 모두 사단 사령부 부대좌 및 기타 군 및 양 사단의 대부장교 등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병사부의 설치에 의해 내년도 이후는 주로 제관이 수고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본 전형에 관한 군의 영구 규정은 곧 마련될 것이며 전형 실시에 관한 세부 사항에 대해서도 별도 지시가 있겠으나, 전형 실시에 있어서 제관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주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일반 장정에 대한 전형과는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잘 알아서 유감없는 채용이 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

5. 청년 훈련의 진흥에 대하여

청년 훈련은 제관이 이미 숙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단순히 예비군인을 양성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황국신민으로서의 우량한 자질을 함양하고자 하는 것이다. 더구나 제국의 현재 상세를 고려할 때 유망한 인적 자원을 가능한 한 많이 배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청년 훈련의 의의는 그 중요성이 배가되는 것이다. 장차 반도 민중의 동향이 황국신민화로 전환하려는 일대 호기를 맞이해서는 특히 그러하다.

따라서 제관은 그 확충 강화에 일단의 노력을 경주함과 동시에 그 덕목 양성에 유감없는 노력을 해주기 바란다.

6. 경방단(警防團)에 대하여

전시 또는 사변시에 적의 공격을 받거나 또는 그럴 우려가 큰 지역에서 육군이 행하는 방위의 보조로서 특종의 경방단을 설치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 경방단은 평시에는 그 소재지의 육군 사령관이 이를 훈련하여 전시의 적당한 시기에 그 지휘하로 들어갈 것이 예상된다.

무릇 군이 행하는 소위 적극 방공은 군 스스로 이를 행하는 것을 본칙으로 하지만 현재 상태는 이 경방단을 설치하는 것이 부득이한 상세이므로, 제관은 금후 본 단의 건전한 발달에 대하여 특별한 배려를 가지고 협력해 주기 바란다. 상세한 것은 주임참모의 설명이 있을 것이다.

7. 보도업무에 대하여

보도업무의 주안은 거국일치, 일심협력으로 국책 수행에 아쉬움을 남기지 않게 하고 적의 선전 모략에 대해 틈을 허용하지 않는 동시에 오히려 적의 사상을 어지럽혀 격파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 육군 보도기관은 특히 다음의 몇 가지에 중점을 두고 보도업무에 임할 필요가 있다.

- (1) 육군의 대 신념을 천명하고 일본 정신의 양양, 국가 충력의 발휘에 대한 열렬한 노력 및 그 성과 등을 되도록 명료하게 설명한다.
- (2) 국방의 대의 특히 육군의 입장을 밝힌다.
- (3) 소련과 지나와의 정면 전쟁에 대한 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 외에 또 조선 통치의 실체를 파악하고 총독 정치에 협력하며 적극적인 국방의 완수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8. 직업 보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각 병사부에 보도부의 파견원으로서 주사 1명, 서기 1명을 항상 두도록 중앙부에 건의하고 있다. 선내에 가급적 많은 재향군인을 정착하게 하고 작전의 조기 응급동원 병력을 크게 하며 아울러 선내 민심 안정을 위해 핵심적인 지도자를 획득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현재 은진산업(殷賑産業)²⁰⁾이 발흥한 기회를 이용하여 제대자를 바로 이쪽 방면에 취직·정착시키는데 일단의 노력이 있기 바란다. 또 이 건에 관해서는 군도 가능한 한의 노력을 고려하고 있으므로 적당한 시기에 긴밀히 연락하기 바란다.

9. 군 동원계획 및 기타 군 관계 제 조규의 개정에 대하여

병사부의 설치 및 그 밖에 사단의 의견에 따라 군 관계의 동원계획령 및 기타 제 조규를 별책과 같이 개정 혹은 규정할 예정이다. 본안에 대한 세부 설명은 주임참모가 실시할 것이다.

이상 수항에 걸쳐서 이야기 한 사항은 이미 양 사단에서 명시한 내용이지만, 조선 전반의 실정 및 군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개진하는 바이다.

제관은 그 의미를 잘 살펴 신설 제일보부터 착착 성과의 발휘를 기할 것을 간절히 바라마지 않는다.

비(秘)

선내 병사부장회의 석상에서의 조선군 보도부장 구연 요지

1939년 8월 22일
용산 해행사에서

이번에 병사부가 신설되어 군, 사단의 보도부와 함께 선전업무 및 후방 지도의 제일선에서 활약하게 된 것은 국군을 위해 또 조선 반도를 위해서도 참으로 모두 다함께 기쁨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군 보도부는 방금 말씀하신 상사의 의도를 잘 헤아려 사단을 비롯한 재선 보도선전기관과의 협력을 한층 긴밀히 하고 목표를 하나로 하여 열심히 임무에 매진할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기회를 빌어 종래의 경험에 비추어 소회의 일단을 이야기함으로써 참고로 하고자 합니다.

1. 시국에 관한 선전의 일반 요령에 대해서는 중앙부의 방침 및 종래 당 부가 사단에 배포한 지침 등에 준거하여 이를 지방의 실정에 따라 시행하면 되는데, 특히 조선의 특이한 현상으로서, 이번 사변을 계기로 짹 터온 반도 민중의 애국의 열정을 양성하고 그들의 일본정신을 더욱 앙양하여 이를 황국

20) 시국관계로 호경기에 있는 산업.

신민화함과 동시에 내선일체의 실을 강화 구현하게 하며, 이를 위해서 군의 입장에서는 지도하는 사이 사이에 끊임없이 국방의 중요성 특히 닥쳐올 극동 정세에 즉응하여 국군 군비를 비약적으로 증강할 필요성, 황군이 사변에서 올린 혁혁한 전적 등을 철저하게 알려 군에 대한 신뢰를 더욱 크게 하는 것이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내·선인을 불문하고 조선이 작전 보급상 극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여 군이 기도하는 시책에 대해 적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는 기백을 함양하는 것도 역시 긴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일부 조선인 중에는 영미에 의존하고 소련을 두려워하는 의식이 상당히 뿐만 아니라 침투해 있는데, 이를 불식하고 또 명랑한 장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더욱 심각해지는 경제 통제의 희생에 만족하는 결의를 부단히 고취하는 것은 선전에서 유의해야 할 점입니다. 또 앞으로 특히 중요시해야 할 사항은 배영(排英)문제, 일·독·이 추축(樞軸)의 강화, 방공, 지원병제도, 마사사상(馬事思想)의 보급 향상 등입니다.

2. 업무 실시상 주된 주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조선에서의 대부분의 일은 행정 관현과 밀접한 연계를 유지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평소에 소관 내의 도청 및 기타 관계된 관민기관과의 사이에 군민일치의 ‘명랑한 분위기’를 양성해 두는 것이 임무 달성을 위한 요체입니다.
- (2) 반도 민중은 내·선인이 섞여 있는데, 특히 선인 중에는 신인을 자처하는 소위 지식계급이라 칭하는 자가 있는가하면 완전히 시대와 동떨어진 무지한 대중도 있고, 또 내지인 중에도 그릇된 우월감으로 내선일체를 방해하는 자가 있는 등 극히 복잡하여 조선 통치에 곤란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강연, 좌담회 등의 각종 선전 수단을 강구하는 데서도 그 지방의 실제 사정에 즉응하여 쓸데없이 형식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되는대로 싸잡아서 하는 식의 처리는 가급적 피하지 않으면 효과가 적습니다. 즉 도시와 농촌, 지도계급과 대중, ‘국어’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 남성과 여성 등으로 구분하여 항상 동일한 자가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일을 듣거나 보는 그러한 폐단에 빠지지 않도록 연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선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반향을 끊임없이 조사하여 참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3) 선전, 보도업무는 시기를 잃으면 효과가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内外 특히 지방 실정을 통관(通觀)하여 ‘호기를 잡아 손을 써서’ 이를 행하고, 한번 실행에 옮기면 강렬한 열의를 가지고 그 목적을 끝까지 달성하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 (4) 신문, 라디오, 영화 등은 선전의 중요한 이용 기관입니다. 그러므로 평소부터 가까운 신문기자, 라디오업자와의 관계를 긴밀히 하여 시국의 인식, 국방 관념에 대해 확고한 신념을 가지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일이 생기고 나서 군이 생각하는 대로 그들을 협력시키려고 해도 좀처럼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신문 기사는 종종 부주의로 인하여 의외의 반향을 초래하거나 방첩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상세한 것에 대해서는 부원이 설명하겠습니다.
- (5) 조선에서는 귀환병의 선도, 재향군인, 국방 부인회의 지도가 여러 관점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병사부 본연의 차□뿐만 아니라 넓게 이를 통하여 내선일체의 실을 올리는 연구가 극히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6) 병사부 각위는 조선정신총동원지방연맹의 참여를 위촉받을 것이며 또 재향군인은 개인의 자격으로 연맹원이 될 수 있는데, 정신동원과 군부, 향군과의 관계는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군부는 관계자 배석자로서 임원회에 열석하고 향군은 하나의 개인으로서 참가하지만, 열석한다고 해서 군 및 향군의 본래의 활동이 이것 때문에 구속되는 일은 없습니다. 이 점 미리 양해를 구해 두겠습니다.

(7) 마지막으로 이번 남선 방면의 한해는 상당히 심각하고 영향 범위도 크기 때문에 깊은 동정심을 가지고 후방을 지도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 하리라 생각합니다.

3. 이번 회합에서는 특히 각 지방의 조선인 유력자를 각관에게 소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그들은 모두 열렬한 일본정신의 예찬자들이며 진지한 내선일체의 주창자들입니다. 서로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여 금후 반도인의 지도에서 정신대의 일원으로 이용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을 요약하건대, 군 보도부로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병사부 신설을 기회로 더욱 일치단결하여 동아 신질서 건설의 전진기지인 조선의 중요성을 생각하고, 사상전 대책에 한층 내용의 충실을 꾀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할 각오입니다. 이에 신진기예이신 병사부장 여러분의 전도에 심후한 경의를 표하는 동시에 앞으로 더한층의 협력을 희망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비(秘)

선내 병사부장회의 석상에서의 군 고급 참모 구연 요목

1939년 8월 22일
용산 해행사(偕行社)에서

1. 개전 초동의 조선군 태세 일반 (구술)

2. 경방단(警防團)에 대하여

(1) 목적

특수 근무에 종사하는 경방단(이하 단순히 특수경방단이라 칭한다)은 전시 또는 사변에 처하여 적의 공격을 받거나 또는 받을 우려가 큰 지역에서 육군이 행하는 방위의 보조를 맡는다.

(2) 설치 요령

조선군사령관은 방위 일반의 계획에 근거하여 특수경방단의 설치 지역, 편성 장비 등에 관해 조선총독과 협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된 육군사령관에게 지시하고 그 성립에 협력하게 한다. 조선총독은 특수경방단 설치 지구, 편성 등에 관해 관계된 지방장관에게 통지한다. 관계된 지방장관은 관계된 육군사령관(사단장, 요새사령관을 이른다)과 협의하여 상호 관계된 관민을 지도하고 부윤, 읍면장의 요청에 의해 이를 설치한다.

(3) 단원의 명면(命免)

경방단 규칙 제6조에 의한다. 단 간부의 명면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장관은 관계된 육군사령관과

협의한다.

(4) 지휘 감독

평시의 일반 지휘 감독은 경방단 규칙 제8조에 따르지만 그 본연의 임무에 근거한 복무 및 내부 편성, 장비에 관해서는 육군사령관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전시 또는 사변에 처해 방위에 참여할 때의 지휘는 육군사령관이 맡고 그 시기 및 신분 취급에 관해서는 그때그때 협의한 후 이를 정한다.

(5) 교육 훈련

본연의 임무에 관한 교육 훈련은 육군사령관이 이를 담당한다.

(6) 설비 자재

특수경방단의 평시 교육 훈련에 필요한 설비 자재는 스스로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육군이 이를 대여한다. 단 병기는 통상 관계된 육군사령관에게 보관을 위탁해 둔다.

(7) 경비

경방단 규칙 제15조에 따라 부, 읍, 면의 부담으로 한다. 단 병기로 구입할 필요가 있는 것은 독자 가의 기부 등에 의한다.

(8) 특수경방단은 법령상으로는 지방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지만 사실상은 대체로 육군 사령관의 지휘 하에 속하며, 그 규율 통제 및 원활한 진전 향상을 기하는 것은 반도 방공의 중요성에 비추어 보아 가장 긴요한 일의 하나이다. 따라서 그 설치에 있어서 조선총독은 관계된 지방장관에게, 조선군사령관은 관계된 육군사령관에게 특히 그 취지를 시달하여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별지〉

특수경방단 설치 지구 및 편성 기준표								
관 구	설치 예정지	편성 기초 병기				등급	편성 기초 인원	적요
		□문	□정	□개	관측 기관등			
20D	경성					갑	500	
	인천					병	150	
	평양					을	200	
	신의주					병	150	
22D	나남, 청진					갑	500	
	남양					병	150	
	창녕					을	250	
	홍남(함흥, 장진강, 부전강)					갑	500	
	성진					병	150	
	무산(탄광)					병	150	
	□계					정	100	
	상삼봉					정	100	
	영안					병	150	
영요	원산					을	250	기설의 것을 개 편함

진요	부산				을	250	
	여수				병	150	
	대구				을	250	
나요	나진				을	250	기설의 것을 개 편함
	옹기				병	150	
	회암				병	150	
비고	1. 본표의 인원은 당분간 그 3분의 1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편성 기초 인원은 □ 1문에 20명, □ 1정에 5명, □ 1개에 10명, 관측기관 요원 약간으로 하고, 요새에는 통신 기타 전비 작업 보조를 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3. 본 표에 제시한 병기는 애국병기에 의한 것을 표준으로 했다. 4. 기타 설치 개소 및 본 표의 세부에 관해서는 상황에 따라 정한다.						

3. 조선인 국군 협력 방식에 대하여

인구 2,300만, 내지 인구의 3분의 1에 달하는 이 거대한 인적 자원을 헛되이 사장하는 것은 과연 어떠한가? 바야흐로 문화는 차례로 향상되고 견식 있고 활동력 있는 인물이 계속 등장하는 중이다. 내선일체의 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국방 협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방식은 현재도 연구 중인데, 우선은 지원병 증가의 형식을 채용하여 차근차근 실현되고 있는 중이다. 장래를 위한 준비 행위 중에서 가장 긴요한 것은 국어 보급과 청년의 심신 단련이므로 이에 많은 협력을 바란다.

비(秘)

선내 병사부장회의 석상에서의 군 동원 주임참모 설명 사항

1939년 8월 22일
용산 해행사에서

- 조선군 동원 계획령 개정에 대하여
- 1939년도 조선군 동원 계획령 개정에 대하여
- 조선 징발 사무 세칙 개정에 대하여
- 육군특별지원병의 입대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 기타 참고 자료
 - (1) 선내 재향군인 분포 상황과 동원 요원의 충족 관계
 - (2) 선내 마필 분포 상황과 징발 관계
 - (3) 선내 자동차 분포 상황과 징발 관계
 - (4) 선내 소집 유예자를 인정하는 지정 공장과 사업장
 - (5) 육군특별지원병의 1938년도 및 39년도 지원 상황 및 전형 상황

비(秘)

현시에서의 선내 신문 지도의 개황

조선군 보도부

신문 지도 및 신문 발표 요령

1. 신문 발표는 중앙의 선전 방침에 따라 그 주지 달성을 주안으로 하고, 이에 군이 품고 있는 의도를 적시에 적절히 중보하여 일반 대중으로 하여금 조금의 불안도 없이 자진해서 군에 협력하게 하는 기운을 양성하는 것에 특히 신경을 쓰고 있다. 또 지도 및 발표 수속은 당 부가 전임하는 바로서 각부 및 총독부 기타 관계 방면과 긴밀히 적극적으로 연락하여 대략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있다.

다 음

- (1) 용성구락부(군 출입 기자로 조직됨)는 매주 통상 수, 금요일 양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을 정례 회견일로 하고 부장 및 부원이 응접 지도한다. 군사령관 및 막료는 필요에 따라 보도부원 입회로 회견 지도를 한다.
- (2) 매월 1회를 표준으로 각 신문사 편집국 간부(주필, 편집국장, 정치부장) 혹은 경성에 본사를 둔 유력 신문사의 지국장과 회합하여 군의 의도를 통한 내면 지도에 임하고 있다.
- (3) 전선적으로는 전선 신문사 사장으로 조직되어 있는 조선춘추회를 통하여 내면 지도에 임한다.

2. 소극적 지도(단속 검열)

신문의 단속 검열 실시는 총독부 경무국 소관 사항으로 통상 해당 관계 경찰관, 현병이 이를 담당한다. 사변 관계의 단속은 1937년 7월 31일 육군성령 제24조의 발령이 있었던 바, 육군대신의 훈령에 근거하여 조선에서는 총독이 이를 담당한다. 한편 조선에서의 군사에 관한 단속 결정은 군사령관의 의견을 듣고 의논하여 결정한다.

보도부는 이와 같은 취지를 잘 이해하고 중앙부를 비롯하여 관계 각 방면과 끊임없는 연락을 취하면서 군의 요망을 총독부의 단속에 반영시키고 있다. 따라서 각 지방에서의 금지, 해금 및 기타 신문에 관한 의견 등을 시기를 놓치지 않고 당부에 통보해 주기 바라며 또 군 스스로도 신문지법, 동 규칙 군인 군속 저작 규칙, 신문 단속에 관한 육군성령, 군기보호법 등 전반에 통첩해서 권위를 실추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3. 당 부에서의 신문 발표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조선군 사령부 발표

조선군의 책임으로 발표하는 것.

(2) 조선군 당국담(當局談)

조선군의 태도 의견을 표명하는 것.

당국담에는 군 사령관담, 참모장담, 보도부장담 등의 형식으로 발표하는 것이 있다.

(3) 자료

당 부가 입수한 정보이지만 조선군이 책임을 지고 발표할 정도의 정확도를 갖지 못한 것.

혹은 군의 명칭을 감추는 것이 유리한 경우.

자료는 참고로 배포하는 것.

(4) 관측기사

정식으로 발표하는 것이 불리한 경우 기자로 하여금 당국의 의향을 헤아리게 하는 방법으로, 자료는 제공하지만 책임을 회피하는 방법이다.

이외에 손쉬운 것으로는 동맹통신을 이용하거나 또는 필요에 따라 예정 회견일에 상관 없이 수시로 발표하는 것도 있다.

4. 조선에서의 신문의 현상 및 신문의 견해

(구술한다)

총독부 시정상의 주요 사항

1939년 8월 22일

조선군 병사부장회의에서

조선총독부

이번에 조선군에 병사부가 신설되어 선내 6개 주요지에 각각 설치되었는데, 그 제1회 부장회의를 개최하여 총독부 시정의 중요 방침 중에서 군 병사부와 관계가 깊은 두세 가지 사항에 대해 개략을 이야기해 두는 것은 의의가 있는 일이라 생각하며 참고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바입니다.

1. 내선일체에 대하여

조선 시정의 제 부문을 일관하는 대정신은 ‘내선일체’입니다. 이는 일시동인의 성지를 받드는 통치의 근본 방침으로서, 30년래 역대 당국의 시정 노력은 모두 이 한 점으로 이어져서 고신경영(苦辛經營)이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혹은 세계대전이 종식될 무렵 월슨 미국 대통령이 민족자결주의를 제창한 자극으로, 또 혹은 인도, 아일랜드 등의 영국 본국에 대한 반항운동의 모방이라든가 소련의 공산주의로의 책동 등으로, 일부 생각이 짧은 야심가의 민중에 대한 사주, 선동이 행해져 인심을 고혹한 시기가 다이쇼(大正)로부터 쇼와(昭和)초에 걸쳐서 계속되었는데, 그에 대한 반동으로 점차 반성 심려의 태도로 기울어 간 시기에 만주사변이 일어났는데, 이는 제국의 동아에 대한 숭고한 사명과 이를 수행할 실력을 인식하고 조선 시정의 참 정신을 올바로 이해하는 기연이 됨으로써 인심이 크게 호전되어, 이번 지나사변을

맞이하여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은 애국의 지성을 발로하기에 이르는 경과가 되었습니다.

하나의 물체가 구르기 시작하기까지에는 다른 것으로부터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한번 구르기 시작하면 물체 그 자신의 힘이 작용해가는 것은 물리적인 현상이며 인심, 사상도 역시 이와 비슷한 점이 있어, 일시동인의 성지에 따라 어디까지나 반도 동포의 복지 및 생활수준을 내지 국민의 수준 까지 끌어올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시정의 방침이, 저 백인 여러 나라에 의해 행해진 이민족 통치, 즉 식민지 원주민의 무지몽매를 방임하고 그를 틈타 공리적 착취의 항구화를 기도하는 식민정책적 수법과 비교하여 그 차가 천양지차도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덧붙여 제국의 지도자적 책무로서 행해지고 있는 동아 신질서 건설의 성업을 이해하고 그 민족주의적 소감정을 넘어서 황국신민으로서의 국민의식에 철저하려는 노력을 놓은 이상, 지도자층의 준비 여하에 따라서는 앞으로 급속도로 이 기운은 심화 신전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유의를 필요로 하는 것은 내선일체라는 것은 현실을 무시하고 이상을 향해서 비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현실적인 단계를 밟아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반도인’ 중에서도 사물을 경솔하게 판단하는 사람들은 내선일체라고 한 이상 일체의 국가적, 사회적 대우를 평등하고 차별 없이 해야 한다고 비판 주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원인과 결과를 전도하는 착오이며 그릇된 평등관에 빠져 공서양속(公序良俗)을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우선 그 전제 조건으로서 필요한 것은 반도인 모두가 진정으로 황국신민이라는 자각과 궁지에 철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도 동포가 더한층의 수양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은 물론이지만, 당국자 및 일반 지도자층도 힘을 하나로 하여 국민정신총동원운동 등을 포함한 광의의 교육운동을 철저히 추구하고 선가(禪家)에서 이야기하는 소위 쇄탁동시(啐啄同時)²¹⁾의 기분으로 심경의 개척에 힘써 진정한 내선일체의 이상향에 도달하기를 바라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내지인 측에서도 그릇된 우월감을 벗어던지고 대화대애(大和大愛)의 마음으로 서로 손잡고 진정한 내선일체의 구현에 매진하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합니다.

작년에 실현된 지원병제도와 보통교육에서의 내선인 구별 철폐와 같은 것은 이에 박차를 가한 것이며 또 작년 10월에 외무대신이 재외공관에 통달하여 재외 조선인의 계몽과 함께 황국신민으로서의 대우 방침을 밝힌 것도 그 하나의 지표입니다.

미나미 총독께서는 금년 봄 상경하는 기회에 백만에 가까운 내지 재주 반도인(주로 학생, 노동자)의 보호 지도가 내선일체를 심화하는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전국 31개 주요 부현에 기관을 둔 중앙협회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여 내선을 통한 관민 유지의 협력을 깊이 기대하고 계십니다.

최근 반도인의 내지 도항자수가 현저하게 격증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반도의 내지인수가 용이하게 증가하지 않는 현상은, 양질의 내지인과 반도인의 생활적 접촉에 의해 내선일체를 심화하고자 하는 점에서 보면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릴 반도 산업 구성의 고도화에 따라 기술 방면을 담당하는 노무자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장래가 유망한 내지인 청년이 내왕할 호기이

21) 병아리가 알을 깨고 스스로 나오려 할 때에 어미닭이 알을 함께 힘껏 쪼아서 도움을 주어야 새생명이 탄생 한다는 의미다. 이것은 선가에서 참선하는 사람의 기와 스승의 가르침, 즉 봉이 서로 의거함에 비유함이다.

므로, 조선군에서 군무를 마친 자 중에서 적격자를 가급적 반도에 거주하게 하는 방책에 대한 군당국의 고려를 희망함과 동시에 관공서 및 민간 제 회사에서도 재향군인의 채용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일본 민족과 조선 민족은 상고대에 혈연적, 문화적으로 극히 밀접한 관계에 있었고, 백제의 옛 땅인 부여에 오진(應神)천황, 사이메이(齊明)천황, 덴치(天智)천황, 진구(神功)황후의 신령을 권청하여 관폐대사(官弊大社)²²⁾의 창건을 보게 된 것도 그 대표적인 사실에 근거한 것인데, 그 후 오랜 시대를 겪하여 내선 관계를 옛날 이상의 상태로 환원하고 혈육이 한 둉어리가 되는 것은 필경 우리 팔광일우(八絃一字)의 이상을 실현하는 방법임과 동시에 그 열매와 실적은 도의성과 역사성에 있어서 일본의 대륙 국책의 기본적 요소를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경우, 동아 정세에서 내선일체의 실현이 얼마나 심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가를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2. 선만일여에 대하여

조선 통치의 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 국내적으로는 내선일체임과 동시에 만주국에 대해서는 일만 불가분의 관계상 그 접양지로서 선만일여의 관념이 심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일만의정서에 의해 공동 방위를 □하고 만주국 황제의 회란훈민조서(回鑾訓民詔書)의 일덕일심(一德一心)의 취지에 따라 일본과 만주국이 일체적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 접양하고 있는 조선과 만주국이 정신적으로 일여의 관계에 서는 것은 당연하며, 참된 의미에서의 국경이 압록, 두만강 선에서 우스리, 헤이룽(黑龍)강 선으로 나아간 것은 이미 알고 계신대로입니다. 현재 압·두 양강의 물을 사이에 두고 교통, 통신, 발전, 비적의 협동 소탕 등의 제 사업이 상호 협력 하에 진행되고 있는 중이며, 해마다 다수의 선농이 만주 개척의 사명을 띠고 만주로 들어가 황국신민임과 동시에 만주국 인민으로서 민족 협화의 국시 하에 일역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현재와 같은 과도적 시기에 비록 약간의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은 있지만, 이를 대국적으로 보면 마음을 든든하게 하는 일입니다.

간도성(間島省)에서는 이미 작년 말 제2군관구 간도지구 사령부 예하에 조선 특설부대가 편성되었는데, 군사적으로도 점차 임무를 분담하는 과정에 도달하게 된 것은 선만관계의 장래를 위해서도 기쁜 일입니다.

3. 전진 병참기지로서의 사명에 대하여

조선이 제국의 대륙책에서 전진 병참기지로서의 사명을 띠고 있는 것은 동아 지도를 펼쳐 정치 정세를 살펴보면 상식적으로도 극히 명료합니다.

조선은 이번 사변에서도 식량, 잡화 등을 비롯하여 상당량의 군수물자를 북지 방면의 파견군에게 공출할 수 있었는데, 만약 장래에 수개 강대국을 상대로 할 경우가 있어 내지로부터의 해상 수송에 불안을 느끼게 되는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한동안 대륙 작전군에 대한 군수물자를 주로 조선의 직능으로 이를 조달할 수 있는 산업력을 평상시에 배양해 두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국방상 절대 필요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게다가 반도에는 다채롭고 풍부한 광물이 부존하고 농림수산자원의 종식이 가능하며 배량산맥(背梁

22) 일본 황실에서 공물을 바치는, 격이 높은 신사를 관폐사(官弊社)라 한다.